

현대자동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보고서

현대차의 구사대폭력은 조직적 범죄행위다

2025년 7월 23일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

**현대차의 구사대폭력은
조직적 범죄행위다**

현대차의 구사대폭력은 조직적 범죄행위다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2025. 7. 23

I. 서론

1. 조사배경	9
2. 진상조사단 구성 및 활동	9
3. 조사방법	11

II. 이수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현대차 구사대 폭력의 경과와 특징

1. 사건의 경과	15
2. 피해 상황	31
3. 이수기업 해고노동자 투쟁에 대한 현대차 구사대 폭력의 특징	35
4. 경찰 수사 경과	52

III. 현대자동차의 구사대 이용 노무관리 문제

1. 서론	59
2. 구사대 운영 실태	62
3. 구사대 동원 노무관리의 법적·윤리적 문제점	78

IV. 현대차와 이수기업의 고용구조 문제

1.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의 역사	89
2. 이수기업: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내 불법파견 업체	94
3. 현대차의 비정규직 노무관리의 두개의 축: 특별채용과 축탁직	103
4. 소결	106

V. 폭력에 공조한 경찰, 파괴된 집회의 권리

1. 파괴된 평화적 집회의 권리	109
2. 폭력에 대한 대비와 조치는 없었다	136
3. 20년 이상 이어진 폭력, 경찰과 구사대의 오래된 유착	151
4. 소결 : 막을 수 있었던 폭력, 반복된 집회 방해, 그 책임은 공권력에 있다	156

VI. 결론 : 현대자동차의 구사대 폭력은 조직적이고 비인도적인 노무관리 전략

VII. 진상조사단의 요구	173
----------------------	-----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 공권력감시대응팀, 백기완노나메기재단, 블랙리스트 이후,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스튜디오알, 영등포산업선교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I

서론

1. 조사배경

현대자동차 주식회사가 2025년 3월과 4월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개최된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의 집회에 대하여 보안운영팀 소속 직원들을 동원하여 집회참가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집회물품인 천막을 강탈하여 집회를 무산시킨 사건이 발생했다.

이미 2004년 ‘현대자동차 노동자사찰·비정규직노조탄압 진상조사’, 2011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탈퇴강요·인권침해 진상조사’가 있었음에도 반복되는, 현대차의 구사대를 동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로부터 현대차의 초법적인 폭력행위를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인권활동가들과 변호사들이 당해 사건의 배경, 현대차 비정규직 운영실태 등 고용구조, 구사대를 활용한 노무관리의 문제점, 구사대의 폭력행위에 대한 공권력의 묵인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2. 진상조사단 구성 및 활동

가. 구성

2025년 5월 15일 공권력감시대응팀, 백기완노나메기재단, 블랙리스트 이후,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스튜디오알, 영등포산업선교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민주노총 울산본부, 전국금속노동조합은 3월 13~14일, 4월 18~19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이하, ‘이 사건 폭력사태’라 함)에 대하여 ‘현대자동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을 발족하였다.

나. 활동

1) 회의

회차	일시 및 장소	참석자	개요
1차	2025. 5. 14. 민변	위원 15명	진상조사 방향 및 계획 수립
2차	2025. 5. 23. 민변	위원 13명	팀별 조사, 인터뷰 계획 수립
3차	2025. 5. 29. 온라인	위원 16명	의원실 답변, 인터뷰 질문지 검토
4차	2025. 6. 5. 덕수	위원 17명	인터뷰 공유, 집필 계획 수립
5차	2025. 6. 13. 민변	위원 14명	조사보고서 목차 검토, 후속 활동 계획 수립
6차	2025. 6. 25. 민변	위원 13명	조사보고서 초안 검토
7차	2025. 7. 2. 민변	위원 12명	조사보고서 수정안 검토
8차	2025. 7. 14. 온라인	위원 13명	조사보고서 최종안 검토

2) 현장조사

아래 일시에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 앞을 방문하여 집회신고 장소, 구사대 배치 및 집회장소 침입경로 등을 확인하였고, 집회참가자 등으로부터 이 사건 폭력사태 당시 피해상황을 청취하였다.

회차	일시 및 장소	참석자	개요
1차	2025. 5. 30.	위원 4명	이수기업 당사자 및 지역 연대자 인터뷰, 집회 현장 답사
2차	2025. 5. 31.	위원 7명	

3. 조사방법

가. 서면조사

이 사건 폭력사태와 관련하여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국회의원을 통해 경찰운용 및 집회신고 현황, 현대차 울산공장 보안인력 운영실태 자료를 확보하여 조사하였다.

순번	서류명	작성자	자료제공
1	최근 울산지역 경찰운용 관련자료	울산광역시 경찰청	국회의원 용혜인
2	집회 상세내역(24.5~25.4) 및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주변 집회신고서	울산광역시 경찰청	국회의원 용혜인
3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보안인력 운영실태 관련자료	현대차	국회의원 정혜경

나. 영상/사진 조사

스튜디오 알, 이수기업 해고자 안미숙의 영상, 김소연, 변주현, 베라, 신소요, 예주, 트위터 (현 ‘X’) 등의 사진을 조사하여 이 사건 폭력사태 당시 구사대의 집회방해 및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폭행 장면, 경력의 배치 현황 및 이 사건 폭력사태 당시 경찰의 태도를 확인하였다.

다. 대면조사

아래 일시에 집회참가자 및 피해자에 대한 대면조사를 통해 이 사건 폭력사태 경과, 피해 현황 및 현대차 구사대 운영 현황을 확인하였다.

	이름	날짜	조합원/연대자/참고인	비고
1~3	조○○, 안○○, 박○○	5/30	연대자	울산지역 노조운동가, 과거 현대차 구사대 폭력 피해자
4	강진관	5/30	연대자	
5	김현제	5/30	연대자	현대차 비정규직, 과거 현대차 구사대 폭력 피해자
6	김기호	5/30	연대자	
7	심연진	5/30	연대자	
8	윤혜민	5/30	연대자	
9	이도한	5/31	연대자	
10	변주현	5/31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조합원	부상자
11	신소요(활동명)	5/31	연대자	
12	이종명	5/31	이수기업 해고자	
13	김현규	5/31	이수기업 해고자	
14	유선근	5/31	이수기업 해고자	
15	장진형	5/31	이수기업 해고자	
16	안미숙	5/31	이수기업 해고자	
17	권하은	6/10	연대자	부상자
18	베라(활동명)	6/10	연대자	부상자
19	박수연	6/10	연대자	3월 13일, 4월 18일 집회 참여
20	김소연	6/11	연대자	부상자, 갈비뼈 다침. 비정규직 노조활동 경험자
21	김주휘	6/15	연대자	부상자, 음식연대하는 시민
22	권수정	5/28	참고인	현대차 비정규직 출신, 과거 현대차 구사대 폭력 피해자
23	김○○(가명)	5/30	참고인	경비대
24	조성수	5/30	참고인	경비대, 현대차 비정규직 출신

※ 2025. 6. 28. 현대차에 이 사건 당일 보안운영팀 운영과 관련하여, 울산북부경찰서에 이 사건 당일
경력 운영과 관련하여 각 조사협조를 요청했으나, 2025. 7. 중순 현재 무응답함.

II

이수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현대차 구사대* 폭력의 경과와 특징

*이하 조사결과에 의하면 사건 당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집회참가자들에게 폭행을 행사하고, 천막을 강취한 자들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울산비즈니스지원실 산하 보안운영팀 정규직 및 계약직 직원들로 파악된다. 이후 조사보고서의 서술에서는 이들의 현대자동차 내의 조직편제와 관련해서는 보안운영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당일 이들이 비정규직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집회를 방해한 행위를 서술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구사대(노동운동을 방해하거나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하여 회사 측에서 동원한 조직이나 집단)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구사대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장에서 다룬다.

2025년 3월 13일과 14일(1박 2일), 4월 18일과 19일(1박 2일) 두 차례에 걸쳐,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 하청기업인 이수기업에서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대자들에게 현대자동차 구사대가 폭력을 가하는 일이 연이어 벌어졌다.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에서는 당시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을 직접 인터뷰하고, 현대차 경비대 경력자를 인터뷰하였으며, 폭력사건이 벌어진 당일의 영상과 사진, 국회로부터 받은 울산광역시경찰청 자료를 통해 가해자인 구사대와 경찰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파악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울산에서 벌어진 구사대 폭력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1. 사건의 경과

2024년 9월 현대차 협력업체인 이수기업은 업체를 폐업하고 노동자 34명 전원을 해고했다. 현대차는 2003년 이후 정규직노조와 맺은 ‘협약서’를 통해 협력업체가 폐업하더라도 소속 노동자의 근속을 인정하고 고용을 승계해왔다. 하지만 현대차는 이수기업을 폐업하면서 그 관행을 깨고 노동자들을 해고한 것이다. 이에 이수기업 해고자들은 현대차 울산공장 앞에서 집회 등을 하며 고용승계 싸움을 이어왔다.¹

이수기업 해고노동자들은 2025년 3월 13일에 투쟁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공장 앞에 천막을 설치하려고 했고, 현대차 구사대는 이를 막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 투쟁을 응원하기 위해서 온 연대자들과 함께 집회를 하던 4월 18일, 현대차 앞에 다시 천막을 설치하려고 하자 또다시 구사대가 물리적 폭력을 사용한다. 천막 설치 시도가 있다는 이유로 두 번의 폭력이 발생하였는데, 집회 중 천막 설치 여부는 현대차 보안운영팀의 업무가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구사대가 천막을 빼앗고 노동자들과 연대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실정법 위반이다. 그런데 이미 배치된 경찰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¹ 이수기업 노동자들이 왜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투쟁하게 되었는지는 별도의 장에서 다룬다.

대해 사전 예방도 사후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경과는 아래와 같다.

가. 3월 13일~14일 구사대 폭력 경과

● 3월 13일 천막강탈

- 16시 이수기업 노동자들 집회 시작
- 16시 40분경 집회 마무리
- 16시 41분경 집회참가자들이 천막을 설치하려고 하자 구사대가 천막을 강탈
구사대가 강탈한 천막을 포터에 싣고 감.
- 16시 42분경 구사대 본관 정문 입구로 빠져나감.
집회참가자들 정문으로 이동.
- 17시 00분경 집회참가자들 본관 입구에서 천막 회수 및 사과 요구하며 항의 행동
- 18시 천막을 돌려줄 때까지 농성을 하기로 결정하고 해복투 사무실에서 바닥
매트를 가져옴.

● 3월 14일 노숙농성 중 새벽 구사대 폭행과 경찰의 연행

- 노숙농성 진행하며 새벽 2~3시까지 집회 이어감. 현대차에서 노래 틀어 집회를 방해
- 05시 00분경 집회참가자들 본관 입구에서 출근 피켓 선전전
- 05시 30분경 구사대가 피켓 선전전 중인 조합원을 밀치고 집기를 던지거나 찢음.
구사대가 폭력으로 대오에 밀고 들어옴.
- 07시 15분경 집회참가자들 본관 입구에서 약식 집회
- 10시 00분경 현대차 구사대 폭력규탄 기자회견

현대차 이수기업 노동자들은 2월 17일부터 3월 15일까지 현대차 정문 앞에 집회신고를 한 상태였다. 노동자들은 3월 13일 오후 4시경 본관 정문 쪽 화단 옆의 인도에서 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를 마무리할 때쯤 노동자들이 농성을 위해 천막을 설치하기 위해 차량에서 천막

을 꺼내자, 본관 입구에서 대기하던 현대차 구사대 200~300여 명이 집단적으로 달려들어 천막을 찢고 무너뜨렸다. 구사대는 그 과정에서 카메라를 든 사람과 조합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천막을 탈취한 후에는 구사대의 차량(흰색 포터)에 싣고 달아났다. 집회 전부터 집회장소 정문 옆에 20~30여명의 경찰이 배치되어 있었고, 이 경찰은 구사대의 폭력과 천막 강탈 과정을 모두 목격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에 집회참가자들은 현대차 본관 앞으로 이동하여 천막을 돌려줄 것과 사과를 요구하며 항의행동을 했고, 계획에 없었던 밤샘 농성을 하면서 집회를 이어갔다. 그런데 현대차 구사대는 참가자들이 만든 피켓을 훼손하거나 음악을 틀어놓는 방식으로 집회를 방해했다.



▲ 천막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며 정문 앞에서 선전전을 하는 모습. 사진-변주현

14일 오전 5시, 노숙농성을 하던 집회참가자들이 본관 입구에서 출근 선전전을 시작했다. 조합원이 피켓을 들고 선전전을 진행하던 오전 5시 30분경 구사대가 갑자기 선전전을 진행하는 조합원을 밀쳤고 다시 폭력이 시작되었다. 피켓을 들고 선전전을 하던 조합원은 물론 매트에 앉아서 자리를 지키고 있던 집회참가자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 피켓과 바닥매트

를 모두 찢어 훼손했고 그 과정에서 집회참가자들이 부상을 당했다. 그 외에도 구사대는 본관 앞쪽에 주차된 집회 주최 측 차량을 빼라면서 압박하고 방송차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는 등의 위협을 했다.

오전 7시15분경 집회참가자들은 본관 입구에서 약식집회를 하고, 10시 경에는 구사대의 폭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며 1박2일 집회를 마무리했다.

나. 4월 18일~19일 해고 200일 문화제 당시 구사대 폭력 경과

● 4월 18일, 200일 문화제 중 천막 탈취와 구사대 폭력	
오전 8시	현대차, 인도에 화단을 설치. 경찰, 집회 시 차도 사용 불허
15시 15분	오픈마이크 시작
15시 37분	투쟁문화제 시작과 동시에 천막 설치 시도 구사대 500여명 몰려와 2~3분 만에 천막 강탈하고 1차 폭력 행사
15시 39분	집회참가자 119에 전화, 부상자 병원 이송.
15시 49분	집회참가자 대오 재정비 후 투쟁문화제 재시작
18시	서울에서 내려온 연대버스 서울로 출발
18시 15분	문화제 종료. 집회참가자들 휴식을 취하거나 돌아가면서 저녁 식사 구사대가 앰프로 실랑이를 하며 2차 폭력 행사

● 4월 19일, 선전전 준비 중 2차 구사대 폭력과 경찰의 연행

00시	현장노동자들 퇴근 시간에 맞춰, 선전전 위해 현수막 펼침 경찰이 집회신고 범위 이탈이라고 주장 구사대 경비팀장 지시로 현수막 강탈 후 3차 폭력 행사
01시	피켓이 경찰이 닿았다며 경찰 폭행 이유로 1명의 집회참가자 연행
01시 30분경	경찰 연행을 저지하기 위해 집회참가자들 연좌 경찰차가 오고 해산방송
02시 7분	경찰 기동대 출동. 경찰은 방송차로 미란다 원칙 고지
02시 17분	여경 투입하여 연좌하던 집회 참가자들 강제 해산 연행자 이송에 항의하던 집회참가자 2명 추가 연행

4월 18일은 해고 200일에 맞춘 ‘이수기업 200일 투쟁문화제’로 전국에서 연대자들이 참여하는 규모 있는 집회였다. 이수기업 해고노동자들은 4월 9일 북부경찰서에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명의로 4월 11일부터 5월 9일까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정문 앞 집회신고를 내놓은 상태였다.

집회참가자들은 사전 집회로 오후 3시경 오픈마이크를 시작하였다. 사전집회는 100여 명도 안 되는 인원이 참여했으나 구사대 500여명이 집회 대오 앞뒤로 서서 위압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다. 또한 현대차가 아침 8시부터 집회 장소인 인도에 화단을 세워두었기 때문에 집회 장소도 매우 협소했다. 이 집회에 연대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많은 인원이 올 예정이었기 때문에 차도를 일부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경찰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 집회 전 집회 개최 장소 앞에 구사대 수백명이 대오를 갖추어 있는 모습이 위협적이다. 사진-김소연



▲ 집회 전 집회 개최 장소 뒤에 구사대 수백명이 대오를 갖추어 있는 모습이 위협적이다. 사진-김소연

▶ 집회 대오 앞에 구사대가 위협적으로 집회참가자 앞에 가까이 있다. 사진 - 김소연



▲ 집회신고를 한 장소에 현대차가 화단을 만들어 집회공간을 좁혀놓았다. 사진-안미숙

서울에서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연대버스를 타고 온 이들이 내리자 참여자는 점점 늘어나 약 300명 정도가 되었다. 3시 30분쯤 민중의례를 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즈음, 일부

집회참가자가 집회 장소인 인도 쪽에 천막을 설치하려고 했다. 그러자 한 명의 구사대가 담과 화단을 넘어 집회 현장으로 몸을 날려 천막을 덮쳤고, 이후 대기하던 구사대가 집회 앞뒤로 밀고 들어왔다. 사람이 많아 압사의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는에도 막무가내였다. 구사대가 집회 공간으로 난입해서 천막을 붙들고 있는 참가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달려들어 2~3분 만에 천막을 강제로 탈취했고, 그 천막 천은 현대차 공장 담장으로 넘겼다. 그리고 천막 뼈대인 철제는 빼앗아 달아났다.



▲ 천막을 펼치자 구사대가 화단 쪽에서 몸을 날려 천막을 덮치는 모습, 영상캡처, 출처-이수기업 해고노동자



▲ 천막을 강탈해 현대차 담장으로 넘기는 모습, 영상캡처-이수기업 해고노동자

집회참가자가 천막을 탈취하는 상황을 보고 천막을 붙들다가 팔이 천막 사이에 끼었고, 또다른 집회참가자도 천막 철제 사이에 몸이 끼었지만, 구사대는 아랑곳하지 않고 천막을 철거하여 부상자가 다수 생겼다. 또한 수백 명의 구사대가 밀고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밀려 넘어졌지만 구사대는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거나 밟지 않으려 노력하지 않았다. 오히려 계속 밀고 들어오면서 사람들을 밀치고 그 바람에 누군가는 화단에 부딪혀 다치기도 했고, 사람들에게 눌러 '이태원참사가 떠올랐다'고 증언할 정도였다. 구사대는 체구가 작은 여성연대자의 머리채를 잡고 내동댕이치기도 했다. 이런 노골적인 구사대 폭력으로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이 13명,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한 이들이 20명에 이르렀다.



▲ 구사대가 뒤에서 밀어서 넘어져서 다친 모습, 사진-변주현



▲ 구사대 폭력으로 다친 모습, 다리에서 피가 그치지 않는 모습, 사진-변주현



▲ 앞뒤로 구사대의 압박으로 다친 집회참가자가 압박붕대로 치료받은 후의 모습, 사진-변주현



▲ 응급차에서 상태를 치료받는 모습, 사진-예주



▲ 다친 집회참가자들을 연대자들이 치료하는 모습, 사진-변주현



▲ 응급차에 부상자들을 후송하려는 모습, 사진-변주현

3월 13과 14일 구사대 폭력이 있었던 만큼 경찰은 사전에 구사대가 집회장소에 난입하지 못하도록 경찰통제선을 설치하는 등 예방을 해야 했다. 하지만 경찰은 그 역할을 하지 않았다. 구사대가 텐트를 강탈하고, 구사대 대오가 줄어들자 그제야 경찰이 등장했다. 집회참가자들이 경찰에게 폭력을 제재해달라고 호소했지만 400명이나 되는 경찰은 방관하고 있었다. 경찰은 용역이 집회 장소를 침탈하고, 천막 등 집회 물품을 다 파괴한 이후에야 충돌 상황에 개입해 사태를 키웠다.



▲ 나중에 온 경찰들이 사진채증을 하고 있는 모습. 방향이 구사대가 아니라 집회대오를 향하고 있음. 사진-변주현

다친 사람을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응급처치를 한 후 오후 3시 49분경 집회를 다시 시작했다. 집회는 한시간 가량 진행되었고, 집회를 마친 후 서울에서 내려온 연대자들은 버스를 타고 돌아갔다. 하지만 연대자들 일부는 남아 있었다. 천막을 돌려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구사대가 3월과 달리 모두 철수하지 않고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집회 내내 구사대는 처음과 마찬가지로 무대 차량 뒤에 무리지어 대기하고 있었다.



▲ 구사대 폭력으로 발생한 부상자들을 옮기고 집회를 하는 모습. 사진-변주현



▲ 천막을 강탈하고도 구사대는 철수하지 않고 있다. 사진-변주현

6시 15분경 집회 참가자들이 앰프를 회사 쪽으로 향하게 하여 음악을 틀어놓았다. 그런데 구사대 한 명이 앰프의 위치를 집회참가자들이 있는 방향으로 향하게 했고 집회참가자가 다시 회사 쪽으로 앰프의 방향을 바꾸려고 하자 구사대가 달려들어서 2차 폭력이 시작되었다. 집회가 끝난 후 일부는 밥을 먹으러 이동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쉬고 있던 30여 명밖에 되지 않았다. 구사대가 여성 집회참가자의 머리채를 잡아채서 화단 쪽으로 내동댕이치는 바람에 연대시민은 정신을 잃었고, 응급차를 부르고 응급조치를 받아야 했다.



▲ 집회를 마치고 남은 사람들이 쉬고 있는 모습. 사진-변주현



▲ 음향기기의 방향으로 구사대가 시비를 걸어 사람들이 몰려가 항의하는 모습. 영상캡처-이수기업 해고노동자



▲ 머리를 부딪친 부상자를 치료하고 있는 모습. 사진-변주현

집회참가자들은 다시 사과와 천막 반환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갔고, 19일 자정 무렵 교대조의 퇴근시간에 맞춰 회사 정문 앞에서 선전전을 시작했다. 집회참가자 서너명이 회사 정문 출입구 옆 인도에 현수막을 들고 서 있었는데 구사대가 현수막 설치를 막으려고 했고, 경찰도 '집회 신고 범위가 아니니 신고된 장소에서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선전전이 진행

된 곳은 집회 신고가 되어있는 장소였다. 경찰과 집회참가자의 실랑이 후에 구사대가 갑자기 달려들어 현수막을 끌어냈다. 그 과정에서 현수막을 들고 있던 사람과 주변의 집회참가자들이 폭행을 당했다. 현수막을 잡고 있던 노동자는 구사대에 질질 끌려갔고 내동댕이쳐져서 손가락이 부러지기도 하고, 영상을 찍던 연대자는 몸이 뒤로 꺾이고 넘어지기도 했다. 얼굴과 눈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된 집회참가자도 있었다. 구사대의 세 번째 폭력이었다.

폭력이 계속되던 새벽 1시경 경찰은 갑자기 집회참가자 한 사람을 경찰 차량으로 연행했다. 피켓을 든 채 실랑이를 하던 집회참가자의 몸이 흔들려 피켓이 경찰에게 닿았다는 이유로 ‘공무집행 방해’라고 주장한 것이다. 폭력을 가하고 집회 물품을 부순 구사대는 그대로 둔 채 조합원을 연행하자 집회참가자들은 경찰 차량 앞에서 연좌를 하며 연행에 항의했다. 부당한 경찰의 처사를 그대로 둘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시간 가량의 대치 후 경찰은 무장한 기동대를 투입하고 여경들을 출동시켰다. 그리고 도로에 앉거나 누워있던 사람들을 강제로 끌어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은 두 명의 집회참가자를 더 연행했다. 구사대는 경찰과 대치가 시작된 순간 이미 빠져있었다.



▲ 경찰차가 집회참가자를 연행하려고 해서 불법연행에 항의하는 모습. 사진-안미숙

2. 피해 상황

구사대 폭력의 대상은 조합원이건 비조합원이건, 성별이건 가리지 않았다. 심지어 천막철거를 한 이후에도 폭력을 계속 이어가 부상자가 많았다. 부상자가 있음에도 구사대건 경찰이건 치료나 응급차를 부르는 등의 조치도 하지 않았다. 집회참가자들이 직접 상처를 치료하거나 응급차를 불러야 했다.

가. 4월 18일 현대차 구사대 폭력으로 인한 부상자 현황

1) 병원 치료 부상자 현황(총 13명)

구분	이름	부상 내용 및 부위	소속
수술 / 골절	권하은	왼쪽 약지 비관혈적 정복술 및 핀고정술	연대시민
	심영진	우측 늑골 4, 5번 골절	이수기업
	박연우	좌측 늑골 골절	금속노조 거통고조합원
열상	정승철	오른쪽 정강이 열상 봉합술	부산일반노조
뇌진탕 / 타박상	변주현	뇌진탕 및 오른쪽 눈 주위 타박상	현중사내하청지회
	한범수	왼쪽 손목인대 손상	이수기업
	김주희	머리 타박상	우리밥연대
	민창규	명치 타박상 및 호흡곤란	연대시민
	이주희	머리 타박상	연대시민
	변지연	옆구리 타박상	연대시민
	현미향	손목 타박상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윤혜민	어깨 타박상 및 척추경직	부산일반노조 청년위원회
	최혜수	오른쪽 손목 타박상	거통고조합원

2) 현장 응급처치 부상자 현황(총 20명)

이름	부상 내용 및 부위	소속
권○○	오른쪽 늑골 타박상	금속노조 이수기업
유○○	왼쪽 팔꿈치 타박상, 오른손 엄지 찰과상	금속노조 이수기업
이○○	두부 및 오른팔 타박상	보건의료노조 서울
화○○	무릎 찰과상, 손가락 타박상	공공운수노조 울산
김○○	손가락 찰과상	공공운수노조 울산
민○○	손목 타박상	공공운수노조 부산
이○○	손가락 찰과상	서영호, 양봉수 열사회
김○○	손목 찰과상	금속노조 울산지부
손○○	손 찰과상	금속노조 울산지부
성명 미확인	손 찰과상	금속노조 울산지부
이○○	손목 타박상 및 찰과상	금속노조 울산지부
이○○	다리 찰과상	노동당 울산시당
김○○	타박상	우리밥연대
김○○	목 찰과상	서울연대시민
성명 미확인	손바닥 찰과상	서울연대시민
전○○	팔 타박상	부산 연대시민
조○○	오른팔 찰과상 및 타박상	부산 연대시민
박○○	무릎 타박상	부산 연대시민
손○○	손목 타박상	소성리 기록노동자
배○○	어깨 타박상	뽕과장미

나. 폭력에 대한 피해자들의 증언

1) 당일의 폭력 상황

당시의 폭력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었는지에 대해, 폭력 피해자인 이수기업 해고노동자

들과 연대자들은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구사대들 중에 한 명이 막 손짓을 하면서 … 대기하고 있던 구사대들한테 와라는 식으로 손짓을 했고 … 현수막 쪽으로 오는데 엄청 많이 오는 거죠. … 떼거리로 와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면 밀리잖아요. 그 바람에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다 넘어졌고 … 제가 뒤로 이렇게 넘어져 있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엎드린 상태에서 일어나면서 현수막을 딱 잡았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이렇게 질질질 끌려갔고 … 머리끄덩이도 한 번 잡혔고 … 그 다음에 얼굴이랑 안면이랑 여기저기 끌리고 맞고 그렇게 됐어요. … 너무 힘들고 몸이 잘 안 움직여져서 이제 누워있었어요. 그런데 저를 발견한 동지가 너무 심각하다, 얼굴에 지금 피 난다, 그렇게 해서 얘기를 들었고.” (변주현 인터뷰)

“개네들이 힘이 세니까 저하고 제 옆에 여성 동지가 밀려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밟히는 상황이었고, 근데 앞에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바닥에 뒹굴고 있었거든요… 위로 보면 전부 용역들이 빙 둘러싸서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도한 인터뷰)

“구사대가 머리카락을 잡아당겨서 … 아마 힘이 부족해서인지 뒤쪽으로 머리를 박았어요. … 보도블록에 머리를 박았었고, … 바닥에 제가 놀라서 소리를 계속 질렀어요.” (베라 인터뷰)

“그만하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이랬는데, 꺾등으로도 안 듣더라고요. … 제가 그 말도 했어요. 손 대면 성추행이라고. 근데 팔을 비틀더라고요.” (윤혜민 인터뷰)

3월 15일과 4월 18일 집회 모두 참석했던 이들은 두 날의 폭력 양상이 달랐다고 증언한다. 4월 18일의 폭력은 매우 강도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이었다고 말한다.

“제가 느끼기에는 영상도 그렇고 3월 13일 100일 문화제 있었을 때랑 200일 문화제에 있었

을 때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게, 1차적으로 100일 문화제 때는 그렇게 폭력적이라는 그런 느낌은 못 받았었거든요. 단지 이제 저희가 이제 천막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천막 강탈해 가는 목적만 완수하고 바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200일 문화제 때는 천막 침탈도 하고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대치하면서 전보다 더 폭력적으로 사람들을 힘으로 밀어붙인다든지, 끌어내고 먹살을 잡는다든지, 욕을 하고 안 보이는 곳에서 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이든 시민이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구분하지 않고 폭력을 가했다는 게 좀 많이 놀랐죠.” (이종명 인터뷰)

4월 18일의 폭력이 이전과 다른 것은 이수기업 해고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연대하러 온 시민들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인 폭력이 자행되었다는 점이다.

“연대 오신 분들 말벌동지들²이나 일반 시민분들은 평상복이고, 자동차 정규직 지부 사람들이나 이제 활동하고 있는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조끼를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히 누가 봐도 아 그냥 학생이구나, 시민이구나, 이거는 구분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폭력을 당하고 다친 분들이 다 보면 도와주시러 온 시민분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행사 진행할 때 음료수를 나눠준다든지 저희 일에 대해서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도와주러 오셨던 시민분들이고 말벌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많이 다쳤으니까... 그냥 무차별적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도 않고.” (이종명 인터뷰)

“3월 13일까지 폭행은 그때랑 별다른 건 없었어요. 항상 저희들은 맞아 왔으니까 이제 저희만 맞았죠. ... 투쟁 주체들 저희 이수 해고자들 위주로 폭행을 당하고 끌려가고 내동댕이쳐지고 이렇게 13일은 그 정도로 해서 끝났고요. ... 근데 18일 날은 확실히 변했죠... 몸 싸움하는 저희는 안 건들고요. 남성 동지들 좀 잘 안 건들고 좀 머리 길다 싶은 사람들은

요. 남자도 머리 긴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 머리 막 잡아당기고요. 여성 동지들 위주죠. 머리 기신 분들 다 잡아가고 막 머리끄덩이 잡고 막 당기고 땅으로 막 패대이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장진형 인터뷰)

2) 폭력에 의한 트라우마

현대차 사내하청 이수기업 해고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한 이들 중에서는 체구가 작은 여성이 다수 있었고, 구사대 폭력 사건에서 큰 부상을 당하였다. 이로 인하여 신체적인 피해를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안, 불면, 무기력 등의 심리적인 고통을 심각하게 호소하고 있다.

“부작용은 아닌데 이제 그 뭐지 이제 3차, 3차까지 있었잖아요. (네.) 그때까지도 통증이 잔잔하게 남아 있었어요. 약간 그 직후 충격은 갔었는데 네. 3차 충격까지 그리고 다음 날까지 계속 은은하게 충격이 남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좀 스트레스 받거나 하면 다시 아프더라고요.” (베라 인터뷰)

“불안이 너무 심해가지고 잠이 안 와서, 그래서 너무 힘들었을 때는 정신과 가서 진정제랑 수면제를 받았었고요.” (권하은 인터뷰)

“요즘에도 그냥 그때 베이지색 옷 입은 현대차 일반 직원들이 와도 흠칫흠칫하고 ... 개네들 마주치면 진짜 흠칫흠칫하고 놀라고 막 몸이 가끔 굳고 그래요.” (윤혜민 인터뷰)

3. 이수기업 해고노동자 투쟁에 대한 현대차 구사대 폭력의 특징

3월 14일 집회 때도 구사대는 천막을 탈취하고, 선전전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다. 그런데 ‘해고 200일 문화제’가 열린 4월 18일의 폭력은 구사대의 규모도 컸을 뿐 아니라, 세 차례에

2 연대시민을 ‘말벌동지’라고도 지칭한다. “말벌”이란, TV 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에서 말벌로부터 꿀벌을 보호하기 위해 황급히 달려가는 등장인물의 모습이 “말벌 아저씨”라는 온라인 밈(meme)으로 만들어진 데서 유래하며, ‘연대가 필요한 투쟁의 현장에 순식간에 달려가는 시민 활동가’를 가리키는 말이다.

걸친 폭력이 자행되어 30여 명의 집회참여자들이 크게 다쳤다. 또한 이수기업 해고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기 위해서 왔던 연대시민들에게도 폭력이 행사되는 등 무차별적인 폭력이었다. 여기에서는 4월 18일에 진행된 구사대 폭력을 중심으로 현대차 구사대 폭력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기획된 폭력

1) 의도적으로 충돌하고 폭력 상황을 만들려는 시도

4월 18일에는, 집회 시작하기 전부터 위력을 과시하듯 현대차가 전보다 많은 500여명의 구사대를 집회 대오 앞과 뒤에 배치한 상태였다. 구사대들은 천막이 등장하기 전부터 장갑을 끼고 동일한 옷을 입고 있어서 “협악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다. 그런데 경찰들은 경찰통제선으로 분리하는 등의 폭력을 막기 위한 조치를 일절 하지 않았다. 근접한 장소에서 서로 다른 주장의 집회신고를 할 경우, 물리적 충돌이나 집회 방해를 예방하는 조치를 하는 것과 달랐다.

“도착해서 놀란 건 정문 앞에 구사대로 보이는 건장한 남성들이 상당한 수가 서 있었고 애네들 이게 웬일이지 했는데 걸어가다 뒤쪽으로 가 보니까 그쪽에 더 많은 사람들이, 집회 대오 뒤쪽으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서 있어서 제가 사진 촬영을 그때 했고요, ... 그때 분위기는 그래서 협악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어떤 돌발상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문화제라고 해서 갔는데 양쪽에 우리는 또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구사대로 딱 보였고 다 현대자동차 잠바를 입고 장갑 끼고 있어가지고 되게 이렇게 위협을 주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수백 명이 서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양쪽에 있으니까 우리 이제 집회의 참가자들을 약간 앞뒤에서 탁 이렇게 막고 있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이거 잘못하면은 양쪽에서 들어오면 위험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그때는 했죠.” (김소연 인터뷰)

“구사대랑 경찰이랑 합쳐서 거의 천 명 가까이 와 있다라는 얘기가 들렸었어요. 제가 가늠을 했을 때도 우선 그 정도는 있겠다 싶었던 게 이제 정문 쪽 이쪽에 있는 경비대랑 이쪽에 있는 경비대 여기도 한 100명 200명 경비대가 쪽 길게 늘어서 있는 게 보였고 여기도 전이랑 비슷하게 서 있는 거 보니까 진짜 한 사오백명 있겠구나 싶었고 경찰도 이제 눈에 띄게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집회 참여자 자체도 전보다 많았어요.” (박수연 인터뷰)

4월 18일, 구사대의 폭력은 천막 탈취에만 그치지 않았다. 본 집회가 끝나고 타 지역에서 온 연대자들이 버스를 타고 귀가해 사람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도 현대차는 구사대를 완전히 철수시키지 않았다. 구사대는 지속적으로 앰프로 시비를 걸거나 현수막을 빼앗으며 집회참가자들을 자극하고 충돌과 폭력을 야기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시비를 걸어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개인적으로 4월은 확실히 뭔가 지침이 있긴 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상관없으니까 연대 시민이어도 노조 사람들에게 하듯이 그냥 똑같이 막아 세워라 뭘 해도 상관 없다든 뭔가 지침이 있지 않았으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3월 달에는 제가 막아 세웠을 때는 적어도 약간 당황하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를 어떻게 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그거는 건드리지 마라는 지침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때는 아마 지침이 없었을 거고, 그게 4월에는 어쨌든 (지침이) 마련이 됐기 때문에 그런.” (박수연 인터뷰)

“흘린 정보에 의하면 이게 700 정도가 동원돼 있고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크게 일이 벌어질 것 같다 이런 정보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집회하기 전에 확인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정문 앞에 몇백이 있고 그다음에 4공장 쪽에 한 뭐 또 2~300이 또 있고 이래서 이제 양측에서 아주 조직적으로 침탈을 할 거라는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천막이 쳐지기 시작할 때 정말 그런 방식으로, 3면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밀어붙이는 방식, 이렇게 한 거죠. 화단 쪽으로 들어오는 쪽이 있고 그다음에 4공장 쪽에서 들어오고 그다음에 정문에서 이렇게 도로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제 침탈하는

방식인 거죠. 매우 조직적이었던 거죠.” (강진관 인터뷰)

“제가 화장실 갔다가 같이 이제 허00 동지랑 이제 화장실 갔다가 건너오는데 그 말벌 동지랑 횡단보도 바로 앞에서 앰프 가지고 싸움이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놈이 계속 앰프를 막 돌리고, 앰프를 갖고 투닥투닥거리고 있다가 제가 건너오는 그 시점에 앰프를 막 질질 끌고 가더라고요. 듣기 싫다는 거죠. 시비를 붙이려고 일부러 그런 거 같았어요. 그거 굳이 안 해도 되는 행동들인데 그러니까 시비를 걸어서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앰프를 이제 만지고 끌고 가니까 이제 그 말벌 동지가 왜 남의 물건을 만지냐 만지지 말라고 하고 이제 당기고 이러던 와중에 이제 확 끌 어당기길래 저도 같이 그 앰프를 자꾸 안 뺏기려고 왜 남의 물건을 끌고 가냐고 손 떼라고 이제 그러는 상황에 애네들이 또다시 우르르 몰려온 거죠.” (김주희 인터뷰)

천막 설치를 막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천막을 이미 빼앗았고 본 집회도 끝나고 타 지역에서 연대 온 사람들도 돌아간 때에 구사대는 철수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집회가 끝나고 쉬는 시간에도 앰프로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괴롭힘과 폭력을 멈추지 않았다.

“화단 쪽에 부딪힐 때는 머리를 박았고요. 던져서 그 사람들이 던져서 그냥 그냥 막 막 밀고 뜯고 밟고 했으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덜 맞았던 게 이제 막 진짜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조금 피하더라고요. 미친 듯 소리를 질렀거든요. 제 목이 한 달 동안 쉬어 있었어요. 일단은 뭐 제가 다치는 것도 다치는 거지만 첫 번째 때도 그렇고 두 번째 스피커 뺏길 때도 그렇고 여성 동지들이, 너무 많은 여성 동지들이 그리고 저기 그 말벌 동지들이 쓰러지고 자빠지고 하는데 그 위로 막 밟으니까 막 이태원 참사도 생각이 나고 밝히면 죽을 것 같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못 밟게 하려고 소리를 여기 사람 있다고 엄청 질렀던 것 같아요. 여기 사람 있으니까 밟지 말라고 근데 일단 뭐 지네들도 막 밀리고 막 밀고 밀리고 지네들끼리도 그러는 상황이라서 완전히 정말 아수라

장이었죠. 그래서 아무튼 그나마 저는 좀 덜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이제 처음에 이제 몇 건 내동댕이쳐지면서 부딪혔던 게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김주희 인터뷰)

이렇게 강도 높은 폭력을 지속할 수 있었던 배경은 경찰이 구사대가 폭력을 행사해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경찰은 상황이 마무리된 후에 나타났다. 그리고 한 일은 사진채증 뿐이었다. 그러나 사진 채증의 방향도 구사대가 아니라 집회대오를 향해 있었다. 사람들이 넘어져 깔리고 있어 피해가 더 심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집회참가자가 경찰에게 말려달라고 호소했음에도 경찰은 눈앞에 보이는 폭력을 막지 않았다. 이에 대한 집회참가자의 증언은 경찰이 폭력행사를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찰들이 자기 편임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특히 그날 경찰의 행동 너무나 화가 났었기 때문에 때리는 놈 잡아가지 않고 내가 저도 어쨌든 길에서 수십 년을 살았는데 살다 살다 경찰 다리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그날 참 질러봤거든요. 근데 경찰이 채증하고 서 있으면서 살려달라고 밑에 엎드려 제가 제가 바닥에 깔려 있는 상태로 다리를 붙잡고 일어서려고 하며 그 허벅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일어서겠다고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저는 카메라 들고 채증하면서 사람을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안 들리지 않았을 텐데 분명히 아니 사람이 자기 바지 사람이 남자 허벅지지 바지를 그렇게 붙잡고 일어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어요? 그건 모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바지 끝나 일도 아니고 내가 어디를 잡을 줄 알고 허벅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일어서겠다고 악을 쓰는데 살려달라고 하시는데 그걸 쳐다도 보질 않더라고요. 그거는 의도적인 거잖아요. 구하지 않겠다는 의도잖아요. (구사대) 애들은 기세가 등등한 게 당연한 거고 우리는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얻어맞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김주희 인터뷰)

2) 연대의 확산을 막고 이수기업 노동자들을 고립·위축시키려는 의도

이수기업 해고자 투쟁은 초반에는 공장 안, 울산지역 안에서 이루어지다가, 현대차가 고용

승계에 대해서 계속 거부하면서, 2025년 들어와서 장기화된 투쟁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전국적인 연대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2025년 2월 울산지역 2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정당으로 이루어진 ‘이수기업 정리하고 철회 및 고용승계를 위한 울산지역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25년 4월 18일 이수기업 200일 투쟁문화제에는 전국 각지에서 ‘연대버스’가 조직되어 300여 명이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에 현대차는 연대자들에게도 강도 높은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연대가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이수기업 노동자들을 고립시키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뭔가 저는 계기를 주고 싶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 일단은 3월 같은 경우에는 계기를 주고 싶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뭐 천막 친다고 천막이 없어 도 우리는 어차피 거기서 농성을 할 거지만 천막을 치고 눈에 띄게 뭔가 하나를 하게 되면은 그다음에도 이제 뭐 다른 지회나 다른 지부에서도 같은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어쨌든 물꼬를 트면 그런 식으로 계기를 주고 싶지 않아서 더 격하게 막아세웠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고, 4월 같은 경우에는 연대 시민들 연대 온 시민들을 건드렸잖아요. 그거는 (이수기업 노조들)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 너희 여기 오면 이런 일 당할 수 있다.” (박수연 인터뷰)

연대자들을 위협해 다시 연대할 수 없도록 공포감을 심어주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연대자들이 들고 있는 깃발을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는데도 깃발을 부러뜨려서 연대자들을 자극하기도 했다. 구사대가 “중량(몸무게)이나 인원이 훨씬 많은데 깃발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밀면 되는데 굳이 깃발을 뺏는다”는 증언은 구사대의 폭력의 목적이 단지 천막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상임을 유추하게 한다. 또한 구사대는 노조 조끼를 입지 않은 여성/퀴어들이 이수기업 해고노동자들이 아니라 연대자임을 알 수 있었을텐데도 집회 장소에서 끌어내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

“근데 개네들은 그거를 아예 공격을 하고 싶었으면은 그냥 밀고 들어오기만 하면 되단 말이에요. 왜냐면 개네가 이 중량(몸무게)이나 인원이 훨씬 많은데 깃발 신경 쓰지 말고 그

냥 밀면 되는데 굳이 깃대를 잡고 뺏아서 빼려고 하는 행위 자체가 그러니까 기수들을 특정해서 ... 특정한다기보다는 기수들에게 보여주려는 거죠... 타지에서 멀리서 이쪽으로 연대할 수 없도록 만들 수 있는 그들의 작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깃발을 뺏는다는 행위 자체가 개네들은 그냥 밀고 들어가면 그만인데 밀고 들어오는 순간 모두가 와서 밀쳐야지 힘이 이렇게 형성되는 거를 굳이 이 힘으로 만들 이유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신소요 인터뷰)

또한 이러한 기획된 폭력은, 현대차 불법파견 현대차 불법파견³ 투쟁의 막바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힘으로 누르고 고립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불과 투쟁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업체의 인원도 수십 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이 상황에서 이제 정규직 노조나 그다음에 비정규직 지회, 이런 노조들이 이수 투쟁에 대한 관심도, 그다음에 연대, 이런 부분들이 강하지를 앓았어요.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비정규직 지회가 이제 비대위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비대위까지 이제 해산하면서 이수기업 투쟁을 엄호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수가 혼자 소수가 싸우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거죠. 그리고 1, 2차까지도 이수 동지들이 직접 연대를 조직해 가지고 만들어서 싸우는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가 나서서 집회를 같이 한다든지, 금속노조가 주관하는 그런 집회를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이수가 주관하는 집회라는 게 재네들이 보기에는, 뭐라고 그럴까요? 막 대해도 된다고 할까요? 이걸 공격을 해서 오히려 더 강력하게 공격을 해서 누르는 게 오히려 이수 투쟁을 정리하기가 더 수월하겠다는 그런 판단도 했겠다 싶은 게 있고요. 그리고 이걸 근거가 있는 건지 모르겠다. 18일 이전까지는 이수 투쟁과 관련된 모든 계획과 처리는 울산 공장에게 맡겨져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강진관 인터뷰)

3 투쟁과 이수기업의 해고에 대해서는 이 보고서의 4장에서 다룬다.

이수기업 노동자들이 소속되어 활동하던 ‘금속노조 울산지부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는 장기간 집행부가 없는 상태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의해서 운영되다가, 비대위도 해산되면서 투쟁의 동력이 약화된 상태였다. 당초 이수기업 폐업으로 해고된 34명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정규직 노동조합인 ‘현대자동차 지부’ 사무실 내에서 머무르며, 선전전(출퇴근, 주주총회장, 모터쇼 등), 문화제 등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은 요원하였고, 결국 이수기업 해고자들은 장기적인 투쟁의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정문 앞 천막농성을 결정하였다. 이에 대한 현대차의 대응은 천막 설치를 시도할 때마다 구사대를 동원하여 천막을 빼앗고 조합원들을 밀쳐내는 등 집회를 방해하는 것이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수요집회’ 때마다 구사대로부터 두들겨 맞는 것은 당연한 것, 일상적인 것으로 여길 정도(김현제 인터뷰)로 조합원에게는 폭력에 무감해진 경향이 있었으나, 이수기업 투쟁과 같이 소수의 해고자 상태로 투쟁하는 상태에서는 위의 구사대 폭력 사건으로 조합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 특히 이번 이수기업 해고자 투쟁뿐만 아니라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조합 활동의 역사에 있어서는, 사측의 무법지대 하에서는 구사대 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하고 동시에 사법제도 하에서는 천문화적인 금액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하면서, 조합원들 다수가 노조를 탈퇴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았다.

“많이 괴롭죠. 실제로 이제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그만하자’ 그냥 매주 수요일마다 그만하자 그랬던 것 같고 오히려 또 활동하는 인원들 같은 경우는 활동가 입장에서는 이거 멈출 수가 없는 거니까 더 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꾸 이제 대오는 계속 줄고 실제로 많은 동지들이 그런 트라우마에 그거 하기도 했고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 케이스는 오히려 독에 가득 찬.” (김현제 인터뷰)

“지금은 기억 잘 안 나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두들겨 맞는다든가 폭력에 의해가지고 끌려온다든가 그 이후로 이제 아마 손배(손해배상)에 또 시달리면서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좀 외면하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 손배 때문에 전부 다 두근거리면서 고소 고발과 그런 게 좀 있었죠.” (이도한 인터뷰)

나. 여성 쿼어에 대한 강도 높은 공격

4월 18일 집회에는 여성으로 보이거나 체구가 작은 연대자들이 많았다. 구사대들에 비해 체구가 작아 물리적 충격이 클 수밖에 없고, 구사대가 전원 남성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신체적 접촉으로 인한 성추행 가능성이 많음에도 이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참가자들이 큰부상을 입었다.

1) 구사대 폭력 수행의 젠더성

이들이 머리 긴 여성들의 머리채를 잡았다는 것 자체는 상대가 여성으로 인지했고, 여성들을 제압하기 쉬운 방식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참가자들은 “그냥 만만해 보이는 째어 보이는 여자, 여자로 보이는 젊은 사람을 노렸을 거”라고 느끼기도 했다. 그래서 참가자들은 “제가 체격이 작고 왜소하니까 빼주려고 그래서 잡았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잡고 비트는 거”이거나, “여성 동지들이 그 사이에 끼여서 그만하라” 했지만 구사대들의 폭력은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집회참가자들은 이태원참사 같은 압사사태가 떠오르는 공포를 느껴야 했다. 또한 구사대가 대부분 남성이라는 점에서 폭력 행사할 때 생길 수 있는 신체 접촉과 성추행 가능성, 폭력의 피해 효과가 높아지는 것을 미리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다는 점은 폭력 수행의 젠더적 성격을 말해준다. 더구나 폭력의 수행자가 “대체로 젊은 남자들이라는 점에서 그냥 만만해 보이는 사람한테 더 공격적으로 굴었을 거”라는 증언은 구사대 또는 경비대들이 어떻게 훈련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성을 남긴다.

“일단 머리채를 잡은 거부터가, 머리채를 잡았고 그게 한두 명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일부러라도 더 폭력적으로 좀 과하게 진압을, 강경하게 강하게 진압을 들어가라는 지시가 있

4 비정규직 노동자로 이루어진 노동조합의 특성상, 불법파견 소송에서 승소해서 현대자동차에 직접고용된 후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갖지 못한다. 집행부로 역할을 하던 이들도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새롭게 집행부를 구성하지 못한 것이다.

든 지침이 있었던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변주현 동지 같은 경우에는 눈 쪽에 부상을 입어 가지고 좀 크게 다치셨었는데 뭐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쵸, 좀 사실 운동도 물론 구사대 자체가 그러니까 전원 남성으로 구성된 대체로 젊은 남자들이라는 점에서 그냥 만만해 보이는 사람한테 더 공격적으로 굴었을 거라는 그런 것도 있기는 해요, 그냥 만만해 보이는 젊어 보이는 여자, 여자로 보이는 젊은 사람을 노렸을 거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박수연 인터뷰)

“민중의례를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들이닥쳐서는 ... 사람을 ... 광주 때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사람을 개 패듯 진짜 질질 끌고 갔다, 진짜 말 그대로 남녀, 특히 여성들을 집중으로 좀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냥 체격 좋은 남성 동지는 오히려 더 그냥 때리고 여성 동지들은 머리를 잡거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민중의례 시작하고 덮쳐 올 때 누가 저를 이렇게 여기 요 부분을(오른쪽 팔 부분을 가리키며) 턱 잡는 거예요, 저는 저희 동지가 제가 체격이 작고 왜소하니까 빼주려고 그래서 잡았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잡고 비트는 거예요, 이렇게 뒤로, 그래서 뭐지? 하고 뒤돌아봤는데 용역 깡패들이 수백 명이 뒤에 쫓아와서 계속 이렇게 밀치고 여성 동지들이 그 사이에 끼여서 그만하라 하는데, 경찰은 옆에 서서 저희 보고 오히려 막 구사대들을 제지하는 것도 아니고, 진정하라 진정해라 이 말만 반복하는 거예요.” (윤혜민 인터뷰)

“그쪽에서 이제 머리를 이제 저를 뜯어내려고 한 것 같아요, 거기가 나는 밟힐까 봐 나는 사람이 밟힐까 봐, 거기를 막으려고 했던 건데 그분을 안 밟히게 하려고 막으려고 했던 건데 상황이 생각나니까 또 막 화가 나네요, 그러니까 구사대는 이제 텐트를 안 뺏기려고 그냥 막 쫓아가는 줄 알고 저를 이제 뒤로 뺄려고 머리를 쥐고 이제 뒤로 제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뒤로 밀어 넘어진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힘이 일단 딸리니까, 그 등치 큰 남자들이 쥐고 뜯는데 그걸 어떻게 안 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 동그래지는 거고 나 동그래지니까 밟으면 밟는 대로 밟히는 거고 정말 그건 진짜 생지옥이 그런 지옥이 없었어요.” (김주희 인터뷰)

4월 18일 구사대의 폭력은 노골적으로 연대자들을 노린 것은 분명해 보인다. 3월 13일에도 여성연대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직접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폭력의 방법(머리채를 잡아채는 방식)으로 여성/퀴어에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을 사용했다. 신체적 차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공격한 것이다.

“그러니까 저희 어떻게 보면 투쟁하는 투쟁 주체들 저희 이주 해고자들 위주로 폭행을 당하고 끌려가고 내동댕이 쳐지고 이렇게(3월) 13일은 그 정도로 해서 끝났고요, 밤에도 새벽에도 이렇게 밟히고 막 이랬지만, 그래도 뭐 따로 연대 오신 여성 동지나 이런 분들한테는 폭행이 거의 없었거든요, 같이 해서 잠깐 몸을 툭 치는 게 있을지 몰라도, 근데 18일 날은 확실히 변했죠,저희는 안 건들고요, 저희는 몸싸움하는 저희는 안 건들고요, 남성 동지들 좀 잘 안 건들고 좀 머리 길다 싶은 사람들은요, 남자도 머리 긴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 머리 막 잡아당기고요, 여성 동지들 위주죠, 머리 기신 분들 다 잡아가고 막 머리꼬댕이 잡고 막 당기고 땅으로 막 패댕이 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장진형 인터뷰)

이러한 공격으로 볼 때, 남성으로 이루어진 경비대가 ‘여성혐오’를 물리적 폭력에 동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직접적으로 상부에서 어떤 지시를 했든 안 했든 폭력행사를 하는 구사대 남성들에게, 연대하는 여성/퀴어에 대한 적대의식이나 소수자 혐오 정서가 작동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여성/퀴어 연대자들에 대해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찰

구사대의 폭력이 가능했던 것은 경찰이라는 공권력이 자신들에게 우호적일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 “뒤돌아봤는데 용역 깡패들이 수백 명이 뒤에 쫓아와서 계속 이렇게 밀치고 여성 동지들이 그 사이에 끼여서 그만하라 하는데, 경찰은 옆에 서서 저희 보고 오히려 막 구사대들을 제지하는 것도 아니고, 진정하라 진정해라 이 말만 반복”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경찰은 집회를 방해하며 폭력행사를 하고 있는 가해자들을 제지하는 것이 아니라 연대자들을 진정시키는 방식으로 구사대의 폭력을 방조했다.

경찰은 또한 여성/퀴어 연대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도 전혀 하지 않았다. 여경들을 부르라는 집회참가자들이 요구도 경찰은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다. 이로 인해 여성/퀴어들은 남성경찰들과 부대껴야 하는 폭력까지 감수해야 했다.

“형식적으로 여성 경찰들 장갑 끼고 앞에 네다섯 명 세워놓고 사실 그날 집회에 여성 동지들이 훨씬 더 많았고 말벌 동지들도 또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었고 남성 경찰들이 훨씬 더 많았고. 결국 자연스럽게 그냥 뭐 자기네들 자기들 마음대로 잡히는 대로 뜯어내고 그러니 신체 접촉은 불가피하게 있는 거고 수치스럽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사람이 이제 그렇게 되니까 대려 막 너무 이제 저기하니까 내 발로 걸어나가야 되나 싶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막 만지는데 누가 이렇게 맞아서 뜯거나 잡혀서 뜯거나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죠.” (김주희 인터뷰)

“그리고 그러다가 막 동지들이 그만하라 아프다 이런 소리를 막 지르고 근데 그러던 와중에 갑자기 남경이 “여경! 여경!” 이러면서 부르는데 여성 동지 대다수가 누워있는데 여경 3명 끌랑 나온 거예요. 그래놓고서는 막 여자 동지들을 막 팔을 비틀려고 하길래 제가 뒤에서 잡아당기니까 남경이 저를 탁 밀치면서 뭐 하는 거냐 이러더라고요. 몸을 막 막 이렇게 여기를 만지면서(어깨 부위를 가리킴) 솔직히 여성 동지한테 남성이 그렇게 손대는 거 특히 상체 부분은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는 짓이지? 하고 있던 와중에 뒤쪽이 더 소란스러운 거예요.” (윤혜민 인터뷰)

다. 오래된 구사대의 탈법적 상태와 무감각해지는 폭력

1) 오랜 시간 익숙해진 현대자동차 공장 내 탈법적 상태

노조간부 사찰과 구사대를 이용한 폭력, 회유를 통한 노조의 지배·개입 등 현대차의 위법행위는 오랜 시간에 걸쳐 예리하고 은밀하게 진화되어왔다. 2004년 <현대차 노동자사찰·비정규직노조탄압 진상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삼성SDI의 노동자 위치추적 뿐 아니라 2000년

기아차 「비정규직노조 설립 관련 관리방안」, 캐리어사내하청 블랙리스트 등 IMF 이후 신자유주의에 발맞추어 대기업들은 사찰 등의 방식으로 노조를 탄압·감시해왔고, 현대차 울산공장 역시 「비정규직 비상시 대응조직도」 등 내부 사찰문건이 폭로되면서 조직적 노조파괴행위가 진행되고 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⁵

위 진상조사보고서가 발표된 후 8년이 흐르는 동안, 현대차의 노조파괴 수법은 사적 영역에까지 확대되었다. 2011년 4월 13일 발표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탈퇴 강요·인권침해 진상조사보고서>에서는 원·하청 사용자들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노동조합을 탈퇴한 강요 행위, 그들이 속한 가정이나 지역사회 구성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행위, 반성문 요구 행위, 사업장 출입금지, 상시적인 감시 및 사찰, 노동조합의 자주적 조직·운영에 대한 개입 행위, 일상적 차별, 임금 및 상여금 지급 등에서의 차별, 집단 따돌림, 조합원에 대한 폭행 행사⁶ 등 현대차 자본과 그들에 부역하는 관리자들이 민주노조 조합원들에게 행하는 반인륜적 행위들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2011년 위 조사서에는 ①현장에서 교대해줘야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는 라인에서 비조합원들의 경우 생리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비교적 자유롭게 관리자나 준비된 대체인력과 교대하여 화장실에 다녀올 수 있는 반면 민주노조 조합원들의 경우 아침 8시부터 잔업 10시까지 근무를 하면서 화장실을 보내주지 않는 행위, ②회식, 야식, 교대, 경조금 등의 사소한 혜택 보이는 일상에서는 물론 비조합원들과 조합원들을 지속적으로 격리시키고, 중간에서 이간질 하는 등 우울증과 정신적 고통에 놓이게 하는 행위, ③부모님과 배우자, 학창시절 선·후배들을 찾아가 협박하는 행위 등과 같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행위부터 공권력을 동원한 무차별적인 폭력의 진상이 담겨있다.

그런데, 위 두 차례의 조사에서 구사대의 폭력행위와 그 피해의 조사는 울산공장이 아닌 아산 공장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 구사대에 의한 무차별적 폭행, 노조 파괴 행위에 대해 울산공장이 주목받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 이번 조사를 포함해 총 세 차례의 조사에 참

5 2004년 <현대자동차 노동자사찰·비정규직 노조탄압 진상조사보고서> 참조

6 2011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탈퇴강요·인권침해 진상조사보고서> 참조

여했던 활동가는 “불법파견·정규직화 투쟁에 가려져 비정규직이 당장 처한 투쟁 상황이 주목되지 못했고, 구사대로부터 어떤 폭행을 당했는지 물어봐주는 이가 없었다.”(이도한 인터뷰)고 답한다. 그만큼 노동자들이 당하는 폭력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울산공장에서도 2010년 파업 시기 납치되어 폭력을 당하는 등 개인들의 폭력 경험은 매우 심각한 것이었다.

두 명이(납치됐어요) 스타렉스에 타니까 또 거기에 한 6명인가 8명인가 또 양쪽으로 해가지고 우리 가운데 2명 딱딱 태우고 그래가지고 방어진으로 가가지고 ○○○동지가 먼저 버려지고 저는 더 갔는데 그 과정에서도 버스 안에서 스타렉스 안에서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목 누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 그 천의봉 동지가 이제 버려지고 난 다음에 000 동지가 저 구하려고 막 차 밑에다가 발 집어넣고 스트레스를 출발 못 시키게 못 출발하게 그래 나 또 “○○야” 이러니까 막 이렇게 못 내리게끔 하고 다시 이렇게 그제 현대 자동차 그리고 나서 이제 버려지고 자기네들은 가고 우리는 어깨가 그때 꺾여가지고 둘 다 병원에 가가지고 그런 사진들은 있는데 지금 뭐 찾을 수 찾을 수가 없는 둘 다 겁스를 하고, 현대 자동차는 그렇게 악랄합니다.” (이도한 인터뷰)

2) 무더진 폭력

월차휴가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아산공장 식칼테러 사태, 구사대들과 관리자들과의 스타렉스 납치테러, 분신을 결의하게 만드는 차별과 폭행, 공업탑에 날아드는 최루탄 속에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이라는 명찰표를 가슴에 달고 버텨온 세상에서, 구사대 몇백 명이 몰려와 적법한 집회신고 절차를 마친 노동자들을 구타하는 행위는 그리 독특한 경험이 아니게 만들었다.

폭력에 대소는 존재할 수 없겠으나, 이수기업 사태에 참여한 상당수는 ‘3·4월 투쟁은 그래도 2012~2016년까지의 폭력에 비하면 별것이 아니다.’라고 평가한다.(강진관 인터뷰) 수요집회⁷마다 항상 들려 나갔고, 구사대에 갈비뼈가 부러져도 다시 현장에 합류하여 투쟁해야 했

⁷ 2010년 7월 22일 대법원에서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판결이 난 이후 현대차비정규직지회에서 수요일 저녁마다 진행했던 집회이다. 그런데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화하라”고 요구하며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 천의봉씨가 2012년 10월부터 2013년 8월까지 296일의 철탑농성을 벌인 후, 사측은 노동자들이 수요집회를 할 때 구사대를 동원하여 폭력을 행사했고 그 폭력은 2016년 3월 현대차비정규직지회(울산공장)가 특별채용에 합의할 때까지 매주 지속되었다고 한다.

다. 비정규직들 간의 싸움, 정규직과의 차별 속에 마음부터 성할 곳이 없는 폭력 피해자들은 “그거를 항상 거의 뭐 일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일상이다 생각하는 거지 이제 는”(김현규 인터뷰)이라며 견딜만하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이번 4월 집회에서도 구급차를 타고 갔던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또다시 구사대로부터 폭행당하기도 하는 위험한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현대차와 공권력인 울산 북부경찰서가 결탁하여 더욱 노골적으로 현장을 탄압하는 모습은 그들에게조차 매우 위험해 보인다고 한다. (장진형 인터뷰)

현대차 비정규직, 불법파견 투쟁에 수년간 참여하고 있는 이들은 감시와 사찰, 물리적 폭력, 일상에서의 차별 등으로 유발된 트라우마가 존재하고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고 있음을 고백한다. 그럼에도 병원 치료를 받으며 폭력의 현장으로 향하거나, 투쟁을 멈추는 방법 외에는 선택지가 없기에 스스로 견뎌낼 뿐이다. (김현제 인터뷰) 현재 이수기업 투쟁 당사자들은 240일이 넘는 시간 동안 투쟁을 하고 있어 심리치료는 불가피한 상황이고, 일부 인원들은 신경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으며 잠시 대오를 이탈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발생했던 폭력의 양상과 정도를 모두 겪어보거나 목격했던 이들은 “매주 수요일마다 두들겨 맞았고, 다른 지방들은 어떤지 모르니, 이 정도 폭행은 조금 무더졌습시다.”(장진형 인터뷰)라며 트라우마를 감내한다.

최병승의 고공농성이 종료된 후 ‘열사광장’에서 매주 열린 수요집회는 구사대에게 허락된 폭력의 장이었고, 2016년까지 비조합원이었던 비정규직에게조차 구사대의 폭력은 익숙하고, 일상으로 다가온 것처럼 보여진다. 그 당시 폭력에 노출되어 있지 않았던 비조합원들은 ‘투쟁하면 폭력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 공장에서 이 정도의 폭력은 일상이지.’라는 심정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폭력의 공장’에서 구사대의 폭력을 ‘울산 현대자동차’라는 이유로 스스로 합리화해버린다고 한다. (김현제 인터뷰)

10년 전 열사광장에서 매타작 당했던 한 노동자는, “열사광장에서 집회를 하면 항상 맞았고, 노동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맞아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했다면서 4배 정도되는 경비대가 집회인원을 전부 뜯어내 회사 정문 밖으로 들어냈는데, 너무 억울한 것은 정규직 지부가 집회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는 것이었다고 한다. (유선근 인터뷰)

현대차는 단체행동권의 행사조차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별하여 노골적으로 차별

함으로써 전형적인 수법으로 노동자를 갈라치기 했고,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제일 잘 때리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촉탁직 또는 불법파견 구사대를 선발하여 정규직을 시켜주겠다면서 비정규직들간에 혐오와 폭력을 부추겼다.

3) 일상화된 감시와 사찰

노동조합 집행부와 주요 활동가에 대한 사찰과 감시는 매우 체계적이었고, 일상적이었다. 각 구사대의 '내부조'마다 차량이 수 대씩 배치되었으며, 감시 대상이 화장실에 가는 것, 화장실에 가서 어떤 행위를 하는지에 대해서까지도 매우 상세하게 일거수일투족이 어딘가에게 보고되었다. 그들의 집 앞에 찾아가 지속적인 감시 사찰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종명 인터뷰)

노동자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관찰하는 방법 역시 고효율, 저비용의 방법으로 진화해왔다. 현재 공장 여러 곳을 비추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특히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해고자 복직투쟁위의 사무실을 24시간 비추는 CCTV도 존재하며, 문화제 등을 하는 경우, 공장 주변 아파트 옥상에 올라 그들을 촬영한다. CCTV에 의해 노조활동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사생활조차 감시당하는 일상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예전부터 해투위를 비추고 있었기 때문에, CCTV를 제거해달라는 요구를 해 볼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이종명 인터뷰) 라고 답변하였다. 그래도 무법천지인 10년 전과 비교해 차량을 이용한 사찰이 거의 줄어든 현재는 ‘그런 것 정도는 뭐’ 수준의 감시·사찰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종명 인터뷰)

4) 죄의식 없는 구사대와 관리직

현대차 경비대원의 인터뷰에 의하면 촉탁직 경비대가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경우 정규직 채용이나 금전적 포상이 주어지고, 문제가 생겨도 현대차가 법무팀 등을 통해 법적인 책임을 분담해주기 때문에 구사대들은 인간적 양심에 눈을 감게 된 것으로 보인다. 수년 간 구사대 역할을 해 온 경비대원들은 폭력에 있어서도 공과 사를 구분하면서 공적으로는 폭력을 행사하고, 사적으로는 관계를 유지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등 현대차가 만든 이상한 사회에 매몰되어 있는 듯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폭행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그리고 그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게 되면 죄의식이 점차로 무뎈진다. 그래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이수기업 사태 당시 해고노동자들에게 연대하기 위해서 온 여성/퀴어들을 집중적으로 구타하는 일도 벌어진 것이다.

라. 치외법권 지대가 된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 앞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앞은 회사의 사유지가 아니다. 노동자, 지역 주민,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공공의 공간이다. 또한 노동자의 집회, 시위, 발언이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장소이다. 실제로 정문 앞은 집회 신고가 가능한 공간이며, 노동조합의 합법적 집회가 수차례 열린 바 있다. 그러나 지난 3월과 4월, 이곳은 구사대의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치외법권 지대로 전락했다.

1) 구사대와 경찰의 공모로 만들어진 ‘고립된 폭력지대’

이번 폭력사태에서 드러난 점은, 현대자동차가 울산공장 정문 앞을 사실상 ‘사유지’로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이다. 집회는 사전에 적법하게 신고된 공간에서 진행되었고, 해당 장소는 현대차에게 시설관리를 위한 배타적 권한이 존재하는 사유지나 통제구역이 아님에도, 구사대는 정문 앞 공간을 500명가량의 인력을 동원하여 둘러싸서 봉쇄하고, 천막을 찢고, 강탈하고, 현수막을 강탈했으며, 깃대를 부러뜨리고, 폭력행위를 자행하였다.

더욱 심각한 점은, 이 과정에서 경찰이 물리적 행사에 개입하거나 폭력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집회신고가 이뤄진 상황에서 현장에 출동한 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사대의 폭력행위를 사실상 방관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현대자동차의 사적 물리적 행사를 허용하였다. 이러한 공권력과 사적 폭력의 공모는 정문 앞 공간을 치외법권 지대로 만든 핵심 요인이었다.

2)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앞 공간의 상징성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니라, 노동자가 현대자동차 내부를 향하여 경고를 전달하는 통로이자, 현대자동차 외부로 연대의 메시지를 전하는 공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정문 앞 공간을 구사대는 물리적으로 봉쇄하고, 폭력행위를 자행함으로써,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폭력의 상흔을 남긴 장소로 각인시켰다. 이는 노동자와 시민사회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나아가 그 목소리를 가두고 침묵시키는 전략으로 기능하는 바, 정문이란 공간의 상징성을 훼손하였다.

현대차 입장에서 정문은 누구에게나 보이는 공간이다. 차량이 오가고, 언론이 접근하며, 시민들과 주요 인사들이 오가는 곳으로, 사회적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장소이다. 현대자동차는 이곳을 통제함으로써, 여론과 사회적 감시를 차단하고자 하였다. 정문 앞이 고립되고, 폭력이 허용되며, 공권력이 철수한 공간이 됨으로써, 노동권, 인권, 시민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무법지대가 형성된 것이다.

진상조사단은 이번 폭력사태를 통하여 현대차의 공공의 공간에 대한 인식과 그간 이루어진 폭력의 일상화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지 확인할 수 있었으며, 사기업의 불법적인 노무관리와 공권력의 방기가 결합되어 공공의 공간이 인권침해의 사각지대로 변질될 수 있음을 목도하였는 바, 본 보고서를 통하여 이를 기록하고, 사회에 고발하고자 한다.

4. 경찰 수사 경과

가. 구사대들의 폭행 및 상해 및 집회방해죄 관련 수사

현대차 구사대들은 2025년 3월 13일부터 14일, 같은 해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집회참가자들을 폭행하여 적어도 32명에게 상해를 입혔고, 두 차례에 걸쳐 천막을 강취했을 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를 방해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력은 위 범죄 상황을 직접 목격

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증 카메라를 이용하여 모두 촬영하였고, 울산북구청이 관리하는 방범용 CCTV에는 증거영상이 보존되어 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 중 1인(고소사건 진행 중)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사건은 고소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입건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수사개시의 원인을 수사의 단서라고 하고, 수사의 단서에 수사기관 자신의 체험에 의한 경우와 타인의 체험의 청취에 의한 경우가 있는데, 현행범인의 체포 등이 전자에 속하고, 후자에는 고소, 고발, 자수, 진정, 범죄신고 등이 포함된다(이재상, 신형사소송법 제2판 19면). 따라서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과 실무상 이 사건의 경우 관할경찰서인 울산북구경찰서가 사건 당일 현대차 구사대들의 범행장면에 대한 직접 목격 및 채증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였으므로 수사를 개시하기에 충분함에도 피해자 고소의 부존재를 이유로 수사개시에 관한 형사소송법상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이와 대조적으로 울산북부경찰서는 2025년 3월 13일 집회 과정에서 천막 강탈에 항의하면서 정문 앞에서 2025년 3월 14일까지 아침까지 항의집회를 이어간 것과 관련하여 신고범위를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집회주최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위 집회는 2025년 3월 13일 집회 과정에서 구사대에 의한 천막 강취와 집회 방해에 항의하기 위한 긴급집회, 우발집회로 집시법상 신고 절차의 예외 대상으로 앞선 본래의 집회와는 다른 집회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 새벽시간 때 구사대의 위법행위에 항의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 시간, 방법 등에 비춰봤을 때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2025년 3월 13일 구사대의 집시법 위반 및 폭력 행위에 대하여 전혀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에 비춰봤을 때 공정성을 상실한 편파적인 수사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한편 2025년 4월 18일 200일 문화제 참가자 1인이 2025년 4월 19일 00:02경 112 신고센터에 현대차 구사대에 의한 피해사실(상해)을 신고하였고, 같은 날 01시~03시경 울산북부경찰

서에 고소하였다. 울산북부경찰서 수사과는 같은 날 13:51 위 피해자를 조사하였으나, 피해자에게 CCTV⁸ 내지 경찰이 확보한 증거 영상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 피해자 진술조서(변주현)의 기재에 따르면 조사관은 피해자가 폭행한 사람이 현대차 경비원이라고 진술하자 폭행한 사람들이 현대자동차 경비원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고 질문할 뿐 더 이상 구체적으로 피의자 특정과 관련된 질문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피해 사실이 담긴 CCTV 및 경력이 촬영한 영상 자료를 확보하였으나, 해당 영상에 촬영된 사람이 많아 구체적으로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5년 6월 말 현재 위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가 전혀 진척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나 사건 당일 현장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자들이 현대차 보안운영팀 소속이라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고, 그렇다면 경찰은 현대차 울산공장에게 현대차 보안운영팀 소속 직원들의 인상착의를 특정할 수 있는 인사카드 등을 임의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불응시 관련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하여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의무를 해태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나. 천막 강취에 대한 수사

울산북부경찰서는 사건발생 한 달 이상 지난 2025년 5월 22일 집회 주최자 안미숙에게 ‘천막 손괴’와 관련한 수사를 하겠다고 연락을 하였다. 폭행, 상해 등의 경우와 달리 피해자들의 고소가 없었음에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한 것이다.

피해자진술조서의 기재에 따르면 울산북부경찰서는 2025년 3월 13일과 2025년 4월 18일 집회물품 관련 사건을 ‘재물손괴’로 칭하고 있다. 그러나 구사대들이 집회참가자들을 폭행·협박하여 집회주최자의 재물인 천막을 손괴하는 것을 넘어 강취했기 때문에 강도죄로 의율함이 마땅함에도 재물손괴로 사건을 축소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안미숙은 2025년 5월 23일 울산북부경찰서 수사과에서 출석하여 피해상황에 대해 진술하였고, 경찰은 지원사업부장 신현태와 협력지원실장 이정석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된다(그 신분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 조사에서 안미숙은 ‘경비대장(보안운영팀장을 지칭함) 이호준을 천막 강취의 현장지휘자로 특정하였고(당시 현장에 있었던 집회참가자나 경력에게 이호준이 현장 책임자라는 점은 공지의 사실이다), 조사관 스스로 ‘통상적으로 그런 일을 지시하는 사람에 대해 예를 들어 사장이나 부사장, 실장 등 이러한 사람들이 지시를 하였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피해자진술조서(안미숙) 제5면]’라고 질문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호준의 사무실과 핸드폰 및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통하여 통화내역과 메신저 내역 등을 파악하면 이호준이 누구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의 범행을 실행하였는지 충분히 확인하여 관련자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025년 7월 중순 현재 수사 진행 중이다.

⁸ 울산지방법원은 피해자 대리인이 2025. 5. 19. 신청한 증거보전신청에 대하여 ▲ 위 피해자가 울산북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 수사기관에서 증거보전 대상인 CCTV를 확보하였으며 ▲ 수사기관에서 위 CCTV 영상을 확보한 경우 위 피해자는 수사절차에서 자료를 열람·복사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25. 6. 10.자 2025카기5288 결정 참조).

III

현대자동차의 구사대 이용
노무관리 문제

1. 서론

가. 역사적 맥락

1)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이라는 계급

1998년 고용유연성이라는 이유로 탄생한 ‘비정규직’은, 현대가 지배하는 공화국 내에서는 또 하나의 계급이었다. 2003년 현대차 비정규직노동조합이 설립되고 20년 전의 그들은 2025년과 마찬가지로 불법파견 철폐를 주장하며 현대차 자본과 대립했다.

20년 전, 구사대 폭력에 맞서 비정규직철폐 투쟁에 참여했던 이들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파업을 하면 대체 인력이 전부 대비되어 있었고, 구사대가 진입하여 파업하는 사람들을 짓밟았다. 오히려 20년 동안 구사대는 더욱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화했다.’라고 말한다. (김기호, 이도한 인터뷰)

현대차의 손해배상 가압류, 무차별적인 폭행, 일상적 차별 그리고 법제도의 불비(不備)와 지역적·사회적 무관심은 비정규직이라는 처음 보는 제도적 불합리에 노동자들을 자살 등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게 했다. 사상 최대 규모인 1만 명의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했다는 노동부의 판정이 나온 후,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대치 중이던 2005년, 수배 중이던 비정규직 노조위원장을 약 100여 명의 구사대가 달려들어 얼굴에 보자기를 씌워 스타렉스에 싣고 얼굴과 목, 허리, 등을 구타한 뒤 공장 밖을 나가 사전 대기 중이던 경찰에 넘기는 행위, 2006년 울산 1공장 점거 투쟁 당시에는 점거 인원의 약 3~5배 정도 되는 구사대와 ‘이사급 대우’의 직책을 가진 관리자들이 전부 현장에 나와 이들을 진압하는 행위 등이 있었다. 노조 활동가들이 혼자 있는 틈을 노려 다수의 구사대는 그들을 스타렉스에 납치해 무차별 폭력을 가한 뒤 공장 밖, 아산로, 해안로 등에 내던져버리기도 했고, 납치한 채 고막이 터질 정도로 짓밟아 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현대차의 구사대를 이용한 활동가 납치, 폭행, 유기는 수년 동안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반복되었으며, 특정 당사자에게 3차례 이상에 걸쳐 발생하기도 하였다

2011년에도 CTS(차량 문짝 탈거 공정)점거 파업 당시 구내 버스에 노동자들을 납치해 방어

진 주변에 버리는 등 납치 후 폭력행사 등 유기치상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2) 2013년 8월 8일, 그 후 시작된 수요집회

최병승과 천의봉이 2012년 10월 17일 불법파견 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현대차 명촌주차장의 철탑에 오른 후, 2013년 7월 20일 그들의 투쟁에 연대하기 위해 한진중공업의 희망적 분위기를 가득 실은 희망버스가 도착한다. 그러나 현대차 희망버스는 결의를 굳게 다진 현대차 구사대와 크게 맞닥뜨리게 된다. 그리고 최병승과 천의봉은 2013년 8월 8일 건강상의 이유로 철탑에서 내려온다.



▲ 2013. 7. 20, 6차 희망버스 당시 사진⁹

대법원이 현대차 울산공장의 조립공정 사내하청 노동자인 최병승에 대하여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정규직으로 고용하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울산공장 내 전반적인 파견법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는 현대차와의 싸움은 지속되었고, 울산공장의 비정규직들은 2016년 현대차가 비정규직들에게 특별채용을 제안하기까지 매주 수요일 이른바, '수요집회'를 이어간다.

현대차는 “열사광장”에서 매주 진행되는 수요집회의 공간을 그들보다 2~3배 많은 구사대를 이용하여 침탈하였고, 여성들에 대한 성폭행이 있었다는 진술도 존재한다. 그 당시 집회에 참여했던 이들은 매주 수요일은 ‘쳐맞는 날’이라고 별칭하면서도 수년간 수요집회를 이어왔다. 매주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때리는 자와 맞는 자가 정해진 형태로 수년간 행해진 폭력은, 구사대와 비정규직 모두를 폭력에 무더지게 만들었다.



▲ 최병승, 천의봉의 철탑농성 당시 사진

9 송고, “현대차 울산공장 ‘희망버스 집회’ 12명 ‘집유’”, 2015. 12. 07.,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51207127600057>

폭력이 유독 심한 날에는 경찰에 고소, 고발하기도 하였으나 단 한 번도 책임자가 처벌 받는 경우는 볼 수 없었고, 공권력의 통제가 무의미한 무법지대에서는 국가권력과 경제권력에 게 허락받은 조용한 폭력이 수십 회에 걸쳐 오랫동안 자행되었다.

비정규직들이 울산공장 본관 뒤 비정규직 사무실에서 모여 열을 맞춰 열사광장까지 투쟁가를 외치며 행진하면, 광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구사대가 폭행하기 시작했고, 수치심을 유발하고자 수요집회에 참여한 남·여 비정규직들의 옷을 모두가 보는 앞에서 벗겨버리기도 하였다. 10년 전 열사광장에서 매타작 당했던 한 노동자는, “열사광장에서 집회를 하면 항상 맞았고, 노동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맞아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했다면서 4배 정도 되는 구사대가 집회 인원을 전부 뜯어내 회사 정문 밖으로 들어냈는데, 너무 억울한 것은 정규직 지부가 집회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는 것이었다고 한다.

현대차는 단체행동권위행사조차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별하여 차별하는 전형적인 수법으로 노동자를 갈라치기 했고,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제일 잘 때리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축탁직 또는 불법파견 구사대를 선발하여 정규직을 시켜주겠다면서 비정규직들 간에 혐오와 폭력을 부추겼다.

2. 구사대 운영 실태

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보안운영팀의 조직구성

1) 개관

2025년 3월 13~14일과 4월 18~19일에 폭력을 행사했던 구사대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울산비즈니스지원실 산하 보안운영팀 정규직 및 계약직 직원들로 확인된다. 여기에서는 이 보안운영팀의 조직구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차 울산공장의 보안운영팀 조직은 ① 현대차 울산공장(원청)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보안운영팀 소속의 직원과 ② 축탁직으로 채용된 직원, ③ 원청에서 직접 고용하지 않고 하청

등을 통해 고용된 이른바 ‘보안업체 직원’으로 구성되고, 정규직과 축탁·계약직 직원의 수는 총 260여 명 정도이며, 외부 용역업체 소속 직원의 수는 120여 명 정도임이 확인된다. 그중 현대자동차 울산지부 보안지회에서 활동하는 인원은 약 10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인다. 조직이 계약형태에 따라 구분된 이유는 IMF를 거쳐 현대차 비정규직의 투쟁이 시작되면서 그 투쟁을 진압하기 위한 방편으로 간접고용 형태로 구사대들을 고용했기 때문이다. 유혈투쟁이 있었던 2000년대부터 2010년 초, 당시 울산공장에 간접고용 형태로 고용된 구사대 인력은 약 300명 정도였다고 한다. 현대차가 하청업체 인력을 줄이고, 그 대안으로 축탁 계약직과 20개월 정도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구사대를 운영하는 이유는 현대차의 불법파견 문제, 즉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통해 현대차에게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의무가 있음을 법원이 확인한 이후부터’라고 말한다.

2) 어떻게 조직되는가? : 채용 및 계약형태

가) 인력 구성, 고용 형태 관련

개관에서 살핀 것처럼, 현대차 울산공장의 경비대는 260여 명의 정규직과 축탁·계약직, 120여 명의 외부 용역업체로 구성된다. 현대차 측에서 직접 채용하는 정규직 및 축탁·계약직의 경우, 현재는 자리가 생기더라도 정규직 채용은 하지 않고 대부분 축탁·계약직으로만 충원을 하고 있고, 따라서 정규직보다 축탁직 직원의 수가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며, 축탁·계약직의 경우 통상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짧으면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부 용역업체의 경우 현대차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중간에 현대엔지니어링을 끼워 넣어 현대엔지니어링이 원청으로서 외부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불법파견 등 법적 책임소재가 문제될 경우 이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외부 용역업체와의 계약은 통상 2년에서 4년 정도 기간을 유지한 후 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주기적으로 업체를 변경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위와 같이 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기존 근무자들은 종전 용역업체에서 전원 퇴사 처리를 한 후 새롭게 선정된 업체에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여 사실상의 고용승계가 되어 온 것으로 파악된다.

현대차 측에서 직접 채용한 정규직 및 촉탁·계약직 직원들은 울산공장의 제1공장에서 제5공장까지의 구역을 담당하고, 외부 용역업체 소속 직원들은 수출선적 부두 및 본공장의 외곽 지역(해안문 시트공장과 매암동 공장 등)을 담당하고 있다. 다만, 외부 용역업체 소속 직원들은 2019년 12월경 ‘보안지회’를 설립하여 활동하고 있는 데다가 본공장 외의 외곽지역을 담당하고 있어 본공장 구역에서 상황 발생시 구사대 역할은 주로 정규직 및 촉탁·계약직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나) 모집·채용, 직무교육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보안인력 운영실태 관련자료의 기재¹⁰에 따르면 보안운영팀 정규직 및 촉탁·계약직 직원은 공채를 통해 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관련자 진술에 따르면 현재는 정규직 채용은 하지 않고 대부분 촉탁·계약직으로만 충원하고 있으며, 지인을 통해 입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공장 외곽지역을 담당하는 외부 용역업체의 경우 입찰의 형식을 통해 선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상적인 입찰을 통해 일반 업체가 선정되는 경우도 있는 반면, 사측에서 퇴직하는 중역들로 하여금 업체를 차리게 한 후 해당 업체를 선정하여 일정 기간 보안용역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종전에는 특수부대, 해병대, 운동부, 운동선수 출신 등 체격이 좋은 청년들을 위주로 많이 채용하였다고 하며, 현재는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구사대의 역할을

감안했을 때 종전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대차는 보안운영팀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서류전형→면접→인적성검사→채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회신하였다. 구사대를 특수부대, 해병대, 운동부 출신의 젊은 인력 위주로 구성할 경우, 그들 사이에 기수와 나이에 따라 서열이 쉽게 정리되어 위계질서가 형성되기 때문에 상황 발생시 보다 조직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이 때문에 구사대의 지휘체계를 구성하거나 구사대 인력의 진급을 심사할 때에도 기수와 나이를 감안한다고 한다.

또한, 현대차 측은 노동조합의 집회를 진압하고 침탈하는 과정에서 여성 조합원에 대한 신체 접촉 이슈가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종전에는 여성 구사대 인력을 고용하여 대응하였으나, 2025년 3월과 4월에 발생한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에서는 여성 구사대 인력은 동원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현대차 측은 채용 과정을 전·후하여 지원자에게 또는 신규채용이 완료된 직원에게, 입사 이후 ‘구사대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고지하거나 안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위반의 문제가 있다. 채용 후 보안운영팀 인력에 대한 직무교육 과정에서 구사대 임무와 관련된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자 진술에 따르면, 처음에는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미리 편성되어 있는 대응조에 따라 현장에 투입되고, 그 과정에서 선배들과 함께 구사대 임무를 수행하면서 비로소 구사대 역할을 알게 되고 체득하게 된다고 한다.

다) 구사대 인력에 대한 보상, 포상, 대우 등

현대차 측이 직접 고용한 보안운영팀 촉탁·계약직의 경우 정규직과 대등한 수준의 급여와 성과급 등 대우를 받는 것으로 파악된다. 외부 용역업체 소속의 경우에는 과거 구사대 역할을 할 때에는 대우가 좋았으나, 현재는 급여 조건이 과거보다 나빠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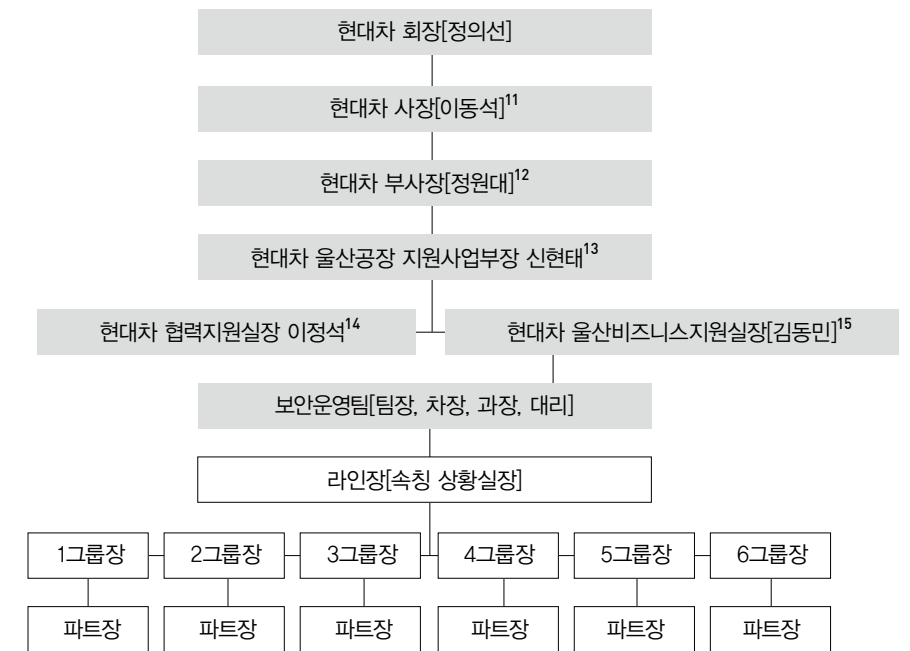
10 위 자료는 고용노동부가 요청하여 현대차가 작성한 자료임.

구사대 인력이 그 임무수행 과정에서 특별한 활약을 하거나 기여 또는 희생을 한 경우, 또는 사기진작이나 회유가 필요한 경우, 현대차 측은 ① 정규직 전환, ② 보상과 포상, ③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사측의 전면적 지원이라는 카드를 사용하여 관리해온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촉탁·계약직 인력이 구사대 임무수행 중 크게 다치거나 특별한 활약, 중요한 기여를 한 경우 사측은 해당 인력에게 '정규직 전환'이라는 보상을 부여함으로써 구사대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충성도를 강화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 뿐만 아니라 특정한 문제 상황에서 특정 인력에 대한 회유가 필요한 경우에도 '정규직 전환'이라는 카드를 내세워 회유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 나아가 '정규직 전환'이라는 보상은 구사대 사이에 충성경쟁의 도구로 쓰이기도 하고, 현장에서 필요 이상의 과도한 대응으로 큰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어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사대 인력이 임무수행으로 인해 수사의 대상이 되고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거나 배상책임을 지는 등 법적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현대자동차 측은 '회사와 관련된 내용을 함구할 것'을 조건으로 모든 금전적인 책임을 전면적으로 부담해줌으로써, 구사대의 든든한 뒷배 역할을 하며 리스크 관리를 해온 것으로 파악된다. 나아가 비록 중요한 기여나 큰 희생은 아니더라도, 임무수행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나름의 활약을 한 인력에게도 반드시 보상과 포상을 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해온 것으로 보인다.

나. 누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 운영 및 지휘·명령 체계

1) 보안운영팀의 직급 체계



* 편의상 사무직은 현장직은 으로 표시

현대차 울산공장의 총무실(현재는 울산비즈니스지원실)의 지휘를 받는 보안운영팀은 현장 직을 수행하면서도 상황실에서 그룹장에게 지시를 내리는 '라인장'을 통해 현장 경비대를 지휘·통솔하게 된다.

라인장 이하에는 6명의 그룹장[속칭 '현장반장']이 자리잡고 있는데, 평시의 경우 6개의 그룹을 각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본관 정문을 기준으로 5공장이 존재하는 위측 지역은 1지역, 정문을 기준으로 명천지역이 있는 아래 측 지역은 2지역으로 구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11 현대차 이동석 사장 프로필 <https://zdnet.co.kr/view/?no=20231220131319>

12 정원대 부사장은 1965년 12월 생으로, 경희대학교를 졸업하고 2023년 HR사업부장(전무)를 역임하고, 2024년 현대차 생산지원담당 부사장으로 승진하여 현재에도 국내지원담당 및 생산지원담당 부사장직을 수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https://www.mk.co.kr/news/business/11107728>

13 신현태 지원사업부장(상무)은 1969년 1월생으로, 경북대학교를 졸업하고 2022년 울산인사실장, 2023년 협력지원실장을 역임하고 2024년 12월 기준 울산공장 지원사업부장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사료됨. <https://www.ulsanpress.net/news/articleView.html?idxno=545109>

14 이정석 협력지원실장(상무)는 비교적 최근 상무직을 수행하게 됨, 한편 협력지원실은 비정규직 관련 업무를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것으로 보여짐.

15 기존 총무실의 명칭은 최근 비즈니스지원실로 변경되었음.

위 근무 지역은 1년 내지 2년마다 변경된다고 한다.

비정규직 투쟁이 활발했던 2013년 당시 보안운영팀은 3개의 현장반(그룹) 인원이 총 약 600명 정도로 조직되어 운영되다가 최근에는 약 42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울산북부경찰서가 이 사건 천막강취와 관련하여 지원사업부장 신현태를 비롯해 협력지원실장 이정석까지 조사한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불법행위에 울산공장 내 고위직 인사의 구체적인 지휘·명령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현대차 울산공장 배치도, 우측 검은 표시는 1지역, 좌측 검은 표시는 2지역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위 직급체계는 군부대의 직급체계와 매우 닮아있다. 현장직인 라인장은 상황실에서 근무하면서 직급상 보안운영팀의 사무직 대리보다 낮은 직급에 위치하지만, 마치 군대에서 임관한 소위가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주임원사에게 지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안운영팀 대리가 울산비즈니스지원실장 내지 보안운영팀장의 지시를 받아 라인장에게 전달

하지만, 라인장에게 직접 지시하는 것은 어렵다고 한다. 이는 구사대의 구성이 체격 좋은 특전사 내지 군인 출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영향을 받았다고 추측된다. 이와 같은 직급체계는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생기면서라고 본다.

한편, 최병승의 철탑농성 이후 현대차에 대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하청업체에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어렵게 된 현대차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해안가나 세종공업 방향에 위치한 시트공장이나 매암동 공장 방향 등 노동환경이 다소 열악한 공장 외곽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참조).

이러한 직급체계에 대해서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보안인력 운영실태 관련 자료’에서도 확인된다[현대차는 직원(매니저)-현장 관리자(파트장, 그룹장, 라인장)-사무실 관리자(워킹 그룹장, 팀장) 으로 보안운영팀이 지휘된다고 답변하였다.]

2) 최근 보안운영팀의 상황

현대차 비정규직들이 노조를 설립한 초창기, 현대차는 비정규직들이 조직한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구사대를 조직하면서 책임회피, 노동유연성 등을 이유로 간접고용 방식으로 구사대를 고용하였는데, 이들은 총무팀에 소속되었고 착용하는 명찰에도 ‘총무팀’이라고 표기되어 근무를 하였다. 이후 총무실의 담당 업무도 세분화되어 보안운영팀으로 소속되어 활동하게 되었는데, 위 불법파견이 문제되면서 근무지나 업무내용 등이 원청 소속 경비대와 완전히 분리되었고 그들에게는 보안운영팀 소속이라고 호칭하지도 않는다고 한다.

위 불법파견 소송 등을 이유로, 현대차가 하청업체에 더 이상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어렵게 되면서 현대차는 하청업체를 간접고용하는 방식이 아닌 원청 소속의 촉탁직으로 경비대 직원들을 고용하는데, 현재 경비대 인원은 총 300명 정도로 추측되고, 그중 촉탁 계약직이 과반이라고 한다. 신규채용 대부분이 촉탁 계약직으로 이루어지는데, 고용구조나 사회적 분

위기, 시대적 흐름 등을 이유로 보안운영팀 내부에서는 집회방해나 노조 감시, 사찰 등에 대한 명령거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도 한다.

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구사대의 상시 운영현황

현대차 울산공장뿐만 아니라 아산공장, 전주공장 내 노동조합이 결성된 이후부터 노동조합 간부와 핵심활동가들에 대한 현대자동차의 사찰 의혹은 이미 20년이 다 되도록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¹⁶ ¹⁷ 한국사회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진행된 2013년 희망버스를 통해 현대차 구사대의 민낯을 볼 수 있었고, 2025년에는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이수기업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구사대의 모습을 보며 현대차의 구사대는 여전히 건실하다는 것은 엿볼 수 있었다.

1) 평시 상황

구사대에 주로 차출되는 보안운영팀의 현장직 직원들은 평소 사업장 내 순찰업무, 차량검색 업무, 산업보안 역할을 맡게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사업장으로 납품되는 물건을 검문하게 되며, 특별히 본관 앞으로 배치된 보안운영팀은 본관에 납품되는 물건이 없기 때문에 고위직 관리자들이 방문할 경우 그들의 동선을 파악하여 각 공장 내지 대기인력에게 소위 봉화대 역할을 하게 된다.

2) 조합활동 탄압

가) 구사대의 공간

노동조합의 집회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되는 구사대 인원은 집회인원의 약 2배 내지 3배를 기본으로 준비하게 된다. 3월 13일 집회의 천막을 강탈할 목적으로 구성된 구사대는 약 100명 이하의 집회참가자를 대비하여 200여 명 이상의 인원으로 조직되었고, 그보다 규모가 컸던 4월 18에는 약 500명 정도의 구사대가 300명 이하의 집회참가자에 대응하였다. 경비대가 구사대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6개의 그룹에서 근무조를 제외하고 야간조까지 전부 투입되어 최대한 인원을 채우게 되고, 그럼에도 숫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보안운영팀 외 다른 팀의 사무직들이 전부 동원되어 보안운영팀 구사대 복장을 착용한 뒤 투입될 준비를 하게 된다. 실제 집회에 참석했던 자는 2025년 3월 13일 집회에서 보안운영팀이 아닌 총무실 소속의 사무직 여성직원들도 대기 중이었다고 진술한다.

울산공장 내부에는 구사대 중 집회 대기조 외 별도 대기조를 위한 컨테이너 박스 형태의 대기장소가 마련되어 있다고 한다.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내 컨테이너 박스에는 소화기, 곤봉, 방패, 안전모 등이 구비되어 있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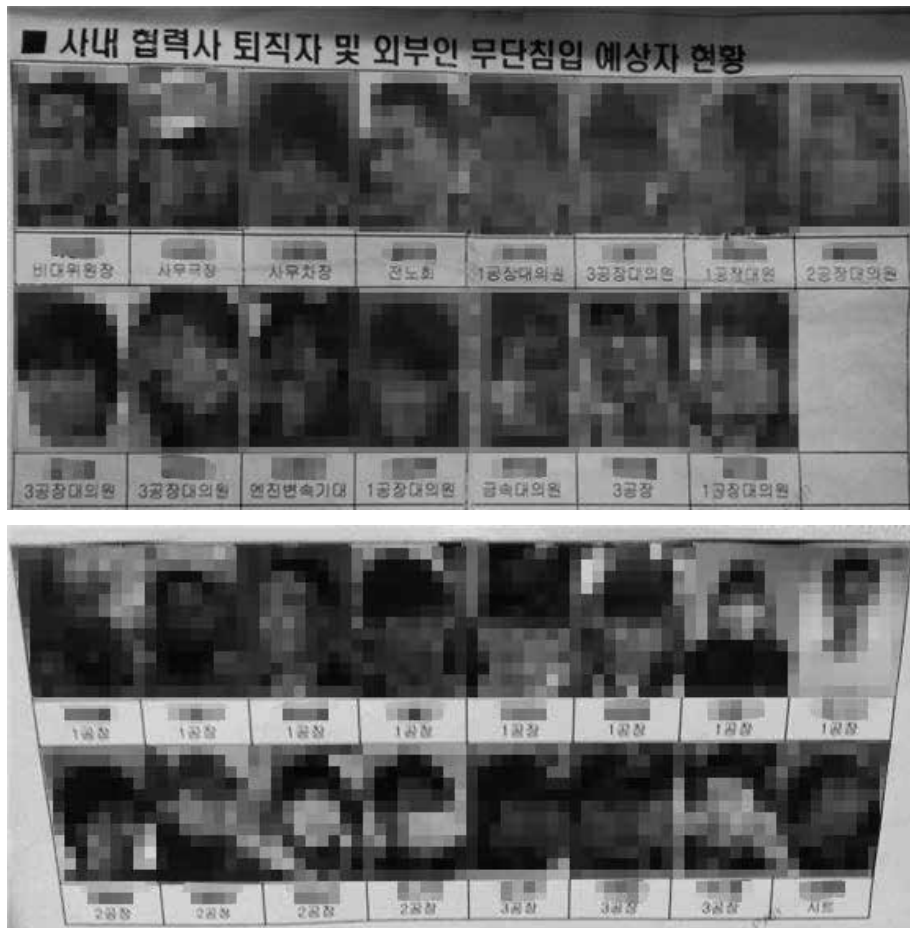
나) 상시적인 감시 및 사찰

(1) 개인에 대한 사찰, 감시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이던 2010년 초 노동조합 간부와 핵심활동가들을 표적으로 한 감시, 사찰을 위해 구사대가 이용하는 경비실에는 노동조합 간부 또는 핵심활동가의 얼굴이 촬영된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

¹⁶ 박태우·노현웅·송경화, '현대차그룹, 민간인사찰 연관정황...검찰, 알고도 더 안 됐다,' 한겨레, 2013-01-28,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1567.html

¹⁷ 김지윤, '현대차의 13년 집회방해와 검은 옷 청년들,' 뉴스타파, 2023. 8. 3, <https://newstapa.org/article/AgNAK>



▲ 현대차 사찰자료

경비대는 사측에서 제공한 위 블랙리스트 완벽하게 숙지할 것을 요구받았고, 현대차 공장에서 생산된 그랜저TG 차량을 타고 울산 공장 인근인 아산로와 염포로 등을 새벽 내내 순찰하며 노조활동가나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인물이 발견되면 해당 인물을 미행하면서 실시간으로 사측에 보고하였는데, 전주공장에서는 강하게 썬팅되어진 스타렉스나 썬타페 차량을 이용하여 표적인물의 사생활까지도 감시·사찰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때 위와 같은 감시 사찰은 울산공장에 한정하여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며 공·사를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된다.

불법파견 소송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사찰이나 감시의 정도가 약해진 것으로 보이는데, 현

재에도 특정 인물들에 대해서는 감시·사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가 있고, 노동조합 주요 인물들의 사업장 출입 시간을 기록하여 보고하는 정도로는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집회에 대한 사찰, 감시

현대차 공장 인근에서 출퇴근 선전전(이른바 출투)와 약식 집회 등에서의 감시·사찰은 그들에게 일상이다. 정문에서 진행되는 집회투쟁의 경우 일반적으로 협력지원실의 비정규직 노동관리 인력과 구사대 3인 내지 4인이 배치되어 촬영을 하고, 일반적인 노동조합 출투 선전전의 경우에도 1인 내지 2인이 길 건너편에서 촬영 및 감시를 하게 된다.



▲ 4월 이수기업 사태 당시 울산공장 인근 양정아파트에서 사찰 중인 사측 인력

(3) 일상이 되어버린 사찰과 감시

2003년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할 당시만 해도 사찰은 끊임없이 제기되는 의혹에 불과했다. 20년이 지난 현재, 현대차의 사찰은 일상을 넘어, 문제제기의 필요성조차 상실된 투명한 족쇄가 되어버렸다.

노동조합 집행부와 주요 활동가에 대한 사찰과 감시는 매우 체계적이었고, 일상적이었다.

각 구사대의 '내부조'마다 차량이 수 대씩 배정되었으며, 감시 대상이 화장실에 가는 것, 화장실에 가서 어떤 행위를 하는지에 대해서까지도 매우 상세하게 일거수일투족이 어딘가에 보고되었다. 그들의 집 앞에 찾아가 지속적인 감시 사찰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노동자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관찰하는 방법 역시 고효율, 저비용의 방법으로 진화해왔다. 현재 공장 여러 곳을 비추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특히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해고자 복직투쟁위의 사무실을 24시간 비추는 CCTV도 존재하며, 문화제 등을 하는 경우, 공장 주변 아파트 옥상에 올라 그들을 촬영한다. CCTV에 의해 노조활동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사생활조차 감시당하는 일상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예전부터 해투위를 비추고 있었기 때문에, CCTV를 제거해달라는 요구를 해볼 생각을 못 해봤다.”고 한다(이종명 인터뷰). 그래도 무법천지인 10년 전과 비교해 차량을 이용한 사찰이 거의 줄어든 현재는 ‘그런 것 정도는 뭐’ 수준의 감시·사찰에 불과하다고 한다.

울산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한 비정규직은, “80~90년대 울산은 경찰에 의한 강제 진압이나 자본에 의한 탄압이 빈번했고, 공업탐에 최루탄 날아다니는 것을 울산 시민들이라면 다 보고 자란 이야기”라며 마치 노동조합 활동하면 잡혀간다는 인식, 경찰의 방관과 조력과 공장 주변에서의 폭력은 울산 시민에게 모두 익숙한, 일상적인, 술자리의 안주거리 정도의 모습이라고 한다(김기호 인터뷰).

안타까운 것은, 2005년 3월 11일 자 매일노동뉴스¹⁸가 취재한 현대차 구사대의 운영방식과, 사찰방법, 그들의 폭행정도와 방식이 현재 2025년에서 그 수준에서 차이가 있을 뿐 매우 닮아있다는 것이다.

18 김경란, “구사대”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5. 3. 11.

다) 자주적인 조직·운영에 개입

2011년 진상조사보고서에는 ‘하청업체의 사장이 비정규지회 조합원에게 노조 대의원에 나가라고 권유하면서 생활비를 제안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징계를 하겠다고 하는 등 노동조합의 자주적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보안업무를 하는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한다는 소문을 듣고 보안운영팀의 팀장과 라인장이 찾아와 원청 정규직원으로 채용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조합원이 다수 확인된다. 현대차 임원진들이 노조 집행부와 사적 모임을 가지면서 회사가 노조 통제권을 가지고자 하는 행위는 일상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라) 노동조합의 천막 설치 방해, 물리적 충돌 등

(1) 상황 발생 시 조치

평시 보안 업무를 하던 보안운영팀은 구사대로 차출될 경우 연보라색의 평시 근무복과 구두를 안전화와 보안운영팀 관리자 복장으로 환복한다. 이는 관리자와 보안운영 요원들을 확인할 수 없게 하고, 사무직까지 차출하는 공장 특성상 전문 구사대의 인원이 많아보이도록 하고, 구사대 차출로 인한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구사대 차출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보안운영팀은 본 업무 인원을 약 30명 정도로 최소화시키고, 그 외 모든 인원들은 상황대기 상태가 되는데 경과에 따라서는 약 3일에 하루 정도만 귀가할 수 있을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2) 천막 설치 방해 행위

2025년 3월 13일 이수기업 해고자들이 설치하려고 했던 천막은 구사대에 의해 강취당했다. 그들은 천막을 강취하여 ‘포터’라고 불리는 트럭에 싣고 사라지거나 회사 담장으로 넘겨버렸다.

현대차는 천막 설치에 매우 민감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 이유는 진우JIS 해고노동자들이 공장 정문 앞에서 천막을 설치하고 장기투쟁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이라는

의견¹⁹과 천막이 설치될 경우 투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는데, 그 경우 고위직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다. 실제로 2025년 3월 13일 이수기업 천막 탈취 사태뿐만 아니라 2025년 4월 18일에도 “천막 설치를 무조건적으로 막고자 했던 모습이 확인”된다.



▲ 2025. 4. 18 천막 강탈 영상 캡처(출처 : 이수기업해고자 안미숙)

(3) 물리적 폭력

군경 출신 또는 운동선수 출신의 구사대를 이용하여 행해지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물리적 폭력행사이다.

폭력이 발생하는 이유는 상부의 지시를 받고 체계적으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한다. 사측은 구사대에 ‘폭력을 행사하라.’고 지시하지 않는다. 그저 ‘확실하게 해라.’라고만 하면 현대차에 충성을 보이려고 하는 이들에 의해 사측이 원하는 그림이 그려진다. 몸싸움은 상부의 지시가 없는 한 기한 없이 지속된다. 구사대는 전방에 현장직 경비대원들이 배치되고 후방에는 사무직으로 편성되는데, 경비대장 등 현장의 간부급 구사대들이

우선하여 물리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공격이 이루어진다. 울산공장은 보안운영팀 정규직들이 가장 앞서 회사에 충성도를 보이기 위해 가장 강력한 수준의 폭행을 행사할 준비를 한다고 한다. 2013년 현대차 희망버스 당시 집회참가자의 돌에 맞은 계약직의 구사대 직원을 운감한 당시 현대차 사장이 직접 찾아 ‘당신의 인생을 현대차에서 책임지겠다. 앞으로 정규직 하자.’라고 제안한 적이 있다. 이는 현대차의 계약직인 구사대에 대한 보상약속이 구사대의 물리적 폭력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마) 구사대에 대한 법적·경제적 조력

구사대가 아무런 걱정 없이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는, 현대차의 든든한 법적·경제적 지원이 있기 때문이다. 노조의 사측에 대한 법적 대응이 있을 경우, 현대차는 본관의 조용한 공간에 구사대들을 불러모아 약속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뒤 적게는 30만 원에서 수십만 원의 돈봉투를 건넨다.

결국 경찰조사에서 현대차의 고소·고발, 경찰의 인지수사로 인해 노조원들은 처벌되지만, 구사대들의 경우 사측과 경찰의 관계와 구사대의 일관된 진술과 현대차 법무팀의 조력을 받아 사측의 법적·경제적 피해는 매우 경미해지고, 법무팀이 지시해준대로 ‘회사가 지시한 적 없고, 제 개인의 일탈이며, 저를 처벌하면 된다.’고 진술한 경우, 수백만 원 정도의 벌금은 현대차가 직접 지불해준다. 2010년대 벌금을 받은 구사대들은 노동조합을 열심히 탄압했다는 포상을 받는 것처럼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되기도 하였고, 크게 다칠수록 더 두꺼운 돈봉투가 지급되기도 하였었다.

3) 상황 발생 시 지휘 체계

일반적인 지휘 체계는 현장직의 상황실장인 ‘라인장[상황실장]’이 보안운영팀장의 지휘를 받아 6개조로 구성된 ‘그룹장[현장 반장]’에게 일정 사항에 대해 지시를 하게 되고, 라인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그룹장들은 각 그룹에 인원을 관리하는 ‘파트장[현장 조장]’에게 인원을 모아오도록 지시하게 된다. ‘현장 대원’들은 파트장의 명령에 따라 평시에 안내받은 ‘상황발생

19 박석철, “민주당 노동위 ‘노조가입했다고 자택대기’진우3사 해결 나서, 오마이뉴스, 2017. 8. 9.,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49625

시 편성조에 배치되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울산 공장의 각 정문 앞에서 집회가 있다는 사실이 상황실장을 통해 알려지면 각 정문은 최소 인원만 남고 전부 출동하게 되고, 경비반장[그룹장]은 관할경찰서와 집회 대응회의를 하게 된다고 한다.

이 사건 폭력행위가 보안운영팀장의 결정에 따른 것인지, 그 상급인 총무실(비즈니스지원실) 또는 협력지원실이나 지원사업부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노조 관계자들은 이수기업 사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보안운영팀의 지시 사항은 상시 사내 시스템에 따라 보안운영팀을 거쳐 지원사업부 내지 정원대 부사장이나 이 동석 사장에게까지 보고될 수밖에 없다고 진술한다.

3. 구사대 동원 노무관리의 법적 · 윤리적 문제점

가. 형사적, 민사적 책임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회방해)

2025년 3월 11일자 및 2025년 4월 9일자 각 옥외집회 신고서의 각 기재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 이수기업 해고자들이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개최한 2025년 3월 13일 규탄집회 및 4월 19일 200일 문화제는 모두 적법하게 신고하여 울산북부경찰서장이 수리한 합법적인 집회다. 따라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함)에 따르면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제3조 제1항),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집회 및 시위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동조 제2항)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현대차 구사대들은 이 사건 집회장소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집단적으로 집회참가자들을 폭행하고, 집회물품인 천막을 강취하는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를 방해하고, 집회 자체를 무산시켰는바, 이는 집시법 제3조 제1, 2항을 위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집시법 제22조 제1항).

또한 현대차 울산공장 부사장, 협력지원실장, 울산비즈니스지원실장 등은 위 일시 장소에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사대들이 위 집회방해 행위를 사전에 공모하였거나, 그 실행을 지시 내지 방조한 경우 집회방해죄의 공동정범, 교사, 방조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2) 형법 위반(특수폭행, 특수상해)

현대자동차 측 보안운영팀장 이호준 등 구사대들이 공모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3월 13일 규탄집회 및 4월 19일 200일 문화제가 열린 현대차 울산공장 앞에서 집회참가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것은 형법상 특수폭행죄(제261조,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고,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 일시 장소에서 현대차 측 구사대들이 공모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집회참가자들에 대해 폭행한 것이 상해에 이르거나 집회참가자 약 32명의 신체에 상해한 것은 형법 제258조의 2 특수상해죄에 해당하고,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또한 현대차 울산공장 부사장, 협력지원실장, 울산비즈니스지원실장 등은 위 일시 장소에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사대들의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폭행 또는 상해를 공모하였거나, 그 실행을 지시 내지 방조한 경우 특수폭행죄, 특수상해죄의 공동정범, 교사, 방조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3) 민법 위반(손해배상)

현대차 측 보안운영팀장 이호준 등 구사대들이 이 사건 집회 현장에 난입하여 집회참가자들의 집회를 방해하고, 집회참가자들의 신체에 폭력 및 상해를 가하여 집회참가자들에게 손해(천막손괴, 치료비, 위자료 등)를 가했음이 명백하고, 이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현대차는 이호준 등 구사대들을 보안운영팀에 채용한 후 이 사건 집회방해업무 등에 종사하게 한 자이고, 따라서 구사대들이 이 사건 집회방해업무 등에 관하여 집회참가자들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명백한바, 이는 민법상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현대차 측이 보안운영팀 직원 채용 시 지원자에게 입사 이후 '구사대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고지하거나 안내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현대차는 보안운영팀 직원을 채용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 아니됨에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던 '구사대 임무' 하게 한 것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한다(제17조 제2항 1호, 제4조 제2,3항).

5) 기타

현대차의 구사대를 이용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 및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지적해 둔다.

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 경영 위배

1) 인권 침해 및 노동 존엄성 훼손

가) 구사대를 동원한 폭력적인 노무관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유린하는 행위이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확보하여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원리를 선언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 10. 28.자 2002헌마328 결정 참조).

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근로조건을 정하는 데에 있어 인간의 존엄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헌법상 요청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근로조건에는 공정한 임금, 합리적 노동시간, 안전한 작업환경, 산재 보상 및 실업 대책 등이 포함된다.

사용자는 노동자에 비해 경제적·사회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어, 단순한 계약 관계만으로는 노동자의 인간적 존엄을 보장할 근로조건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헌법은 제33조 제1항은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고, 노동자들은 이를 통해 사용자와의 균형을 맞추고자 한다. 노동3권은 단지 조직권의 차원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기 위한 헌법적 수단이다. 노동3권은 헌법 제32조 제3항의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핵심 수단이며, 이를 통해 노동자는 정당한 근로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하는 노동자들이 구사대의 폭력에 노출된다. 회사가 쟁의 현장에 구사대를 동원해 물리적 진압을 가하거나, 노조 활동을 방해함으로써 노동3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구사대를 동원한 폭력적 노무관리는 단순한 물리적 충돌을 유발하는 수준을 넘어서,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반헌법적 행위라 할 것이다.

나) 구사대를 통한 폭력적 노무관리는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노동자들은 구사대의 폭력적 노무관리로 인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500여 명의 무장한 남성들이 집회 현장을 포위한 뒤 천막을 강제로 탈취하며 노동자들과 연대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았다. 그 결과, 손가락 골절과 뇌진탕, 갈비뼈 부러짐 등 중상을 입은 피해자들이 속출했다. 노동자들은 건장한 남성들에게 포위된 채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꼈을 정도로 극심한 폭력에 노출되었다.

이와 같이 구사대를 동원한 조직적 폭력은 노동자들에게 깊은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겼다.

노동자들은 언제 다시 폭행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노동은 물론, 일상생활까지 어려워진 상황이다. 노동자들은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한 정당한 요구를 하였을 뿐인데 회사는 이를 폭력으로 탄압하였고,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인권은 중대하게 침해되었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기본적인 신뢰마저 완전히 붕괴되었다.

나아가 노동자들은 '직장 내에서도, 어디서도 안전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회사가 이윤 추구를 위해 언제든지 폭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사실이 노동자들에게 큰 심리적 상처를 준 것이다.

이와 같이 구사대를 동원한 폭력적 노무관리는 노동자의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다.

2) 구사대를 통한 폭력적 노무관리의 폐해

가) 구사대를 통한 폭력 행사는 노동조합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이다

건강한 노사관계란, 단지 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노동자와 사용자가 서로를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갈등을 제도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회사가 노동자의 요구나 쟁의행위에 대하여 대화와 교섭 대신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은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일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불균형한 권력 관계를 완화하는 핵심 장치다. 그러나 회사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구사대를 투입하여 폭력을 행사하거나, 노조 활동을 감시·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노동자들의 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사실상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관행은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억압하는 행위로, 노동조합이 회사를 불신하게 만들어 노사 관계를 병들게 하고, 장기적으로 회사 내의 소통 구조를 붕괴시켜 더 큰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다.

나) 구사대는 노동 탄압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

회사는 구사대와 같은 사조직을 동원해 노동조합을 탄압하면서도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첫째, 노동자들이 구사대의 폭력에 대응하기 쉽지 않다. 노동자들이 구사대의 용역폭력이 어떠한 근거로 이루어지는지, 어떠한 자가 구사대를 통제하는지에 대해 알기 어렵다.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직접 폭력을 행사한 당사자를 고발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현실적으로 가해자를 특정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우며, 고소를 비롯한 법적인 절차에 수반되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또한, 구사대원들의 이직 등으로 인한 신원 특정의 어려움, 주기적인 업체 변경 등으로 인해 법적 절차를 통한 권리구제가 어렵다. 설령, 소송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의 자리는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뿐이다.

둘째, 회사는 구사대의 폭력을 '일부 구성원의 개인적인 일탈'로 축소해 책임을 전가한다. 구사대의 폭력은 단순히 개인의 우발적인 폭력이 아니고, 조직적인 지휘 체계가 존재하는 구조적 폭력이다. 구사대의 폭력은 회사의 암묵적인 허가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폭력이 정당화되고, 이에 따라 예측 불가능한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회사는 이를 개인적 과실로 몰아간다. 가령 회사는 구사대의 폭력적인 노무관리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일 뿐 회사가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구사대를 통한 폭력적 노무관리 양상은 단지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조합을 탄압하려는 회사들 사이에서 공유되기도 한다. 실제로 발레오만도, KEC, 상신브레이크, 유성기업 등이 유사한 시기에 구사대를 통해 노동조합을 파괴하려고 하였으며, 그 양상도 고도화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반용역프로젝트팀(2012),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대안 보고서, 제13면].

3) 기업 이미지 손상 및 장기적 경쟁력 저하

회사가 구사대를 동원해 노동자를 억압하는 행위는 결국 회사의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고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저하되어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회사가 구사대를 동원하여 노동자들을 억압하면 단기적으로는 분쟁을 억제하는 효과를 낼 수 있어 보이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갈등의 잠복에 불과하다. 갈등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 문제를 덮어두는 방식은 장기적으로는 회사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구사대를 동원한 폭력적 노무관리는 노동자를 동반자가 아닌 단순한 생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과 같다. 이러한 태도는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모멸감을 주기 때문에 노사 간 신뢰 관계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킨다.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는 건설적인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해지며, 이는 노동자들이 비합법적 투쟁 이외의 선택지를 상실하게 만든다. 결국 회사의 억압적 태도는 노사 갈등을 극대화·장기화시켜 생산 차질과 회사 이미지 실추라는 이중고를 겪게 만들 것이다. 단기적인 억압이 장기적인 회사 가치 훼손으로 이어지는 역설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구사대를 통한 노동자 억압은 장기적 생산성을 저해시킬 수 있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이유는 회사를 적으로 간주하여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사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주장하기 위함이다. 만일, 노동조합이 불안정한 노동조건을 개선하여 노동자들이 마음 편히 일하게 된다면 이들은 회사에 대해 주인의식을 갖게 된다. 주인의식을 갖고 일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노동조합이 회사와의 소통을 통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회사와의 협력을 통해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 간다면, 장기적으로 노동생산성이 개선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구사대를 통하여 노동자를 억압한다면 이들의 사기와 자발적 참여의식이 떨어지고, 장기적으로 노동생산성이 저해되어 회사의 손실로 이어질 것이다.

4) 현대자동차의 폭력적 노무관리는 국내·외적으로 강력한 제재와 함께 기업의 가치 평가 하락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현대차가 구사대를 동원한 폭력적 노무 관리를 지속할 경우, EU 공급망 실사법(CSDDD) 위반으로 매출액의 최대 5%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는 물론, 국내 인권환경실사법 위반으로

경영진에 대한 형사처벌(징역형 포함)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법적 리스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제재는 기업 이미지 실추, 주가 하락, 투자 유출 등 연쇄적인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2024년부터 발효된 EU의 공급망 실사법(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공급망 내 인권 침해 가능성을 점검하고 예방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만약 구사대를 이용한 노무 관리가 인권 침해로 판단될 경우, 해당 기업은 매출액의 최대 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담할 수 있다. 이는 기업에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리스크다. 인권 침해 여부를 공급망 전반에 걸쳐 점검하고, 위반 시 회사 매출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구사대를 활용한 노무관계가 공급망 내 인권 침해라고 판단될 경우, 현대자동차는 매출액의 최대 5%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그 자체로도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다.

국내에서도 인권 경영 체계 구축을 위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인권환경실사법’이라 함)이 발의되었다. 인권환경실사법은 ① 기업의 활동이 인권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식별하고, 이를 방지 및 완화하기 위한 인권·환경실사를 하도록 법률로 명시하며, ② 실사 대상 기업활동은 기업 자신의 활동과 원자재 획득부터 최종 소비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형성된 사업관계 등으로 정의되고, ③ 인권·환경실사를 위하여 실사 대상 기업은 인권정책 수립, 인권영향평가 실시,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실행, 고충처리 메카니즘 수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④ 실사 대상 기업이 인권환경실사법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같은 행정제재는 물론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현대차는 전 세계적 ESG 경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활동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이로 인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인권현장을 제정하고, 매년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는 공급망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가 평판 악화 및 자본 유입 감소 등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공급망에서 ‘1차 협력사 대

상 강제노동 리스크 스크리닝'을 수행하고(2024년 현대자동차 지속가능성 보고서 10면), 중장기적으로 국내외 전체 1차 협력사 대상 ESG 리스크 진단을 시행하기로 하였다(2024년 현대자동차 지속가능성 보고서 17면).

그럼에도, 현대차가 자사가 표방한 ESG 경영 원칙을 소홀히 하고 구사대를 동원한 폭력적인 노무 관리를 지속할 경우 다음과 같은 리스크가 발생할 것이다. 우선 EU 공급망 실사법 위반으로 인해 매출액의 5%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인권환경실사법 위반으로 경영진이 징역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 추락으로 인해 브랜드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최근 글로벌 투자자들이 ESG 경영을 투자 결정의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는 만큼, 위와 같은 문제가 알려질 경우 글로벌 투자자들은 ESG 기준에 미달함을 이유로 현대자동차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로 인해 자본 조달 비용이 상승하고, 특히 해외 장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 더욱이, 주주들이 공급망 인권 관리 부실을 경영상 리스크로 인식하게 되어 주가 하락 압력에 노출된다. 이로 인해 궁극적으로 현대자동차의 기업 가치 평가 하락이라는 결과에 직면할 것이다.

5) 소결

구사대를 동원한 폭력적 노무관리는 노동자의 기본권과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반사회적이고 반헌법적인 행위이자,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구조적 리스크 요인이다. 이러한 폭력적 관행은 사측이 노동탄압을 수행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다.

이제는 폭력으로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대신, 지속가능한 윤리적 노무관리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노동자와, 그리고 이는 단지 노동자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는 차원을 넘어, 기업의 내적 질서와 외적 경의 상호 존중과 대화를 기반으로 하는 노사관계는 기업의 장기적 발전과 사회 전반의 신뢰 회복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IV

현대차와 이수기업의 고용구조 문제

이수기업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현대차 구사대의 폭력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에 이수기업의 고용구조를 포함한 이유는 이수기업 노동자들이 현대차 앞에서 집회를 하고 농성을 해야 했던 이유, 그리고 현대차가 그 노동자들에 대해 폭력을 행사했던 이유가 노동자들의 고용구조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수기업 노동자들이 현대차 정문 앞에서 농성을 해야했던 이유는 집단해고의 실질적인 이유가 ‘업체 폐업’이 아니라 불법파견 소송에 대한 보복이자, 불법파견 소송이 이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의도된 폭력이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그동안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투쟁을 하는 것을 막고, 자신의 방식대로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폭력적인 방식으로 노동조합을 무력화시켜왔다. 이수기업에 대한 폭력은 사실상 마지막 남은 불법파견 투쟁을 무력화하고 불법파견의 증거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현대차와 이수기업의 고용구조를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1.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의 역사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문제는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모순과 대기업의 반사회적 노무관리가 집약된 사안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이 문제는 사법부의 수차례에 걸친 불법파견 판결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조직적인 회유와 탄압, ‘특별채용’이라는 기만적 전략을 통해 2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채 현재의 폭력 사태에 이르는 역사적 배경이 되었다. 본 장에서는 투쟁의 전개 과정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그 역사와 의미를 기술한다.

가. 1시기 (2004년~2007년) : 문제의 공론화와 투쟁의 서막

1) 노동부를 통한 불법파견의 공식 인정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처음 부상한 것은 2004년, 현대차 아산 사내하청지회와 현대차 비정규직노조(현재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노동부에 집단 진정을 제기하면

서부터이다. 이는 2001년 캐리어, 2004년 금호타이어 비정규직노조의 정규직화 투쟁 성과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금속연맹 차원의 사업계획의 일환이었다.

당시 지회의 선도적인 진정 제기에 힘입어 노동부는 2004년 11월을 시작으로 현대차 울산, 아산, 전주 공장 127개 사내하청업체의 9,234개 공정에 대해 불법파견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이는 사내하청이라는 고용 형태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서는 파견이 불법이라는 노동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임을 국가기관이 확인한 첫 사례였다.

2) 첫 집단 투쟁과 원청을 향한 교섭 요구

노동부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자, 지회는 2005년 1월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첫 집단 투쟁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극심한 탄압으로 대응했고, 투쟁에 참여한 노동자 101명이 집단 해고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때 해고된 노동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이후 10년 이상 이어질 기나긴 불법파견 소송의 시발점이 되었다.

2006년, 지회는 합법적인 쟁의조정 절차를 모두 거쳐 파업권을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집단 파업을 통해 사상 처음으로 생산 라인을 중단시켰다. 컨베이어 벨트로 연결된 자동차 생산 공정의 특성상 일부 라인의 중단은 공장 전체의 중단으로 이어졌고, 이 투쟁으로 인해 원청인 현대자동차는 처음으로 지회와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이 투쟁의 결과 2007년, 해고자 복직 등을 담은 기본협약 수준의 합의안이 타결되었다.

이 시기 현대차는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고, 반성문을 요구하거나 사업장 출입을 금지시키는 등 노조탄압을 가하고, 조합원에 대한 집단따돌림을 자행하며, 조합원들을 괴롭혔다. 문제가 되는 것은 구사대를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감시와 사찰을 자행하고 조합원들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노조를 무력화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이런 차별과 모멸감 때문에 2005년 류기혁열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이 울분으로 노동조합이 파업을 조직하자 현대차는 구사대와 관리직들을 동원하여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했다. 2005년에는 수배 중인 노조 간부들을 납치하여 경찰에 넘기기도 하고, 2006년 파업 때에는 공장점거 인원을 헬

pline 넘는 구사대와 관리자들이 파업대오에 들어가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노동조합은 투쟁으로 해고자 복직 등 합의안을 타결했지만 물리적 폭력과 여러 탄압으로 침체될 수밖에 없었다. 이 시기 현대차의 노조탄압과 구사대 폭력에 대해서는 2011년 4월 11일에 발표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탈퇴 강요·인권침해 진상조사보고서〉에 잘 드러나있다.

나. 2시기 (2010년~2013년): 사법적 승리, 투쟁의 격화와 회사의 분열 전략

1) 대법원의 불법파견 인정과 회사의 의미 축소 시도

2년간의 투쟁으로 에너지를 소진한 지회가 침체기를 겪던 2010년 7월 22일, 대법원은 최병승 조합원의 해고가 부당하며, 현대차의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므로 현대차가 최병승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이는 현대차 사내하청의 불법성을 사법기관이 명백히 인정한 판결이었다.

그러나 현대차는 이 판결이 최병승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판결이라며 그 의미를 의도적으로 축소했고,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요구를 전면 거부했다.

2) 투쟁의 격화와 회사의 폭력적 탄압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지회는 대대적인 조합원 조직화에 나서며 투쟁 동력을 회복했다. 울산공장에서만 조합원 수가 600명에서 1,800명으로 급증했다. 이에 회사는 핵심 사내하청 업체를 폐업하고, 관리자들을 동원해 조합원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러한 탄압은 2010년 11월, 1공장 CTS(도어착탈) 공정의 25일간 점거 파업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정규직 노동자들이 간식과 방한복을 보내주고, 투쟁기금을 모아주는 등 연대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점거 파업은 결국 정규직 노조의 연대 단절 선언 등 총체적 압박 속에서 특별교섭을 약속받고 마무리되었으나, 그 대가는 참혹했다. 9명의 조합원이 구속되고, 회사는 213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후 리더십 공백기를 거친 지회는 2012년 새로운 집행부를 중심으로 투쟁 재개를 모색했

으나, 회사는 '3,000명 특별채용' 안을 제시하며 노동자들을 회유하기 시작했다. 이에 저항하며 2012년 10월 17일, 최병승 조합원과 천의봉 당시 사무국장은 울산공장 명춘주차장 송전탑에 올라 296일간의 고공농성에 돌입하며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지회가 제시한 안을 거부하였고, 결국 집중교섭이 중단되었다.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2010년부터 '수요집회'를 통해서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을 요구해왔다. 그런데 사측은 최병승 조합원과 천의봉 사무국장의 송전탑 농성 이후, 진행된 수요집회에 구사대를 동원하여 폭력을 자행한다. 이 시기에 조합원들은 “매주 수요일마다 두들겨맞았고 이 정도 폭행은 조금 무더졌다”고 증언한다.(장진형 인터뷰) 사내에서 집회를 하고 행진을 하는 동안 구사대가 달려들어 조합원을 폭행하면 해산이 되는 일을 계속 반복해왔던 것이다. 또한 현대차는 2013년 최병승·천의봉씨의 철탑농성을 응원하기 위해 현대자동차를 찾은 '희망버스' 승객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최병승·천의봉씨의 철탑농성을 투쟁을 고립시키고 노조의 투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악화시키려고 시도하였다.

다. 3시기 (2014년~현재): 기만적 '특별채용'과 투쟁의 교착

1) '8.18 합의'를 통한 노조 분열과 고립

현대차는 '특별채용' 카드를 통해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라는 지회의 원칙을 흔들며 내부 분열을 조장했다. 비조합원들이 회사의 특별채용안에 따른 실익을 얻는 구조 속에서, 투쟁의 동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는 결국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대의와 '투쟁하는 조합원의 정규직 우선 전환'이라는 현실론 사이의 비극적인 갈등을 낳았다.

결국 2014년 8월 18일, 지회의 최대 조직인 울산지회가 교섭에서 퇴장한 가운데 아산·전주지회가 사측과 '사내하도급 관련 합의서'(8.18 합의)에 서명한다. 이 합의는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은 채 소송을 취하하고, 근속을 일부만 인정하는 조건으로 특별채용에 응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사실상 현대차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2) 사법부의 전면적 불법파견 인정과 회사의 기만적 대응

8.18 합의 직후인 2014년 9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소송을 제기한 사내하청 노동자 1,000여 명에 대해 “모두 현대차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특정 공정이나 개인을 넘어 현대차 공장 내 모든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임을 인정한 것으로, 8.18 합의의 명분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판결이었다.

그러나 현대차는 이 판결을 정면으로 무시했다. 오히려 특별채용 공고를 내며 소송 참여자에게는 '소취하서'를, 미참여자에게는 '부제소합의서' 제출을 강요했다. 이는 불법파견의 증거를 인멸하고, 사법부의 판결보다 못한 조건으로 노동자들을 회유하여 사태를 무마하려는 기만적인 행태였다.

현대차 아산공장과 전주공장의 비정규직지회는 특별채용을 수용하고 합의에 이르렀지만,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는 그 합의를 수용하지 않았고, 2015년과 2016년 1월에도 특별채용 합의를 부결시켰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은 수요집회 등 계속 투쟁을 진행하였다.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울산공장의 투쟁을 무력화시켜서 특별채용이라는 형식으로 불법파견을 마무리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 수요집회에 물리적인 폭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수요집회는 2016년 3월 울산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가 특별채용에 합의할 때까지 계속되었고 폭력도 지속되었다. 구사대는 이렇게 불법파견을 자신의 뜻대로 제어하기 위해 현대차가 노조를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활용한 것이었다.

이러한 기만적인 '특별채용'은 이후에도 반복되었다. 2017년 1차 하청노동자 3,500명 특별채용 합의 등 유사한 방식의 합의를 통해 2012년부터 현재까지 약 9,500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회사의 불법행위가 사법적 정의를 통해 시정된 것이 아니라, 회사가 주도하는 선별적 채용이라는 방식으로 봉합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3) 불법파견 문제의 현재

2022년 노사는 다시 특별채용에 합의했으며, 지회는 불법파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

에서의 특별채용은 안 된다며 반발했다. 현재도 1,000여 명의 하청노동자들이 근로자지위확
인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등 불법파견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또 현대차는 불
법파견에 맞서 쟁의행위를 하였던 노동자들과 연대시민에게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가압류를
납용하고 있다. 2025년 6월, 현대차는 불법파견 해결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던 노동자가 숨
지자, 소송수계를 통해 70대 노모에게 그 배상책임을 지우려고 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20년 역사는 ‘투쟁 → 사법부의 불법 인정 → 회사의 기만
적 특별채용 합의를 통한 노노갈등 유발 → 투쟁 동력 약화’라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2025
년에 발생한 구사대 폭력 사건 역시 이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불법파견 소송에서 승소하
고도 정규직 채용에서 배제된 노동자들의 저항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려는 회사의 일관된 노
조파괴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한다.

2. 이수기업: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내 불법파견 업체

가. 이수기업의 담당 공정과 불법파견 판결

이수기업은 현대자동차 이사 출신 이광걸이 운영했던 1차 사내하청업체로서, 울산공장 내
에서 ‘수출용 차량 이송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수기업 노동자들은 2015년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현대자동차 각 의장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을 수출선적장²⁰까지 직접 운전해서 이
동시켰습니다. 쉽게 말해서, 의장 공장에서 빠져 나와서 대기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노
동자들이 일일이 탑승해서, 수출선적장 입구(Input)까지 운전해서 가져다 놓는 일을 하였다.
과거 현대차 울산공장 5개 중 1, 2, 4, 5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은 이수기업 소속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3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은 현대차 소속 정규직 노동자들이 담당하다가, 점차 현대
차와 이수기업 간에 도급계약의 범위를 줄이고 정규직이 맡는 공장이 늘어나면서(소위 ‘공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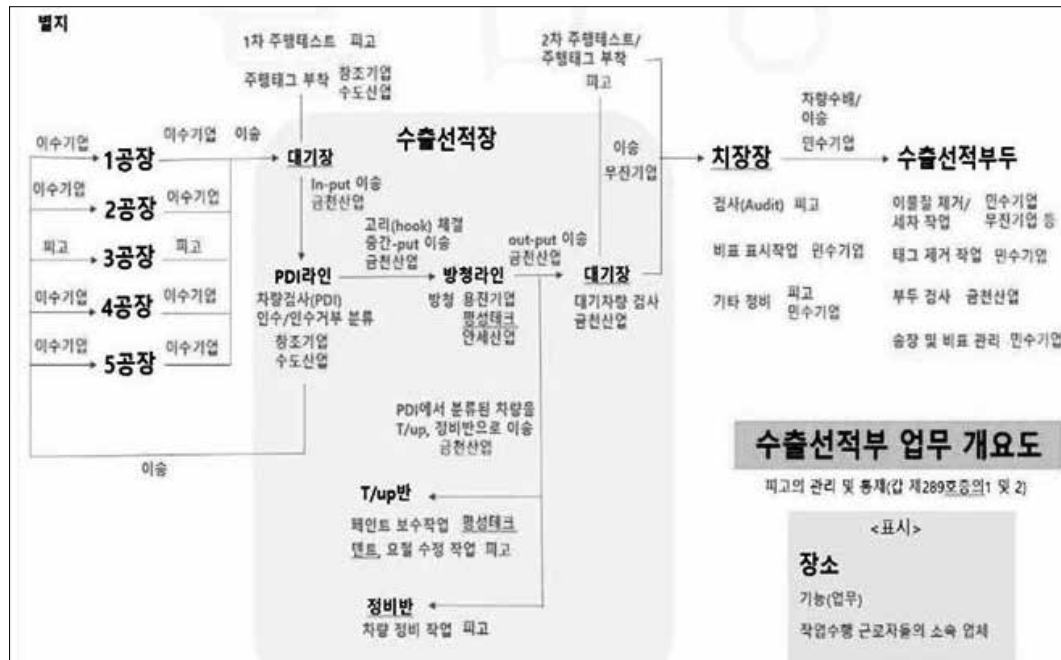
²⁰ 수출용 검사(PDI, Pre-Delivery Inspection), 방청(防錆, 부식 방지 작업) 등이 이루어지는 공장으로서, 수출선적동 또한 ‘차체→도장→의
장’으로 이어지는 자동차 생산공장과 같이 컨베이어벨트에 의한 연속흐름공정으로 작동된다.

반납’), 2024년 폐업 직전에는 5공장만 이수기업 노동자들이 담당하게 되었다.

이수기업 노동자들 몇명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하여, 2024. 5. 30.
선고 2022다224290 판결, 2024. 7. 25. 선고 2022다217728 등 판결에서 불법파견을 인정 받
았다. ‘수출선적장의 PDI, 방청라인의 작업속도는 수출선적장에 근무하는 피고 정규직 근로
자의 노동강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고와 정규직 근로자 노동조합이 위 각 라인의 시
간당 생산차량대수(UPH)를 합의하여 결정하였다. 수출선적장 내의 각 출고공정마다 필요
한 표준T/O, 표준M/H는 위 시간당 생산차량대수(UPH)에 좌우되었고, 협력업체는 어떤 작
업 공정에 몇 명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인지에 관한 일반적인 작업배치권을 행사할 수 없었
다. 피고가 협력업체에게 교부한 각종 작업표준서, 작업지시서, 체크리스트 등을 통하여 협
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 범위를 지정하는 것을 넘어 근로자의 업무 수행 전반에 대하
여 직·간접적인 지시·감독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의 수출선적팀 소속 정규
직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공정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담당하는 공정과 선후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업무가 기능적인 측면에서 분리되기 어려웠다. 또한 수출선적팀 소속 정규직 근로
자는 수출선적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정에 대한 지휘·감독이 본연의 업무로 분장되어 있
고, 실제로 수출선적팀 정규직 직원 중 2명은 PDI라인 검사작업이 이루어지는 2층 사무실
에 상주하면서 PDI라인 검사 업무를관리하고 통제하였다. 협력업체들이 자체 설비를 갖추었
다거나 독자성·전문성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 판결 이유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수기업의 ‘수출용 차량 이송 업무’는 생산공장과 선후 공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생산공정의 진행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표〉 수출용 차량의 출고 업무 순서(2017년 기준)

1 내지 5 공장 →	수출선적장 →	치장장 →		수출선적부두
1, 2, 4, 5공장: 이수기업	창조산업, 수도산업, 평성테크, 용진기업, 금천산업 등	무진기업	민수기업	향운노조
3공장: 정규직				



▲ 수출선적부 업무 개요도 위 판결에 원고 측이 제출한 것으로서, 1~5공장에서 생산되어 나온 차량을 수출선적장 PDI라인으로 이송하는 이수기업 담당 공정이 표시되어 있다.

위 소송 결과 이수기업 소속 노동자들 일부가 피고에게 직접고용되었고,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장기간 이수기업 소속으로 근무하였던 다른 노동자들도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파견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상태이다.

나. 이수기업 해고자들 현황

1) 2003년 확약서와 이에 따른 장기간의 고용승계 관행

위 업무개요도에서 볼 수 있듯이, 과거 현대차의 수출선적 부문 업무를 담당하던 9개 사내하청업체, 약 70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존재하였다. 현대차는 ‘특별채용’방식으로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하면서 수출선적 부문도 다수 직영화하거나, 일부 후행 공정(위 개요도 상 무진기업, 민수기업 담당 업무)은 사외 업체, 향운노조로 외주화하였다. 동시에 특별채용에 응하지 않고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남아서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하는 노동자들은 2개 사내하청업체

로 모였다. 수출선적 부문의 이수기업, 1~5 공장에서 지게차 등으로 부품을 운반하는 현인기업이 그 2개 업체이다.

사내하청노동자의 소속 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은 형식적으로는 현대차의 ‘취업알선’으로 A업체에서 B업체로 소속이 변경되는 외양을 띠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현대차에서 B업체에서 해당 인원을 수용할 정도의 ‘도급물량’을 부여하면 A업체는 인원을 집단적으로 고용승계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정규직 노동조합은 ‘하청 노동자 처우’라는 안건으로 현대차의 고용승계 결정을 압박하였고, 이에 대해 노사 합의하여 비정규직 지회에 고용승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왔다.

위와 같이 사내하청업체 폐업 시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이 승계되는 관행은 정규직 노동조합과 현대자동차 간에 2003년 체결된 ‘확약서’에 근거한 것이다. 현대차 노사는 ‘사내협력업체 종업원들의 근로의욕 고취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본급, 근속수당 등 각종 수당, 성과금 등을 정하는’ 노사 합의를 하였다. 당시 노사는 근속수당을 신설하면서 “○업체장 교체 및 공정 재조정시 근속승계 인정”이라고 명시한 바, 이는 하청노동자의 소속 업체가 변경되더라도(업체 대표가 교체되거나 담당 공정이 변경되더라도) 근속기간 전체를 합산해서 근속수당을 지급한다는 의미이다.

과거 업체와 노동자 간의 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기 때문에, 임금 등 근로조건(현대차 울산공장에서 근무했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근속수당 포함)이 이전과 동일하게 이전된다.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근속수당을 지급한다는 노사합의는 A업체에서 B업체로의 고용승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2~3년마다 하청업체가 폐업하고 소속 업체가 변경되는 관행 상, 고용승계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1년에서 20년까지의 기간에 따라 정해지는 근속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위 2003년 확약서 이후로 이수기업 해고자들을 비롯한 현대차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업체 폐업 시마다 다른 사내하청업체로 고용승계되어 왔다.

“실제로 2003년에 작성된 이 확약서도 있고, 그 확약서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서 문제지만 실제로 현대차 사장이 하청 고용을 책임지겠다는 확약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 하나, 그 다음에 수십 년간 20년 넘는 시간, 그 합의서 작성 확약서 작성 이후로 20년 넘는 시간 동안 그렇게 실제로 해왔던 관례, 실제 관례가 있는 거. 그다음에 지금도 2005년부터는 현대차가 현대차 지부가 자기네들 단체 교섭 끝나고 나면 항상 하청 노동자 처우를 결정해 왔고 실제로 하청업체 폐업이라든지 신규 하청업체가 들어올 때는 항상 노동조합 쪽에 통보하고 허락받게 돼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그렇고”(김현제 인터뷰)

이수기업 해고자들의 불법파견 소송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현대차를 상대로 불법파견 소송을 해서 패소/승소/소송 계류 중인 다양한 구성원이 존재한다.

이수기업 조합원 소송현황			
소송당시 업체	소송결과		비고
이수기업 (공장이송) 4명	2020. 02. 06	1심 승소	- 2심 재판장 이숙연 판사(현 대법관) - 대법원 승소 후 파기환송 됨
	2022. 01. 28	2심 패소	
	2024. 07. 25	3심 승소	
무진기업 (치장이송) 20명	2019. 08. 22	1심 승소	- 1심 승소 후 2019년 12월 31일부로 무진기업 돌연 폐업 - 무진기업 폐업 이후 2공장 현인기업과 수출선적부 이수기업으로 전환배치 및 고용승계 - 2심 재판장 이숙연 판사(현 대법관)
	2020. 12. 02	2심 패소	
	2024. 04. 04	3심 패소	
민수기업 (부두이송) 2명	2020. 02. 06	1심 승소	- 고용 의제자 - 2심 재판장 이숙연 판사(현 대법관) - 1명 파기환송(계쟁기간 차량방청 업무)
	2022. 01. 28	2심 패소	
	2024. 07. 25	3심 패소	
창조기업 (PDI 검사) 1명	2022. 10. 20	1심 패소	- 1심 계쟁기간 경리업무(1명) - 2심에서 청구 취지 변경했으나 증거불충분
	2024. 07. 17	2심 패소	
		3심 계류	
용진기업 (차량방청) 1명	2020. 02. 06	1심 승소	- 고용 의제자 - 2심 재판장 이숙연 판사(현 대법관) - 대법원 승소 후 파기환송 됨
	2022. 01. 28	2심 패소	
	2024. 07. 25	3심 승소	

<표> 이수기업 조합원 소송 현황

출처: 현대자동차 이수기업 정리하고 투쟁 경과(밤통 웹진, 2025년 5월호)

2) 이수기업 해고자들의 불법파견 소송 현황

위와 같은 업체 통폐합의 결과, 이수기업에는 수출선적 부문의 다수의 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모였다. 이들은 짧게는 몇 년부터 최대 23년까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에서 근무하였다. 이러한 근무 내역을 토대로 현대차를 상대로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특히 해고자들 중 다수를 차지하는 무진기업 출신 노동자들은 무진기업 당시 수행하였던 ‘치장이송’에 대해서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끝내 패소하였다(대법원 2024. 4. 4. 선고 2020다299306 판결).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였던 1심과 달리 2심 법원은 ‘직접생산공정의 경우와 같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지휘·명령을 대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고, PDA와 수출물류통합관리시스템에는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개별적

인 지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다, 수출선적장 밖 주차장에도 어느 정도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수출선적장에서 나온 차량에 대하여 이 사건 치장업무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직접생산공정에 차질이 발생한다거나 전체적인 출고업무가 멈추는 일은 생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치장업무에 이르기까지는 여러 단계의 출고과정을 거치므로 직접생산공정과 이 사건 치장업무 사이에는 시간적, 공간적 간격이 발생한다, 직접생산공정과 이 사건 치장업무가 밀접하게 연동되어 이루어졌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1심 판결을 뒤집어 취소하였고, 대법원은 특별한 판단 없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현대차는 각 운반 과정을 수출선적부 정규직 부서의 관리 하에 두고, 현대차의 생산계획, 수출선적계획에 따라 차량을 운전하게 하면서 각 지점을 통과하는 차량을 전산시스템으로 실시간으로 기록하였다. 근로자파견관계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은 구조화되고 정형화된 업무지시를 포함한 사용사업주의 업무지시에 파견업체 근로자들이 구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지 검토하고 있을 뿐, 사용사업주가 일일이 개별 근로자에게 직접 작업지시를 하였는지를 입증하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진기업 판결은 ‘개별적인 지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업무상 지휘·명령을 부정하였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현대차가 의장공장에서 차량을 조립해서 공장 밖으로 내보내면, 수출용 선박에 싣기까지 다수의 노동자들이 각 지점까지 차량을 운전해서 운반해야 한다. 무진기업 노동자들이 차량을 넘겨받은 수출선적장도 일종의 공장으로서 컨베이어벨트가 설치되어 있고, 라인 1개당 UPH는 64대, 1시간 당 264대의 차량이 수출선적장 아웃풋으로 배출되어, 무진기업 노동자들은 70~100대의 한정된 차량만 주차할 수 있는 수출선적장 아웃풋(주차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차량을 적시에 빼내는 일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수출용 차량을 이송하는 업무는 생산공장과 선후 공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생산공정의 진행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점, 단계만 끊어서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식의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

“누구는 맞고 누구는 아니고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니 a에서 b 구간 운전하는 사람과 b에서 c 구간 운전하는 사람이 뭐가 다른니까? 이 선 하나 넘었다고 나는 아니야 나는 이 선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맞아 야 나는 그 구분을 뭐 말장난하듯이 구분을 짓는다는 게 진짜 진짜 아닙니다. 진짜 희생양들입니다. 저는 제가 판단했을 때 불법 파견의 희생양 맞습니다. 진짜 100%입니다. 아니 120%입니다. 이제 저는 뭐 명예도 없지만 진짜로 맞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이고 원통한 사람들이고 말도 안 되는 판결에 진짜 희생양들”(이도한 인터뷰)

다. 현대차의 노무관리 전략: 마지막 남은 불법파견 투쟁을 봉쇄하기 위한 구사대 폭력

이수기업을 폐업한다는 소식은 2024년 4월부터 노조원들에게 들려왔다. 현대자동차 지부 사회연대실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에 ‘사측은 6월 30일 폐업 예고, 그리고 현인기업과 통합될 예정이고 고용승계는 여지껏 해왔던 것처럼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2024년 5월까지도 ‘사측이 임금교섭 시기 시끄러운 일 만들지 않기위해 이수기업 계약을 3개월 연장하여 9월 30일까지 하겠다고 전달함. 고용승계 얘기는 아직 변함없다’고 전달하였다. 그런데 2024. 4.부터 2024. 5.까지의 기간에 위 <표>중 ‘3심 패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나서, 이수기업 폐업 이후에는 노동자들의 고용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사측의 입장이 바뀌었다.

“그래서 항상 크로스 체크를 해야 돼가지고 그 기준에 이제 작년 2023년에 비정규직 분과 하셨던 비정규직 담당하셨던 지부 실무자를 노동조합 사무실로 불러 갖고 제 앞에서 이제 전화를 시켜 갖고 노무 쪽에 전화해 봐라. 어떻게 할 건지 확인 좀 해달라. 그래서 저희 앞에서 스피커폰으로 전화했어요. 그래 갖고 ‘아니 이수 기업 폐업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물어보고 싶어서 전화했다.’ 그리고 ‘뭐 지금까지 관례대로 그냥 고용승계에서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끊었어요.

그런데 이제 5월 8일 날 이제 선고 일정이 잡혔거든요. 5월 30일 선고가 난다고 5월 8일 날 선고 기일 통지가 왔고, 그러면서 이제 좀 마음이 되게 복잡해져 갖고 더 급해져 갖고 계속

계속 매주 두세 번씩 계속 확인하고 했는데 그때까지도 고용승계해서 간다는 거였어요.
근데 5월 30일 날 판결이 나오고 나서, 이수기업이 5월 30일 날 대법원에 승소했잖아요. 하
고 나니까 애들이 이제 가다가 갑자기 ‘고용승계 없이 정리한답니다.’ 갑자기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회사가” (김현제 인터뷰)

이수기업 해고는 불법파견 소송에서 패소한 노동자들에 대한 보복이자, 이수기업에서 근
무했던 최근 몇 년의 기간에 대해서라고 재차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한 현대차의 기획적 탄압이다. 불법파견 소송을 유지하며 특별채용이라는 타협에 응하지 않
았는데 그 소송이 패소하게 되었으니 패심죄를 묻겠다는 것과 동시에 재소송을 하더라도 소
송기간동안 고용유지 없이 해고로 탄압하겠다는 것이다.²¹

“이수 기업 공정은 불법 파견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동지
들이 과거에 이제 무진기업 시절에 부두 치장 업무를 할 때 이제 소송을 걸었던 거잖아요.
그걸로 진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그 업체가 폐업하고 공정이 반납 외주화되면서 공장
탁송으로 이제 공정으로 바뀌었던 말이죠. 이수 기업 공정으로 바뀌었던 말이죠. 근데 이
동지들이 이수 기업에서 만약에 재소송을 하게 되면 앞전에 것 다 권리 다 포기해버리고
여기서 소송을 하게 되면 승소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는 그렇기 때문에 그
걸 예상되기 때문에 날려버린 거죠.” (김현제 인터뷰)

“앞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했던 분들이 대법원에서 이번에 파기환송으로, 공정을 이
제 법적으로 인정을 해 주는 그런 판결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그 회사 자체를 없애지 않았나.” (이종명 인터뷰)

3. 현대차의 비정규직 노무관리의 두개의 축: 특별채용과 축탁직

현대차 불법파견 투쟁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이수기업 해고 투쟁은 현대차 공장 내 ‘간
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 사실상 마지막 남은 불법파견 투쟁, 비정규직 철폐 투쟁이다.
현대차는 위 1~3시기를 거친 불법파견 투쟁에 대해서, ‘특별채용’ 방식으로 직접고용하면서,
동시에 직접고용 형태를 띠고 있기는 하지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 ‘축탁직’(기간제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특별채용에 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불법파견 집단소송에 참여한 자는 ‘소취하서’를, 미참
여자에게는 ‘부제소합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별채용 이후의 근로조건은 현대차 사내하청
업체에서 근무했던 전체 기간에 대해서 근속을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절반, 최대 10년’과
같이 제한된다. 이는 노동자 개인에게는 호봉제로 이루어져서 근속기간에 따라 기본급이 상
승하는 정규직 임금제도의 특성 상 막대한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하라는 의미이고, 현대차가
행한 수십년 동안의 파견법 위반 행위에 면죄부를 달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심지어 특별채용
에 지원하는 조건으로 ‘비정규직 노동조합 탈퇴’를 걸기도 했다.

“노조 탈퇴랑 소송 취하 그래야 이제 자격이 돼요.”

“회사에서 소송 취하하고 탈퇴해라. 그러면 이제 회사 자체적으로 이걸 서류를 받거든요.
어디에다가 뭐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업체 자체에서 특별 채용에 대한 지원서를 받
죠. 지원서를 쓴다고 해도 노동조합 탈퇴 안 하고, 소송 취하 안 하면 그 자체를 쓰지도 못
하죠. 응시서를, 오픈된 데서 뭐 인터넷으로 우리가 이걸 응시하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회
사에서 업체에서 업체장한테 가서 그 서류를 작성하고 하면은, 이제 추가적인 서류를 넣으
라고 하죠. 탈퇴하고 안 하면, 그 자체가 안 되니까.” (장진형 인터뷰)

비정규직 노조에서 장기간 불법파견 투쟁을 한 결과, 현대차는 계속해서 ‘불법파견 리스

21 현대자동차 이수기업 정리해고 투쟁 경과(밥통 웹진, 2025년 5월호)

크를 지며 사내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로 공장을 운영할 수 없었고, 사내하청업체는 신규채용 없이 2년 미만의 단기계약직만 채용하였다. 그렇지만 현대차로서는 정규직 정년퇴직자가 떠난 일자리, 정규직 노동자가 거부하는 힘들고 어려운 공정을 담당할 인력이 필요했다. 그 결과 도입된 새로운 방식의 비정규직이 '촉탁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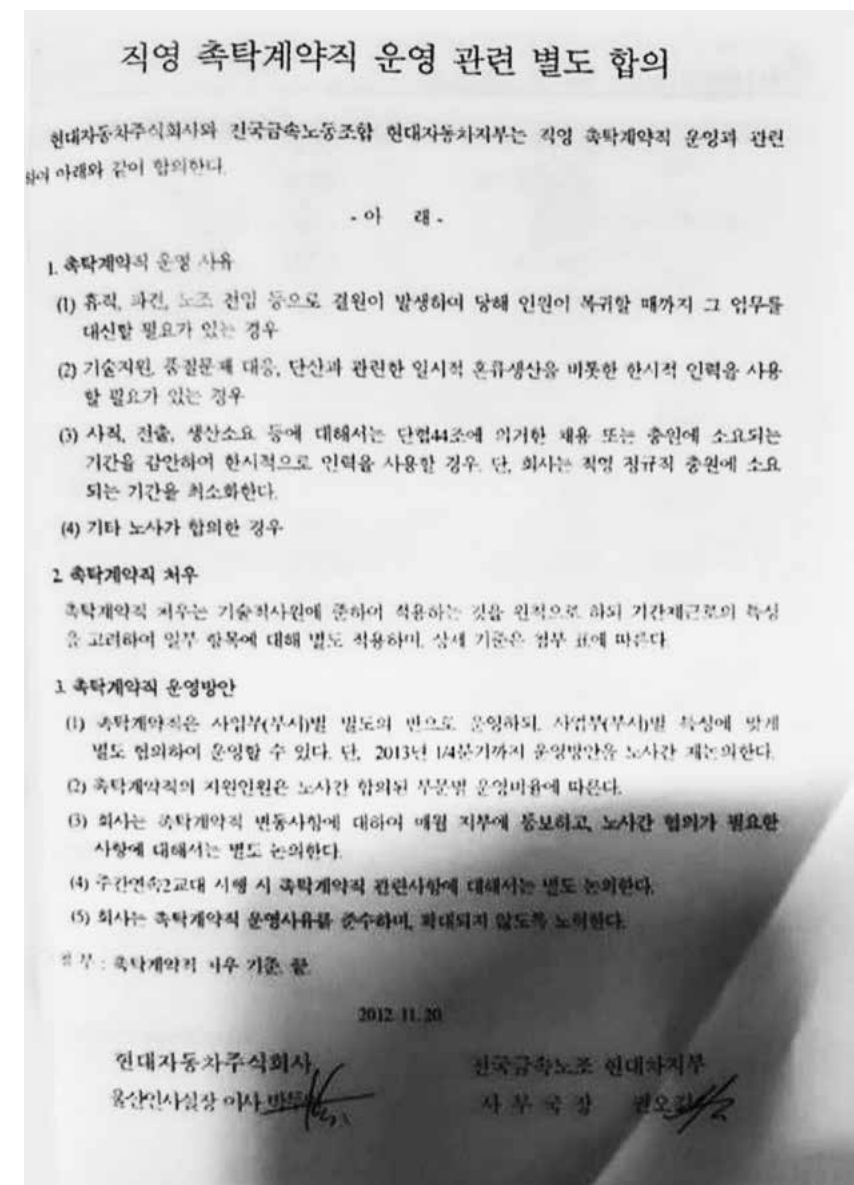
현대차는 2023년 1월 기준 4,956명의 촉탁직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였다. 이는 정년퇴직한 노동자를 기간제로 재고용하는 '시니어촉탁직'은 제외한 수치이다. 현대자동차 지부 조합원수 5만여 명의 10%에 해당하는 상당한 수치이다. 공장별, 라인별로 전체 인원 중 촉탁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40%에 달하는 반도 존재할 정도로, 현대차 울산공장의 공정 상당수가 저임금·불안정한 일자리인 촉탁직으로 채워지고 있다.²²

“기준에 있던 정규직들이 이제 나이가 되고 선배님들이 정년 퇴직을 하니까 촉탁직이라는 또 다른 비정규직을 만들어 가지고 1년 11개월 일하고 다 잘라버리는 이런 또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일을 시키면서 지금 거의 한 만 명 되거든요. 그분들이 젊은 청년들을 갖다가 그렇게 고용을 하면서 조금씩 한 20~300명 뽑아가지고 마치 정규직 뽑는 거에 생색을 내면서 우리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따지고 보면 조합원이면서 조합원 아닌 그 중간쯤에 있는 사람들을 애매하게 만들어서 이제 이용해먹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노무 관리에서는 달인입니다. 달인 진짜 달인이네요.” (이도한 인터뷰)

촉탁직은 2012년 현대차와 정규직 노동조합의 '직영 촉탁계약직 운영 관련 별도 합의'로 도입되었다. 이 합의서에 의하면, 촉탁계약직 운영은 한시공정 사유(휴직, 해외출장, 노조 전임, 기술지원, 품질문제 대응, 물량 변동시 한시운영 등의 대치 인원 등)로 제한된다. 그러나 현대차는 상시적으로 정규직이 근무하던 자리에까지 촉탁직을 투입하여 촉탁직을 무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²² 청년세대 미래를 잡아먹는 현대자동차! 울산함성 2024. 2. 29.자 기사 <http://www.ulham.net/local/14757>



▲ 2012년 현대차와 정규직 노동조합의 '직영 촉탁계약직 운영 관련 별도 합의' - 현대차는 '촉탁계약직 운영 사유' 중 '(2) 기술지원, 품질문제 대응', '(4) 기타 노사가 합의한 경우'를 악용하여 상시적으로 필요로 하는 공정에서도 촉탁직을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제가 2년을 하면 복귀를 하니까 그 동안만 쓸 수 있는데 다섯 번째 '기타 합의'를 가져온 거예요. 그때 당시에 노사가 합의한 게 이게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사무국장이 와가지고 대의원들이 설명하는데 기타 합의는 안 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합의가 됐어. 그러

니까 이제 회사가 이제 비정규직의 자리에 '노사가 합의한 경우'가 되니까 막 이제 촉탁으로 다 채우는. 그래서 지금 정규직이 비정규직 돼 가지고 안에 실질적으로는 정규직만 있어야 되는데 촉탁직이 지금 시니어를 빼고도 한 4천 명 5천 명 정도 있습니다.” (조○○ 인터뷰)

4. 소결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 업체에 대해 일부는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일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수기업에는 불법파견이 최종적으로 인정되었든 아니든, 특별채용에 응하지 않고 소송을 지속한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수기업 노동자들은 2024년 10월 1일자로 해고되었다.

현대차가 이수기업 노동자들을 그동안의 관행과 달리 전원 해고한 것은, 첫째,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인정을 받고 파기환송 재판을 진행 중인 이수기업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당장의 생계에 위협을 가하겠다는 것이고, 둘째, 무진기업 등 이전 협력업체에서의 불법파견은 인정받지 못했으나 이수기업에서 일을 해왔으므로 동일하게 불법파견 승소 가능성이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불법파견의 증거를 없애고 소송 제기를 어렵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법원의 판결조차 무시하는 현대자동차, 이런 현대자동차에 대해 제대로 이행을 강제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무책임함이 결합되어 있다. 불법파견이라면 그 공정 자체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현대차는 사람만 전환시키고 그 공정을 촉탁직이 일하는 공정으로 만들었다. 불법파견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현대차의 불법으로 피해와 고통을 당한 사건이기 때문에 현대차는 그 피해를 온전히 보상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현대차는 특별채용 방식을 통해 노동자들의 근속을 일부만 인정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면죄부를 스스로 부여했다. 불법파견 피해에 대한 온전한 회복을 방기한 정부의 책임도 있다.

왜곡된 특별채용, 관행을 깬 1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집단해고 등 현대차의 잘못된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수기업 노동자들의 고용승계와 이후의 고용구조에 대해, 현대차가 이수기업 노동자들과 교섭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V

폭력에 공조한 경찰, 파괴된 집회의 권리

1. 파괴된 평화적 집회의 권리

가. 폭력과 함께 파괴된 집회의 권리

집회참가자들은 현대차의 부당해고에 함께 항의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서로에게 연대했다. 이렇게 평화로운 집회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경찰은 집회를 위협하고 방해하는 행위들을 제지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경찰은 하지 않았다. 현대자동차 보안운영팀이 구사대로서 집회참가자들의 물품을 탈취하며 충돌을 유발할 때마다, 경찰은 대부분 채증과 경고 방송만 하며 파괴되는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방치했다. “공권력은 죽었다”는 집회참가자의 분노 섞인 말은, 집회의 권리를 침해한 건 구사대만이 아니라 바로 경찰이기도 했다는 고발이었다.

1) 3월 13일~14일 집회

3월 13일 16시 현대차 본사를 규탄하는 집회가 본관 정문 쪽 화단 옆의 인도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16시 40분경 집회 말미에 이수기업 노동자가 천막 설치에 관한 안내를 하자, 현대차 본관 입구에서 대기하던 현대차 구사대가 집회참가자들에게 일제히 다가갔다. 참가자들은 옆에 있는 동료와 몸을 밀착해 밀려오는 구사대를 막으려고 했고, 그때부터 참가자들과 구사대 무리가 서로 몸을 밀며 충돌하기 시작했다. 참가자들은 경찰에게 ‘집회 구역 침범한 사람들을 잡아가라’고 강하게 요구했으나 경찰 대부분은 채증 혹은 대기를 했고, 소수의 경찰만이 둘 사이를 분리하기 위해 무리에 끼어들었다. 한 집회참가자는 구사대로부터 “게임 끝났어.”라고 조롱당한 뒤 넘어뜨려졌다. 넘어진 집회참가자의 카메라에 담긴 경찰은 오로지 폭력 상황을 채증하고, 옆으로 지나가며 구경할 뿐이다(아래 사진 참고). 경찰은 폭력을 관조하면서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라는 경고 방송만 반복하고 있다.



▲ 영상 캡처, 출처: 이수기업 해고노동자 안미숙

집회참가자들의 방어벽을 뚫고, 화단을 넘어서 돌진한 구사대는 집회참가자들이 치고 있는 천막을 강탈하기 시작했다. 펼치려고 한 지 20초도 채 지나지 않아 천막은 구사대에 의해 찢기고 무너졌다. 결국 천막은 구사대가 가져온 트럭(흰색 포터)에 실려 사라졌다.

울산경찰청은 이날 집회 현장에 총 90명의 경찰을 배치했다. 세부적으로는 북부경찰서 소속 경비교통과 9명(경비 5, 교통 4), 치안정보안보과 6명, 형사과 5명, 수사과 4명, 지역경찰 2명이 현장에 있었다. 또한, 채증 지원을 위해 중부경찰서, 동부경찰서에서 각 1명씩 총 2명의 경력이 투입되었다. 이와 함께 울산광역시 경찰청 소속 제2기동대원 62명이 현장 질서 유지에 동원되었다.²³

천막이 찢어지고 참가자들이 다치는 상황에서 경찰들은 가장 먼저 ‘채증’을 했다. 격하게

몸싸움이 붙은 이들 옆에서 경찰은 카메라로 그들을 찍고, ‘폭력행위에 대한 채증이 시작됐다’고 방송했다. 이후 10명가량의 경찰이 사람들 사이로 들어와 떼어놓으려 했다. 이미 천막을 뺏기고 폭력을 당한 집회참가자들이 한창 구사대에게 사과와 천막 회수를 요구하며 항의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개입했고, 42분경 “빠져”, “복귀 복귀”라는 (보안운영팀 일원으로 추정되는 이의) 지시에 구사대 일부가 싸우는 무리에서 하나둘 빠져나갔다. 경찰은 사법조치될 수 있으니 폭력행위를 중단하라는 식의 경고 방송을 계속해서 내보냈고, 상황이 사그라지자 본관 정문으로 이동하는 구사대와 같은 쪽으로 빠져나갔다. 이후 집회참가자들은 17시쯤부터 본관 정문으로 이동하여 천막강탈에 대한 사과와 천막 회수를 요구하며 항의 행동을 시작하여 밤샘 노숙농성까지 이어갔다.

14일 오전 5시, 밤샘 노숙농성을 하던 집회참가자들이 본관 입구에서 출근선전전을 진행했다. 조합원 3명이 회사 입구를 향해 몸피켓을 들고 서 있었고, 20명가량의 구사대가 이들을 마주 보고 섰다. 오전 5시 30분경, 구사대가 가장 오른쪽에 있는 조합원을 왼쪽으로 밀치면서 폭력 사태가 시작되었다. 순식간에 몸싸움이 시작되자 대로변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 순찰차 1대에서 경찰관 1명이 뛰어나왔다. 경찰은 밀집해 있는 사람들의 가장자리에서 “밀지 마세요”를 외치며 싸움을 살짝 말리다가 경찰차로 뛰어가 사이렌을 울렸다. 사이렌은 8초가량 이어졌고, 뒤이어, 또 다른 경찰관이 느긋하게 걸어왔다. 그는 한창 충돌 중인 사람들을 지나쳐 빙 돌아 그들 옆을 스쳤다가 경찰차로 돌아갔다. 조합원 1명에 최소 1명, 최대 3명의 구사대가 붙어 서로 밀치며 아스팔트 바닥에서 나뒹구는 등 물리적 충돌, 그리고 폭력이 있었음에도 경찰 2명 모두 충돌 상황을 안정화하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구사대는 피켓을 들고 있던 조합원 뒤로 바닥 매트를 깔고 앉아서 혹은 누워서 자리를 지키던 집회참가자들에게도 폭력을 휘둘렀다. 구사대는 사람이 있든 말든 피켓을 없애겠다는 일념 아래 몸싸움을 했고, 이후에는 바닥 매트도 피켓처럼 뺏아서 찢어버렸다. 결국 경찰의 적극적인 방치 아래 집회참가자들의 피켓과 바닥 매트가 처참하게 훼손되었고, 그 과정에서 집회참가자들의 부상이 있었다. 이후 본관 앞쪽에 주차된 집회 주최 측 차를 빼라는 구사대의 압박이 이어졌다. 체구가 큰 남성 구사대가 여성 조합원에게 반말로 “차 뺐 거야, 안 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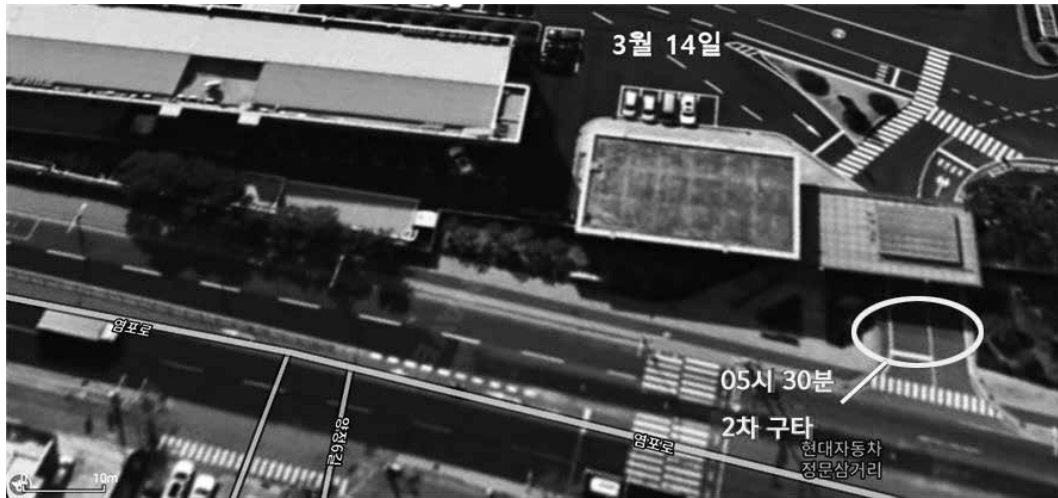
23 최근 울산지역 경찰운용 관련자료, 울산광역시 경찰청

거야”라며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고, 이에 조합원들은 반말하지 말고 천막을 갖다주면 그때 빨 테니 천막을 가져오라고 응수했다. 말싸움이 붙은 집회참가자와 구사대 사이로 1명의 경찰이 들어와 중재하려고 했지만 이내 중재를 포기했다. 이후 오전 7시 15분경 집회 참가자들은 본관 입구에서 약식 집회를 하고, 10시경에는 구사대의 폭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퍼켓팅에 구사대가 몰려나와 폭력을 행사하며 방해하는데, 경찰은 집회 방해와 폭력을 제지하는 적극적인 조치 없이 느긋하게 움직이고는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 빨간 원으로 경찰의 위치를 표시했다. (영상 캡처, 출처: 이수기업 해고노동자 안미숙)





▲ 3월 13일~14일 구사대 폭력 사태가 일어난 장소

2) 4월 18일~19일 집회

4월 18일 집회는 앞선 3월 13일 집회와 동일하게 주최 측의 적법한 집회신고를 거친 것이었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는 2025년 4월 9일 울산 북부경찰서에 ‘불법파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촉구’라는 명칭의 옥외집회 신고서²⁴를 제출했다. 집회 장소는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정문 표지석이 위치한 인도 및 그 앞 1개 차선이었다. 현대차는 대규모 집회가 열릴 것을 미리 알고 집회 직전에 인도 위에 화단을 추가로 설치해 집회 공간을 좁혔다. 이 화단은 이후 구사대의 폭력 상황에서 집회참가자들이 피하기 어려운 장애물이 되어 집회참가자들을 다치게 했다.

경찰은 이날 집회 현장에 총 242명을 배치했다. 세부적으로는 북부경찰서 소속 경비교통과 12명(경비 5, 교통 7), 치안정보안보과 6명, 형사과 16명, 수사과 17명, 지역경찰 2명이 현장에 있었다. 또한, 채증 지원을 위해 중부경찰서, 남부경찰서, 동부경찰서, 울주경찰서에서 각 1명씩 총 4명의 경력이 투입되었다. 이와 함께 울산광역시 경찰청 소속 제1기동대 67명, 제2

기동대 57명, 제3기동대 61명, 총 185명의 기동대원을 현장 질서 유지로 동원했다.²⁵



▲ 집회가 개최되기 직전에 집회 장소인 인도에 기존 화단 앞으로 화단을 새로 설치했다. 현대자동차가 설치한 화단 때문에 약 3m 폭의 인도는 좁아졌다. (사진 출처: 트위터 (현 'X'))

당일 500여 명에 달하는 구사대가 집회 장소 인근에 배치되어 있었다. 구사대는 집회 무대 차량 뒤편 본관 정문 입구 도로와 집회참가자들 뒤에 밀집해 있었다. 집회참가자들을 앞뒤로 둘러싸는 듯한 모양새였다. 경찰은 1차선에서 교통 정리하는 인원 몇을 제외하고 대부분 정문 앞 구사대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구사대와 집회 대오 사이에는 질서유지선을 비롯한 그 어떤 분리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²⁴ 신고 내용은 개최일시 2025.4.11.부터 2025.5.9.까지이며, 개최 장소는 현대자동차 본관을 비롯한 각 공장과 출고센터, 연수원 등 건물 주 출입구 앞 각 반경 인도 80m(출입구 제외)이었다. 집회신고 상 참가 예정 인원은 299명이었으나 실제 참여 인원은 약 250명이었다.

²⁵ 최근 울산지역 경찰운용 관련자료, 울산광역시 경찰청



▲ 본 집회 앞서 사전 행사로 오픈마이크를 진행 중이다. 집회 무대 차량 뒤에 상당히 많은 수의 구사대가 무리 지어 있고 그 옆에 경찰이 배치되어 있다. (사진 출처: 신소요)



▲ 정문 쪽 집회 무대 차량 뒤에 무리 지어 있는 구사대. 모두 같은 옷(현대차 직원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모습은 식별을 어렵게 만들고, 장갑을 끼고 안전화를 신은 것은 폭력을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모습 자체가 집회참가자들에게는 위협이 된다. (사진 출처: 신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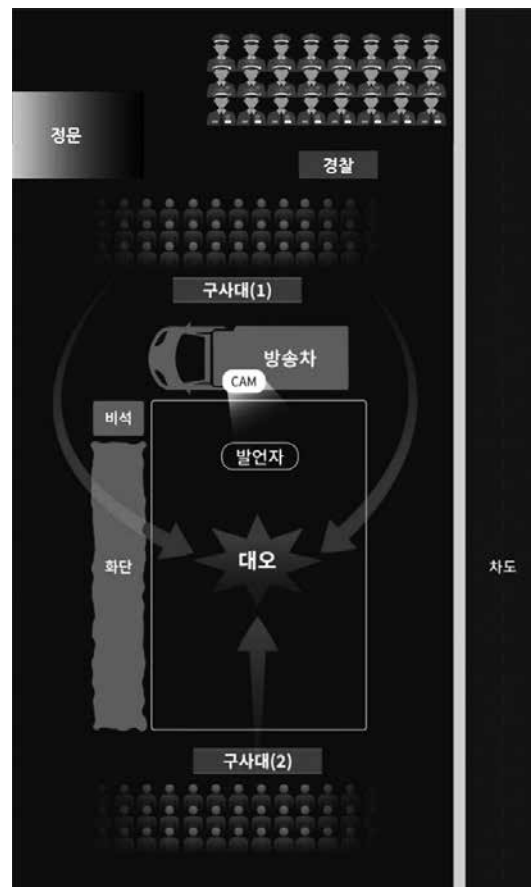
▲ 집회참가자들 뒤로도 상당히 많은 수의 구사대가 대기하고 있었다. 집회참가자는 구사대 대열의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았다고 말했다. (사진 출처: 이수기업 해고노동자 안미숙)



▲ 참가자들 뒤 구사대 무리 뒤에는 경력이 늘어 있었다. 현대차 구사대와 공권력이 일체가 되어 합법적인 집회를 압박하고 있는 상징적인 사진이다. [사진 출처 : 트위터(현 'X')]

가) 1차 폭력 사태

15시 15분경, 본 집회에 앞서 집회참가자들은 오픈마이크 형식의 사전 행사를 시작했다. 이후 15시 37분경 투쟁문화제 시작을 알리며 집회참가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였다. 이와 동시에 일부 참가자들이 집회 장소인 인도 위에 천막 설치를 시도하던 찰나, 화단 방향에서 구사대 1인이 반쯤 펼쳐진 천막 위로 몸을 날렸다. 이 위험천만한 돌발 행동을 신호로 무대 차량 뒤편 정문 주 출입구에서 대기하던 다수의 구사대가 일제히 집회 대오를 향해 뛰어가기 시작했다. 화단 방향에서도 수십 명의 구사대가 집회 공간으로 난입해 천막을 붙들고 있는 집회참가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달려들어 폭행을 가하면서 천막을 강제로 탈취했다.



▲ 4월 18일 2001 문화제 1차 폭력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한 그림

이 과정에서 경찰은 다수의 구사대가 집회 대오를 향해 뛰어가는 것을 보고도, 이들을 제지하지 않은 채 뒤편에서 상황을 관망하며 천천히 걸어왔다. 도로와 화단 양측 방향에서 구사대가 집회참가자들을 포위하듯 압박하며 몰려와 집회 장소(특히 천막 주변)는 발을 내디딜 틈 없이 매우 혼잡해졌다. 이로 인한 압사 사고 발생이 우려스러울 정도²⁶였다. 사전에 현대차 측이 인도 위에 대형 화분을 추가 설치한 바 있어 공간은 더욱 제한된 상태였다. 화분과 밀려오는 구사대 사이에 갇힌 집회참가자들은 쓰러지고 짓밟혔다. 물밀듯 밀려드는 구사대들에 의해 맞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속출했다. 화단 바로 아래쪽에서 머리를 감싸 쥐고 쓰러진 사람도 있었다. 그럼에도 경찰은 이처럼 노골적인 폭력 사태 속에서도 충돌을 제지하거나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근처에서 채증 카메라를 들고 있던 경찰마저 다수의 구사대가 담을 넘어 화단 방향에서 넘어오며 혼잡해지자, 자리를 비켜 뒤로 물러났다.



▲ 구사대들이 천막 위로 돌진하며 천막을 붙잡고 있던 집회참가자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상황을 경찰은 멀찍이서 지켜보기만 하고 있다. 빨간색 원 안에 경찰이 있는 위치다. (영상 캡처, 출처: 이수기업 해고노동자 안미숙)

26 트위터(현 'X') 유저들은 당시 상황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다.

“구사대 때문에 진짜 압사당할 수도 있겠다 (중략) 발 조금만 헛디디면 몸을 조금만 잘못 숙이면 몸이 잡혀서 넘어지면 사측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구사대 땀에 짜부땀서 숨 못 쉴 때 들어서”

“텐트가 밀려다니다 제 쪽으로 왔고, 구사대 놈들이 몰려(사이사이에 동지들이 끼어 있었어요) 양옆과 뒤에서 압박이 오니 텐트라도 단단히 붙들어야 몸 앞에 공간이 생겨 압사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다 텐트 부품이 휘어지고 둔기 같은 부분이 생기는데 맞거나 찔리면 죽겠다 싶었어요.”



▲ 도로와 화단 양쪽에서 몰려드는 구사대로 인해 집회참가자가 쓰러져 교통을 호소하고 있다. (영상 캡처, 출처: 이수기업 해고노동자 안미숙)



▲ 화단 방향에서 달려드는 구사대 때문에 황급히 자리를 피하는 경찰. (영상 캡처, 출처: 이수기업 해고노동자 안미숙)

결국 구사대는 집회참가자들로부터 천막을 빼앗고는 회사 담장 너머로 던졌다. 이후에도 구사대는 집회참가자들의 깃발을 빼앗고, 깃대를 부러뜨렸으며 머리를 잡아당기고 팔을 꺾는 등 폭력을 이어갔다. 경찰은 근거리에서 이 모든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구사대를 제지하거나 경고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경찰 기동대는 집회참가자들이 구사대에게 천막을 빼앗긴 뒤에야 진입했다. 참가자들이 천막을 빼앗기고 난 이후 경찰 기동대원 몇몇이 집회참가자와 구사대가 엉켜있는 대오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이후 더 많은 경찰 인원이 대오 안에 있는 구사대를 밖으로 빠지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집회참가자들에 대해서는 몸으로 압박하며 해당 장소에 남아있게 했다. 경찰의 이러한 행동은 구사대에게는 퇴로를 열어주고 피해자인 집회참가자들에게는 제약을 가하는, 명백히 편파적인 조치였다. 경찰 기동대들은 구사대들이 빠지고 나가는 공간을 채우는 방식으로 집회참가자들과 구사대를 분리시켰고, 빠져나간 구사대들은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은 채 집회 대오 인근에 또다시 대기하였다. 이는 추가적인 폭력 또는 갈등의 불씨를 남겨두는 것과 다름없었다.



▲ 집회 장소로 난입해 폭력을 행사하며 천막을 탈취한 뒤 정문으로 돌아가는 구사대 뒤를 따라 경찰도 이동했다. (사진 출처 : 이수기업 해고노동자)



▲ 천막을 강탈당한 이후 집회를 다시 시작했다. 집회가 진행되는 내내 구사대는 처음과 마찬가지로 무대 차량 뒤에 무리 지어 대기하고 있고 그 옆에 경찰과 함께 서 있었다. (영상 캡처, 출처: 스튜디오 알, 4.18 이수기업 200일 투쟁문화제)

나) 2차 폭력 사태

17시 8분경 투쟁문화제가 끝난 후 집회참가자들은 휴식을 취하고, 구사대는 계속 회사 정문에 줄지어 서서 위압감을 조성했다. 그동안 경찰들은 한편에선 무리를 지어 보안팀 오른쪽 도로로 지나다니고, 다른 한편에선 교통 통제를 했다. 17시 29분경부터 집회참가자들이 이동식 앰프 방향을 구사대 쪽으로 향하게 하고 음악을 틀어 놓았고, 18시 10분경 구사대 한 명이 앰프 방향과 위치를 집회참가자들 쪽으로 돌리고 이동시켰다. 이후 집회참가자가 또다시 회사 쪽으로 앰프 방향을 바꾸려고 하자 구사대 여럿이 달려들어 2차 폭력이 시작되었다.

가장 먼저 화단에 있던 경찰들이 그 상황을 채증했고, 도로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도 사람들이 밀집된 장소로 하나둘 오기 시작했다. 경찰들은 집회참가자들 사이로 끼어들어 양쪽을 떼어놓으려고 했고, 경찰들이 둘 사이에 자리하는 동안 구사대는 정문 쪽으로 복귀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앰프가 구사대에 의해 탈취되었다고 여겨져, 몇몇 조합원들이 앰프를 되돌려받기 위해 구사대에 항의하는 중이었다. 경찰은 조합원들을 달래며 항의를 막았다. 수적으로 열세인 집회참가자들이 구사대로부터 일방적으로 폭력을 당하는데도 경찰은

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폭력행위, 즉 ‘양쪽’의 폭력행위인 양 채증만 했다. 이번에는 채증을 한다는 경고 방송조차 없던 것으로 추정된다. 집회 한 켠에서는 경찰이 구사대 말고 집회참가자만 집중적으로 채증하는 데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졌고, 다른 한 켠에서는 구사대가 여성/성소수자에게 모욕적이고 과도한 폭력(머리채를 잡고 타격하는 등)을 휘두른 데 대해 경찰의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대해서도 경찰은 적절한 답변이나 별도의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 2차 폭력 사태가 벌어지기 전 상황이다. 17시경 투쟁문화제가 끝나고 주최 측은 “천막은 뺐겠지만, 천막 설치 예정 장소에서 농성을 이어가겠다”라고 공지하며 정문 근처의 무대 차량을 이동시켰다. 무대 차량이 이동하자, 구사대는 곧바로 무대 차량이 있던 곳까지 가까이 다가가 도열하며 조합원들을 압박했다. (영상 캡처, 출처: 스튜디오 알, 4.18 이수기업 200일 투쟁문화제).

다) 3차 폭력 사태

자정 무렵, 집회참가자들은 교대조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 정문 앞에서 선전전을 시작하려 했다. 두 명의 참가자가 회사 정문 출입구 옆 인도에서 현수막을 들고 서 있었는데, 회사 보안팀 관리자가 다가와 현수막 설치를 제지했다. 곧이어 현대차 관리자로 보이는 인원과 함께 다가온 경찰도 “이곳은 집회신고 범위가 아니니 신고된 장소에서 진행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는 명백히 잘못된 주장이다.

집회신고서 기재 및 첨부된 약도에 따르면, 집회신고 장소는 주 출입구 반경 80m 이내의 인도 부분(주 출입구 제외)이었다. 당시 현수막을 들고 있던 집회참가자들이 서 있는 장소는 위 약도에 붉은 선으로 표시된 집회신고 장소에 포함된 곳이다. 실제로 이전에 같은 장소에서 여러 차례 집회를 진행했었다. 그렇기에 집회참가자들은 경찰에게 해당 장소에서의 선전전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다.

출입 바리케이드 옆에 보면 쪼매난 인도가 있는데 거기서 현수막을 펼쳤어요. 근데 ‘여기서 안 된다.’ 경찰하고 같이 구사대들 와서 ‘여기 치면 안 돼. 여기서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제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이 또 일어났던 거죠. 근데 그 현수막을 들고 있는 사람은 정작 자동차 정구직, “내가 내 공장에서 하는데 왜 막냐!” 이렇게 해서 충돌이 났던 것 같고, 그러면서 다시 또 몸싸움이 일어났고. (김현규 인터뷰)



▲ 집회 신고서에 첨부된 약도, 붉은 선으로 표시된 곳이 집회 장소다.



▲ 이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여러 차례 선전전을 진행했으나 문제없이 마무리되었다. 위 사진은 2023년 8월 23일~24일 새벽에 진행한 류기혁 열사 선전전이다. (사진 출처: 이수기업 해고노동자)

경찰과 집회참가자들 사이에 대화가 오가는 동안, 이를 지켜보던 보안운영팀장 이호준이 갑자기 끼어들었다. 그는 다른 구사대들을 향해 “야 다 나오라 그래.”라고 외치고서는 현수막을 향해 손을 휘두르며 “이거 치우고 다 들어가라 그래.”라고 소리쳤다. 이 말을 신호로 수많은 구사대 무리가 현수막을 빼앗으려 달려들었다.

구사대들이 현수막을 잡아채는 과정에서 현수막이 찢어졌고, 현수막을 들고 있던 사람과 옆에 있던 다수의 집회참가자가 폭행당했다. 변주현, 밀포 두 참가자가 심한 상해를 입은 것도 이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때문이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보안운영팀 이호준이 폭력을 지시하고 구사대들이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는 순간에도 경찰은 아무런 제지 없이 이 모든 상황을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다는 사실이다. 경찰은 집회참가자와의 대화 중에 끼어드는 이호준을 그저 바라볼 뿐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고 이후 다수의 구사대가 현수막을 든 2명에게 달려들 때도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

그 당시에는 저희가 집회 장소로 돼 있으니까 저희는 할 수 있잖아요. 경찰들은 차량 통행

에 방해된다면서 못 하게 막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작 (차도로) 나가지도 않았거든요. 인도 밖으로 나가지 않았으니까. 경찰과 대치하다가 지부 조합원 연행되고, 연행되면서 우리가 못 가게 막았다고 해서 경찰 투입되고, 그러니까 현수막 펼칠 때, 그때 경찰이 자기 폭행했다고 정규직 그분을 연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경찰차 앞에 다 드러눕고 그때 또 다친 거죠. 변주현 그분이 그때 눈에 맞아서. (김현규 인터뷰)

선전전 지역까지는 집회신고 구역 내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선전전에 대한 침탈이나 뭐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았었죠. 근데 그날은 이제 빌드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시비를 걸면서 충돌이 발생했죠. 그리고 그곳(18일 집회)에 정규직 활동가들 몇 분이 천막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구사대가 들어왔을 때 정규직 활동가들이 좀 완강하게 항의하는 모습이 있었던 거고, 그걸 이제 공격하는 방식으로 들어왔던 거죠. (강진관 인터뷰)



▲ 집회참가자와 경찰 사이의 대화에 끼어들며 구사대들에게 현수막 제거를 지시하는 보안운영팀장 이호준. (영상 캡처, 출처: 이수기업 해고노동자)



▲ 보안팀원들에게 지시하는 관리자의 모습이 찍힌 다른 각도의 모습(영상 캡처, 출처: 스튜디오 알, 4.18 이수기업 200일 투쟁문화제 12시 퇴근선전전).

구사대의 폭력적인 난입으로 평화롭던 집회 장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현수막은 찢겨나갔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집회참가자가 폭행당했다. 특히 한 참가자는 얼굴, 눈 주위를 크게 다쳐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었다.

분노한 집회참가자들이 가해자인 구사대에 강하게 항의했지만, 수적으로 명백한 열세였다. 일부 경찰이 개입했으나, 그 개입은 폭행 가해자인 구사대를 제지하고 집회 장소에서 분리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경찰은 폭력행위를 지속하는 구사대와 함께 서서 피해자인 집회참가자들을 향해 ‘진정하라’고 요구할 뿐이었다. 상황 해결의 최우선 순위는 가해자 격리와 피해자 보호임에도, 경찰은 본분을 외면하고 사실상 구사대의 폭력을 방관했다. 보안팀원들은 경찰의 비호 아래 집회참가자들을 계속해서 압박하며 물리적 위협을 가했다.

혼란이 계속되던 중, 경찰은 갑자기 집회참가자 중 한 명을 폭력적으로 끌어내 경찰 승합차에 태웠다. 연행 이유는 ‘경찰관 폭행’이었다. 경찰이 집회참가자를 연행하자, 그제야 사측 구사대들은 현장에서 물러나 회사 정문 근처로 이동했다. 경찰은 명백한 폭력의 가해자인 구사대는 단 한 명도 체포하지 않은 채 항의하던 집회참가자를 현행범으로 연행했다. 이와 같은 경찰의 편파적인 태도에 집회참가자들은 분노하며 즉각 항의했다.

자기들(경찰)은 자기를 때렸다. 그 잡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때렸다 해서 이렇게 잡고 나오면서 경찰차 태우러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소가 경비대랑 저희랑 맞붙은, (현수막을) 강탈당해서 싸우고 있는 장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복을 입고 그 사이에 있다가 자기가 반겼다고 현행범으로 잡아간 거죠. 저희는 아니 왜... 폭행... 현수막을... (말을 잊지 못함) 당신도 경찰이라면은... 맞았다면 알겠다. 그렇지만 상황이 경비대가 와서 현수막을 강탈하는 걸 (당신도) 보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변주현 동지가 폭행당한 것도 자기들도 보고 있었을 건데 왜 그 현행범들은 안 잡아가고, 경비대는 안 잡아가고 왜 항의하는 우리 사람한테 반겼다고 해서 이 사람만 잡아가느냐, 잡아가려면 같이 잡아가야 될 거 아니냐, 조사를 하려면 같이 해야되는 거 아니냐, 왜 당신이 맞았다고 해서 이 사람만 잡아가느냐. 이렇게 된 거죠. (장진형 인터뷰)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황당한 상황은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에서도 생생하게 드러난다. 한 참가자는 구급차와 경찰차를 번갈아 가리키며 다음과 같이 절규했다.

“구사대가 폭력을 저질렀는데 우리 동지를 연행해 가고 있습니다. 구사대가 폭력을 저질러서 지금 우리 동지가 구급대에 실려 가는데 우리 동지를 연행해 가고 있습니다!” (영상 출처: 스튜디오 알, 4.18 이수기업 200일 투쟁문화제 12시 퇴근선전전)

최초 연행자의 경찰차 탑승 직후, 집회참가자들은 즉시 차량 앞을 막아서며 연행의 부당함을 외쳤다. 폭력의 가해자인 구사대는 방치한 채 피해자를 연행한 경찰의 편파적 법 집행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설령 해당 집회참가자의 경찰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 해도, 집회가 종료된 이후 소환하여 조사할 수도 있었다. 집회 중 즉시 체포해야 할 만큼의 폭력성이나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웠다. 오히려 제지나 체포가 필요한 것은 집회참가자들에게 지속적인 폭력을 가하던 다수의 구사대였다. 당시 집회참가자들의 항의는 4월 18일 200일 문화제 내내 이어진 구사대의 폭력과 이를 방관한 경찰에 대한 누적된 분노가 터져 나온 결과이기도 했다.

집회참가자들은 경찰차 앞에 연좌하여 구호를 외치는 등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항의를 이어갔다. 그 과정에서는 어떠한 물리력도 동원되지 않았다. 단지 경찰차 앞에 연좌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약 2시간의 대치 동안 경찰은 대화로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지 않고 무장한 기동대를 투입했다. 경찰 기동대는 ‘공무집행방해로 채증 및 사법처리 될 수 있다’는 경고 방송과 함께, 도로에 앉거나 누워있던 참가자들을 강제로 끌어내기 시작했다.

경찰 기동대는 경찰차와 집회참가자들 사이의 비좁은 틈을 막무가내로 파고들어 누워있는 사람들을 밟을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을 연출했다. 집회참가자들이 ‘사람 밟힌다’고 외치며 만류하는 사이, 연행자를 태운 경찰 차량이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때 경찰은 차량 앞을 막아서던 한 참가자를 지목하며 ‘주동자다, 체포해라’라고 외쳤다. 네다섯 명의 경찰이 그를 덮쳐 땅바닥으로 누르며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다. 특별한 저항이 없었음에도, 여러 명의 경찰이 무릎과 손으로 수 분간 그의 몸을 눌러 꼼짝하지 못하게 했다. 이 과잉 진압으로 인해 해당 참가자는 왼쪽 손목 찰과상과 등, 옆구리 등 신체 곳곳에 멍이 드는 부상을 당했다. 이 모습을 목격하고 말리려던 또 다른 참가자 역시 그 자리에서 함께 연행되었다.

당시 연행된 참가자는 자신이 경찰을 말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표적이 되어 연행되던 순간을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도 이제 평화적인 시위였죠. 그냥 차량 앞에 앉아만 있었으니까. (중략) 경찰이 일순간 강제 해산을 하기 위해서 투입됐죠. 저희 쪽으로. 그때까지도 저는 그냥 앉아 있었어요. 제 앞에 그 말벌 동지들하고 여성 동지들이 있었는데, 차량 앞쪽의 동지들을 해산시키려고 하니까 밟힐 것 같더라고요. 제 앞에 있는 여성 동지들이 밟힐 것 같더라고요. 막 와가지고 당기면서 하나씩 뒤는 안 보고 당기니까요. 안 되겠다, 다치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일어난 거죠. 일어서고 이제 경찰들 뜯어말리고 뒤에 사람 있다고, 사람 밟힌다고. 말리면서 막 뒤섞였어요. 경찰하고 저희들하고. 그 순간 봉고차가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봉고차 앞쪽으로 뛰어드니까 경찰들이 저를 경찰 진영 쪽으로 당기

더라고요. 그러면서 4명인가 5명이 이제 저한테 체포 시도를 한 거죠. 그네들이 하는 말이 ‘주동자다, 주동자다, 체포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체포까지 된 거죠. (연행자 인터뷰)

결과적으로 총 3명의 집회참가자가 연행된 후에야 상황은 종료되었다. 남은 참가자들은 부상자를 돌보며 대오를 수습해야 했다. 정작 이날 집회참가자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구사대 중 경찰에 의해 체포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평화적인 집회가 구사대의 폭력으로 얼룩 지고, 경찰의 강제 해산과 연행으로 마무리되었다.

나. 문제점: 권리 파괴 현장을 ‘구경’하며 공조한 경찰

평화적 집회는 참가자들의 의지로만 유지되지 않는다. 외부의 위협 등의 방해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될 때만 가능하다. 집시법은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제3조 제1항)고,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집회 및 시위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동조 제2항)되며,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동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위 집시법 조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서는 아니되며, 집회 주최자가 평화적인 집회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 요청할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위 집시법 조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중 ‘군인·검사 또는 경찰관이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22조)고 규정하여 법집행공무원의 집회 방해 행위를 더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제22조 단서에서 경찰을 가중처벌 한다고 명시한 이유는 그만큼 집회를 방해하지 않아야 할 경찰의 의무가 평화적으로 집회할 권리에 있어 매우 중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찰의 의무는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 인권규범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된다. 유럽안보협력기구와 베니스위원회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관한 지침」²⁷⁾은 “국가는 참가자들이 물리적 폭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화적 집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적극적인 의무를 진다”고 밝히고 있으며, 법집행공무원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집회를 파괴하거나 방해하려고 시도하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정부 공무원, 반대시위자 포함)으로부터도 평화적 집회의 참가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한다(5.3항).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2020년 발간한 평화적 집회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37호에서도 “집회 치안을 담당하는 법집행공무원은 주최자와 참여자의 기본권 행사를 존중하고 보장해야 하며, 관련 법집행기관은 가능한 한 긴장 완화와 분쟁 해결을 위하여 집회 이전과 집회 동안에 집회와 관련된 다양한 행위자들의 소통과 대화의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74~75항). 위와 같은 각 규범에 따르면, 경찰은 집회참여자들의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위협과 방해 요소로부터 집회참여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1) 집회를 방해하는 구사대, 평화적인 집회 보호요청을 거절한 경찰

경찰은 구사대의 평화적 집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제지하지 않았고, 울산북부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집회 주최자 및 집회참가자들의 평화적인 집회 보호요청을 거절하는 등 집회참가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렸다(집시법 제3조 제1, 2, 3항).

구사대는 집회를 방해하며 폭력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구사대는 집회참가자 수의 2~3배에 달하는 인원으로 현장에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고, 몸싸움이 격해질 때는 참가자 1명에 구사대 3~4명이 붙어 위력을 행사하며 저항을 무력하게 했다. 천막, 피켓 등의 집회 물품을 강탈하고 훼손시키기도 했지만, 경찰은 이를 막지 않았다. 구사대가 천막을 강탈하고 집회참가자들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집회 주최자와 집회참가자들이 평화적인 집회를 보호할 것을 현장에 있는 경찰들에게 요청하였음에도 이 사건 집회 현장에서 출동

²⁷⁾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Office for Democratic Institutions and Human Rights(OSCE/ODIHR), Guidelines on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2nd ed.(2010, 6, 4.)

한 경찰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평화적인 집회 보호요청을 거절하였다. 현대차 구사대의 폭력 행위에 대한 경찰의 조치는 실질적인 대응 없이 채증과 경고 방송에 그쳤고, 충돌이 극한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개입했다. 경찰은 평화적인 집회의 보호와 참가자들의 안전을 지킬 의지도 책임감도 보여주지 않았다.

4월 18일에는 4공장 쪽에 구사대가 수백 명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천막을 치기 시작하면 바로 구사대가 여기 화단으로 들어오고, 들어와서 이렇게 침탈을 하는데 천막이 전부 다 막 찢기고 빼앗기는 직전까지도 경찰은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이미 밖에서는 계속 (사람들이) 엉키고 엉킨 이런 상황인데, 그리고 이제 천막이 어느 정도 무너졌다 싶을 때 경찰들을 투입하는 거예요. (강진관 인터뷰)

이제 앰프 그랬을 때는 저도 이야기를 했죠. '아니 우리는 합법적으로 하고 있고 저들은 권한도 없는데 나와서 하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경찰들이 먼 산 쳐다보듯이. 당장 인지되는 놈들은 잡아야 될 거 아니냐. 너거가 우리 집회할 때 그런 상황 같으면 다 연행해 가면서 사측이 저래 하는데도 왜 보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자기네는 못 봤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한 걸. (조○○ 인터뷰)

경찰은 참가자와 구사대, 즉 평화적 집회를 열려는 이들과 이를 방해하던 이들을 동일한 '폭력행위자'로 규정하며 사법 조치를 경고했다. 그러나 구사대가 이 사건 집회참가자들의 합법적인 집회를 방해하는 행위는 집시법 제3조 제1, 2항을 위반한 불법행위임이 명백하고, 이에 대항하는 집회참가자들의 저항행위는 정당방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사대의 폭력을 묵인한 경찰의 태도는 집시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의도적으로 구사대의 폭력을 옹호한 공범으로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수적으로 우세한 구사대가 먼저 폭력을 행사한 상황에서 이들 간의 권력관계를 외면한 채 '중립'을 내세우는 것은, 사실상 구사대에 유리한 편파적 태도다. 참가자들은 경찰이 처음부터 폭력 상황을 제지하고 나아가 사전에 대비했다면 평화적인 집회가 충분히 가능했을 거라고 보았다.

그때 경찰도 되게 많이 왔었거든요. 경찰은 항상 보면 그 앞에 3월 달에도 그렇고 처음부터 이렇게, '중립'이라고 하잖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마찰이 없게 경찰이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항상 저희는 뭐 뺏기고 싸우고 나면, 그 뒤에 경찰은 이제 개입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뭐 이미 다 다치고, 다 뺏기고 없는데... 처음부터 개입을 해서 떨어뜨려 났으면 이래 부상자들도 없었을 것 같고 천막을 뺏기는 일도 없었을 것 같고 한데, 그러니까 좀 사측 편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심영진 인터뷰)

2) 무너진 천막 : 현대자동차와 경찰 모두가 원하는 것

구사대가 가장 집착했던 천막은, 현재 공장으로 돌아갈 수 없는 해고노동자들이 집회를 이어가기 위한 절실한 '장소'였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집회 권리의 핵심이다. 집회를 통해 회사에 항의하고 또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천막을 설치하려고 했다. 심지어 이미 집회 신고한 장소에 천막을 설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구사대는 어떠한 정당성도 없이 천막을 찢고 부수고 탈취했다. 그리고 경찰은 이를 모르쇠로 일관했고, 천막 탈취에 수반되는 구사대의 폭력도 마찬가지로 방치했다. 노동자들은 누적된 경험으로 경찰의 이러한 방관이 천막 설치를 어떻게든 막고 싶은 이해관계로 연결되어 있다고 추론했다. 즉, 사실상 경찰은 현대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천막이 투쟁 거점이 되어 장기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그 이해관계에 발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이 직접 천막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애들이 권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현대차가 하계끔 내두고 자기네들은 그냥 못 본 척해 주겠다, 그겁니다. 그렇게 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김현제 인터뷰)

이미 그거는 경찰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거예요. 우리 천막을 가져갈게. 그러니까 그때 몸싸움이 일어나는 과정까지는 경찰은 눈감고 있어라. 경험상으로 봤을 때 제 추론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전에도 대응을 했어야지. 몸싸움이 일어난다는 직감이 들 때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모든 상황이 끝나고 나니까 슬슬 들어오잖아요. (합의했을) 그럴 확률이 높

죠. 왜냐하면 경찰 입장에서도 저기에 천막이 쳐져 있으면 안 좋잖아요. 만약에 천막이 쳐지면 저기서 계속 상시 집회를 하고 자기들은 교통 통제도 해야 되고 일이 많아지거든. 그 래, 서로서로 우리 윈윈하자. 그 방법이 최고 좋은 거지. (김○○ 인터뷰)

3) 반쪽짜리 채증에 멈춘 공권력 행사

폭력을 모르쇠로 일관하던 경찰이 그 무엇보다도 몰두했던 건 바로 ‘채증’이었다. 천막, 피켓 등을 탈취하려는 구사대와 이를 막으려는 참가자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 경찰은 가장 먼저 카메라를 들어 채증을 했다. 4월 18일 2차 폭력 사태 당시, 한 참가자는 “아니, 뭐 하시냐. (충돌은) 안 말리고 지금 찍고만 계시냐.”라며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다. 경찰은 폭력 상황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할 주체임에도 상황을 그저 기록하며 폭력을 방치하는 ‘방관자’에 머물렀다.

자기들이 집회를 보호한다 내지는 집회가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는데) 그것을 해야 되는데 1, 2차 때는 하지 않았죠. 그건 저는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폭력을 방치하는 행위였지, 그리고 사측의 의도와 판단 이런 걸 용인하는 행위였지, 절대 그 합법적인 집회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이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 행위는 아니었어요. (강진관 인터뷰)

4월 18일은 천막을 치자마자 구사대가 달려들어서 집회 신고된 장소를 이제 일방적으로 침탈했죠. 침탈하면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폭력을 행사했고, 수많은 동지들이 수 시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폭력에 쓰러져 갔고, 경찰은 그때 당시 기동대 버스가 제 기억으로 는 한 7~8대 이상 와 있었던 것 같은데 기동대는 사실상의 방관자 역할을 자처했고 아무 것도 하지 않았어요. (김현제 인터뷰)

많은 경우 경찰의 채증은 집회참가자에게 집중되었다. 집회참가자들이 구사대에게 물품을 강탈당하고 폭력을 당할 때는 별다른 조치도 하지 않던 경찰은, 참가자들이 구사대에게 거

세게 항의하면 채증을 하며 가로막았다. 구사대들에게 폭력을 당한 참가자들을 나무라거나, 간혹 진정하라고 말하기까지 하는 장면은 매우 기이하다. 집회참가자들이 천막을 폭력적으로 탈취 당한 후 부상자를 확인하고 잃어버린 물품들을 찾는 등 아수라장이 된 집회 장소를 정리하는 중에도, 경찰의 채증 카메라는 집회참가자들을 향해 있었다. 경찰은 폭력의 원인을 규명하기보다, 문제 제기를 차단하고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하는 데에만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집회 내내 채증에만 몰두했음에도 이를 근거로 집회 방해, 폭력행위를 수사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채증의 목적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채증 카메라 이쪽(집회참가자들)에만 하는 게 맞아요? 저쪽(구사대)에다 해야지. 저쪽은 채증 안 찍으시냐구요.” (출처: 스튜디오 알, 4.18 이수기업 200일 투쟁문화제)

민중의례 시작하고 누가 제 몸을 퍽 잡고 비트는 거예요. 이렇게 뒤로. 그래서 뭐지? 하고 뒤돌아봤는데 용역 깡패들이 수백 명이 뒤에 짝 깔려서 계속 이렇게 밀치고, 여성 동지들이 그사이에 끼여서 그만하라 하는데, 경찰은 옆에 서서 구사대들을 제지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저희 보고 ‘진정해라, 진정해라’ 이 말만 반복하는 거예요. 영상을 돌려보니까 경찰이 “여러분 진정하세요.” 이러니까 제가 그 사이에서 “진정하게 생겼냐!”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혼자서. 그러다가 이제 (천막 철거하고) 슬슬 구사대 용역들이 “나가 나가” 이러면서 빠지는 거예요. 근데 경찰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서 시민들을 오히려 또 뜯고 막 밀치고 ‘그만해라’ 이러는 거예요. 저희는 맞기만 했는데. (윤혜민 인터뷰)

4) 집회의 핵심인 ‘연대’를 보장하지 않은 책임

경찰이 평화적 집회를 이어가려던 참가자들을 폭력에 방치함으로써 그 무엇보다 ‘연대’에 대한 권리가 위협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평화적 집회의 권리는 ‘함께’ 모여 ‘함께’ 말할 권리, 즉 연대에 대한 권리이기도 할 테다. 구사대에 의한 폭력의 경험, 특히나 여성/성소수자 연대자들을 겨냥한 끔찍한 폭력은 모든 집회참가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는 연대의 힘을 빼서 집회를 손쉽게 제압하려는 구사대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

다. 경찰은 연대를 훼손하려는 구사대의 목적을, 폭력 상황을 방치함으로써 도왔다고 볼 수 있다.

이수 사람보다는 연대 오는 사람 또 여성 이런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폭행을 가해가지고 응급실에서 많이 실려 가고 많이 다치고... (왜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연대가 더 안 올 것이다. 저기 가면은 싸움 나고 다치니까 아마 연대가 안 올 것이라... 그런 것 같아요. 다시 못 오게 하려고, 그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유선근 인터뷰)

이제 말벌이라고 하는 연대 시민들이 보니까 제 자식하고 같은 또래들이라고. 그것 때문에 제 자식이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순간 든 적도 있었어요, 세 차례 (구사대와) 싸우면서... (연대 시민들이) 다치고 이런 거 보니까, 정신적으로 좀 안 좋았죠. 연대를 불러야 되나, 우리가 투쟁하는 데 연대를 시켜도 되는 건가, 이 고민에도 많이 빠졌었고요. (장진형 인터뷰)

2. 폭력에 대한 대비와 조치는 없었다

경찰의 책무는 법²⁸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이다. 그러나 3월 13일~14일과 4월 18일~19일 집회에서 경찰은 폭력에 대비하지도, 폭력을 제압하지도, 폭력을 처벌하지도 않았다. 당시 집회참가자들은 폭력을 행사한 구사대에 대한 분노만큼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던 울산경찰청과 울산북부경찰서에도 분노했다. 이들의 행태는 ‘무능’이 아니라 의도된 방치였으며, 현대자동차 구사대와의 ‘협력’ 또는 ‘공조’였기 때문이다.

가. 폭력을 방치한 경찰: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경찰

1) 3월 13일~14일 집회에서 폭력 방치

3월 13일 천막 설치 시 순식간에 달려든 구사대의 천막 강탈과 함께 이를 막으려던 사람들에게 대한 폭행에 참가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지만, 경찰이 폭력을 통제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집회가 마무리되고 천막을 치려고 할 즈음에 본관 정문에서 대기하고 있던 구사대는 점점 집회 사회자 등 뒤까지 다가왔다. 같은 옷을 입고 마스크와 장갑을 낀 수십 명의 사람들이 집회 중인 참가자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은 이들이 무슨 이유로 집회 장소로 다가오는지 확인해야 했다. 이런 상황은 누가 보아도 위협적으로 보이고 특히 천막을 설치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이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은 상황을 파악하지도, 집회를 방해하지 말라는 경고도 하지 않았다.

문 입구까지 있던 사람들(구사대)이 입구에서 전부 나와가지고 이제 집회 마무리될 때 천막을 칠 것이라 하나까 한 발 한 발 앞으로 와 가지고 거의 제 등 뒤쪽에 다 서 있었죠. (안미숙 인터뷰)

순식간에 몰려든 구사대가 천막을 부수며 참가자들을 밀어내는데도 경찰은 채증만 할 뿐 폭력을 제지하지 않았다. 14일 새벽에 벌어진 폭력 사태에도 현장에 있던 경찰은 폭력을 행사하는 구사대를 제지하지도 않았고, 상황이 끝난 후에도 피해 상황을 묻거나 가해자를 조사하지 않았다.

2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 3월 13일 천막이 부서지고 사람들이 밀리는 과정에서 경찰은 지켜보기만 했다. 파란 점퍼를 입은 사람들이 현대차 구사대(영상 캡처, 출처: 이수기업 해고노동자)

2) 4월 18일~19일 집회에서 폭력 방치

4월 18일 집회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다. 3월 집회보다 더 많은 구사대가 집회참가자들 앞뒤로 자리를 잡아 집회에 긴장감을 조성했다. 아예 정문 밖으로 나와 무대 차량 뒤편에 무리를 이루고, 또 다른 무리가 집회 장소 옆 차도를 따라 이동해 집회참가자들 뒤에서 무리를 지어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이런 구사대의 움직임에 대해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 경찰의 어떤 통제도 받지 않은 구사대는 참가자들을 포위하듯 에워싸고 집회 장소로 난입해 참가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천막을 강탈했다.

200일 때는 3월보다는 월등히 많은 병력이 배치가 됐지만 저희가 충돌이 일어났을 때도 그냥 구경만 한다고 그러죠. 그냥 방관만 하고 있다가 어느 한쪽이 지치거나 어느 정도 소강상태가 됐을 때 이렇게 조금 분리시키는 그런 느낌만 받았습니다. 소수 몇 명, 그것도 이제 만약에 배치가 30명이 돼 있었다 그러면 30명 전원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중재시키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소수 몇 명이 이렇게 움직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종명 인터뷰)

저희가 집회하고 있는 거를 앞뒤로 싸서 이렇게 막 정말 위협하듯이 서서 있었고, 저희가

천막을 치려고 시도했을 때 그 인원들이 다 와서 침탈을 했고, 침탈당하고 폭행당하고 천막 뺏기고, 이제 그럼 천막 다 뺏고 나면 상황이 종료되니까 다시 자기들 자리로 복귀를 하지 않습니까? 복귀하는 구사대를 저희가 이제 항의하고 잡고 물고 넘어지고 잡아서 현행범으로 넘기기 위해서 몸싸움을 하는 거를, 그때 이제 경찰들이 들어와서 구사대랑 저희를 갈라놓으러 들어왔죠. 그래서 갈라놓고 '집회 장소로 가라' 우리 보고 그러고, 구사대 보고 '회사 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 가라는 거죠.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3월)13일날도 그랬고 (4월)18일날도 그랬습니다. (장진형 인터뷰)

천막 강탈 이후 집회를 진행하는 내내 구사대는 여전히 집회 무대 차량 뒤편과 참가자들 뒤에 계속 남아있었다. 경찰은 폭력을 행사한 구사대를 집회 장소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다. 결국 두 번째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 바로 옆에 대기 중이었던 경찰이 1차 폭력에 이어서 또 어떤 개입도 하지 않자, 참가자들의 분노는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제 앰프 그랬을 때는 저도 이야기를 했죠. '아니 우리는 합법적으로 하고 있고 저들은 권한도 없는데 나와서 하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경찰들이 먼 산 쳐다보듯이. 당장 인지되는 놈들은 잡아야 될 거 아니냐. 너거가 우리 집회할 때 그런 상황 같으면 다 연행해 가면서 사측이 저래 하는데도 왜 보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자기네는 못 봤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한 걸. (조○○ 인터뷰)

퇴근 시간 선전전을 방해하려는 구사대가 3차 폭력을 행사했다. 이번에는 현수막을 강탈하려고 했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집회참가자들이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 1인이 경찰에게 체포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참가자들은 경찰에 항의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의 항의 행위는 체포된 사람이 타고 있는 차량 앞에 연좌하는 평화적인 방식이었다. 구사대의 폭력행위는 방관했던 경찰이, 평화적으로 항의를 이어가는 사람들을 끌어내기 위해 방패까지 갖추고 진압에 나섰다.



▲ 19일 새벽 1:35, 평화적으로 항의하는 사람들을 강제로 해산시키기 위해 경찰이 출동했다. (사진 출처: 베라)

하루에 3차례나 폭력을 당한 집회참석자들은 갈수록 폭력의 공격성이 높아졌다고 느꼈다. 그리고 3월 집회보다 4월 집회에서 폭력의 강도가 높았다. 경찰이 폭력을 방치했기 때문에 구사대는 더욱 대담하게, 강도 높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심지어 경찰이 옆에 있어도 폭력을 행사하는데 거리낌이 없었다.

참가자들은 경찰이 집회를 보호하지도 않았고, 구사대의 폭력을 제지하는 걸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이런 경찰의 대응에 대해 편파적이라고 느꼈다. 폭력 상황에 개입하고 대응하지 않는 경찰에 대해 집회참가자들이 항의하자, 경찰은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라고 대꾸하고, 다시 무슨 관리를 하고 있냐고 따지자, 경찰은 “싸움 안 나게 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대답했다. 구사대가 먼저 폭력을 행사하며 집회를 방해했음에도 경찰은 마치 양측이 싸움을 벌이는 문제라는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참가자들을 만류하는 태도로 항의하는 참가자들에게 경찰은 진정하라는 말만 했다. ‘구경’만 하는 경찰에 대해 참가자들은 최소한 공정함도 없었다고 증언했다.

들어와서 침탈이 벌어지고 천막이 막 찢기고 빼앗기는 직전까지도 경찰은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천막이 어느 정도 이제 다 무너졌다 싶을 때 경찰들을 투입하는 거예요.

요, 그러면 이쪽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 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경찰들이 행위하기 시작하는 건 어떤 거냐면, 경찰들은 한 번도 우리를 등지고 선 적이 없어요, 그거 굉장히 의미 있는 행위거든요, 구사대를 등지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계속 제재하고 막고 우리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런 거지, 구사대를 어떻게 하는 건 거의 존재하지 않았어요. 구사대하고 우리하고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복들이 들어와 구사대 있는 편에서 가지고 우리한테 막 뭐라고 해요, ‘때리지 마세요, 밀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다가 부딪히다 보면 액션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서로 이렇게 충돌하니까요, 그때 우리 액션이 들어가면 바로 경찰이 그걸 시비를 걸면서 잡으려고 하는 거죠. (강진관 인터뷰)

너희들이 경찰이면, 공평하면 50%는 우리 쪽에 와가지고 재네들 막아야 될 거 아니냐? 50%는 사측을 막아주더라도 50%는 우리를 막아야 될 거 아니냐, 왜 100%가 회사 그 앞에 서가 있느냐? 우리를 못 들어가게 이게 맞냐? 이렇게 항의도 해보고, 재네들은 왜 연행을 안 해 가느냐? 경비들은 우리 두들겨 뺐는데 한 명도 연행 안 하고 우리만 연행하느냐? 이렇게 항의도 하지만 소귀의 경 읽기입니다. 아무도 안 들어줍니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아무도 안 들어줍니다. (이도한 인터뷰)

폭력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밀리고 몰려 넘어지고 밟힐 수 있는 상황이 벌어져 상당히 위험했다. 그러나 이런 위험을 경감시키는 조치도 없었다. 오히려 뒤늦은 경찰의 개입에 대해서 참가자들은 경찰의 개입 방식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경찰이 구사대와 참가자들을 제대로 분리하지 않고 오히려 가장 안쪽에 몰려있는 참가자들이 피할 곳 없이 그대로 밀리는 상황을 만들었다. 참가자들은 신체적 압박을 느꼈고 넘어지고 깔릴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다. 경찰은 참가자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구사대한테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 속에 경찰이 구사대를 자기 뒤쪽으로 빼내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앞쪽으로 미는 상황이니까 앞쪽에 저희 동지들은 그대로 깔려서 그냥 넘어가는 상황이. 그러니까 구사대도 보면 저들도 밀려서 갈 곳이 없으니까 화단 넘어

서 공장 쪽으로 가요. 자기들도 밀려가지고, 말이 안 되는 그런 거지. 만약 경찰이 진짜 해산을 시킬 것 같았으면 구사대들을 끄집아냈겠죠. 그러니까 이제 밝히면, 아차 잘못하면 크게 다치거든요. 만약에 한 명이 쓰러졌다, 솔직히 밝히는지 몰라요. 그 상황 속에 밝히는지 모르거든요. 만약에 거기서 진짜 쓰러져 가지고 만약에 거기서 일어나지 못할 상황이 됐다면 진짜 큰 사고 났었을 것 같아요. (김기호 인터뷰)

특히 그날 경찰의 행동에 너무나 화가 났었기 때문에. 때리는 놈 잡아가지 않고, 내가 살다 살다 경찰 다리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그날 침 질러봤거든요. 카메라를 들고 있는 경찰이었는데, 제가 무의식중에 처음에는 잡았고 나중에는 살려달라고 일어서려고. 왜냐하면 깔려 있으면 다 밝히니까, 밝히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든지 잡고 일어서려고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일어서는데,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그 와중에 또 밀리고 자빠지고 못 일어서고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카메라 붙잡고 서서 손 한 번을 내밀지 않더라고. 사람을 일으켜 세워줄 생각은 하지 않더라구요. (김주휘 인터뷰)

나. 폭력에 대비하지 않는 경찰: 폭력의 조짐을 현실로 만든 경찰

경찰관을 집회 현장에 배치하는 것은 집회를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최 측의 계획대로 집회가 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상해나 재산 피해의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수행하기²⁹ 위해서이다. 그러나 두 번의 집회에서 경찰은 이와 관련한 계획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월 13일 집회에서 구사대의 폭력과 천막 강탈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울산경찰청은 4월 18일 집회에서도 폭력이 반복될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이에 대한 계획과 조치가 있어야 했다. 실제 4월 18일 집회를 앞두고 울산북부경찰서 정보관은 주최 측에 방어선을 치겠다고 애

기했다. 이는 우려되는 상황에 대한 대비를 검토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경찰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전에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고, 구사대의 행위는 더 과감했고 공격적이었다. 그리고 경찰은 또 폭력 사태에 개입하지 않았다.

제가 경찰한테도 들었어요. ‘기동대가 한 500명 올 거고 사측도 한 500명 나온단다.’ 처음에는 정보과가 내한테 한 말이 방어벽을 이렇게 치겠다 했어요. 4월 18일 날이요. 근데 그날 (방어벽을) 안 쳤어요. (안미숙 인터뷰)

3월 14일 날 그런 상황이었으면 그거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경찰이 제대로 할 거 같으면 4월 18일 날 사측이 나와 가지고, 이게 밖에 나와서 자기들이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 있었다는 거는 14일날 그레함에도 아무 조치가 안 취해지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죠. 아무렇지도 않더라. 그래 떼거지로 나오고 이제 구타도 하고 폭행도 하고. (조○○ 인터뷰)

집회참가자들은 앞뒤로 참가자들보다 많은 수의 구사대가 배치된 상황을 위협적이라고 느꼈고 양쪽으로 몰려오면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참가자들이 위험을 감지한 상황을 같은 현장에 있던 경찰이 의도적으로 외면하지 않는 이상 모를 수 없다. 집회참가자들은 경찰이 폭력을 막을 기회는 여러 번 있었다고 증언했다. 집회 개최 전부터 구사대가 회사 밖으로 나올 수 없도록 조치했다면, 구사대가 집회 장소 앞뒤로 무리 지어 대기하고 있을 때 경찰이 이들이 집회 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면, 처음 폭력행위가 발생한 뒤에 이에 대한 제재가 있었다면 폭력이 연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너무 두렵한 폭력의 징조를 경찰이 방치함으로써 폭력은 현실이 되었다.

결국은 경비대가 밖에, 정문 밖에 나오고 있다는 공격의 의도성이 충분한데도 그러면 경찰이 중간에 바리케이드를 치든지 물리력을 못 하도록 강제해서 그걸 전혀 안 했다는 거는 방치를 한 거죠. 알면서도. (조○○ 인터뷰)

29 유엔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37호 76항

애초에 구사대 대오들 앞에 서서 막고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냥 옆에 이쪽 도로가에만 서 있고 구사대 대오 앞뒤로는 아예 안 서 있는 거예요. 거기 서 있었으면 조금이라도 덜 다쳤을 수도 있잖아요. (윤혜민 인터뷰)

5월, 6월 맞춰서 한 차선을 물고 나왔는데 그걸 미리 경찰들이 저지를 해줬으면 그런 폭력 사태도 안 일어났을 거고. (김기호 인터뷰)



▲ 4월 18일 본집회가 끝나고 무대 차량이 이동하자 구사대가 무대 차량이 있던 곳까지 접근해 더욱 압박하는 모습으로 있었다. 집회를 계속 이어갈 예정인 상황에서 참가자들을 위협하듯 다가왔지만 경찰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영상 캡처, 출처: 스튜디오 알, 4.18 이수기업 200일 투쟁문화제)

5월 20일 다시 집회가 개최되었고 세 번째로 천막 설치를 시도했다. 이날 경찰의 조치는 앞선 두 번의 집회와는 달랐다. 집회 장소 주변으로 바리케이드를 세웠고 정문 밖으로 나와 있는 보안팀은 소수에 불과했다. 천막을 설치할 때도 구사대의 방해나 물리적인 충돌이 없었다.

이번에 5월달에 저희 (천막)칠 때 가만히 있는 것도 신기하고, 그리고 인원 배치를 안 하는 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저희한테 그냥 계속 예의주시만 하고 있었어요. (김현규 인터뷰)

대조적으로 이번에 천막을 설치할 때는 아예 여기 경비들 서 있었던 이 장소에 경찰 병력이 배치돼서 아예 분리를 시켰더라고요. (이종명 인터뷰)

이날(5월 20일) 경찰의 행위는 완전히 달랐던 거죠. 이게 사실은 3월 13일과 4월 18일에도 이렇게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였죠. 구사대가 나올 거라는 거 그리고 충돌이 있을 거라는 걸 사전에 다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날은 안 나올 수도 있겠다는 얘기가 오히려 많이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강진관 인터뷰)





▲ 5월 20일 집회에서 경찰은 집회 장소 주변으로 바리케이드를 설치했다. 이 바리케이드에 집회참가자들은 폭력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사진 출처 : 이수기업 해고노동자)

그러나 경찰이 대비했기 때문에 구사대의 폭력행위가 없었던 것인지, 경찰이 구사대의 침탈이 없을 것을 미리 알고 보여주기식으로 이런 조치를 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럼에도 폭력을 예방하고 집회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5월 20일에야, 2번의 폭력행위가 벌어지고 난 뒤에 했다는 것은 문제다.

국제 인권규범은 집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에 대해 국가(법집행공무원)의 의무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집회 개최 이전에 잠재적 위험을 예측하고 그러한 위험을 예방 및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개발할 것을 요구하는데, 구체적으로 외부 위협 및 기타 폭력적 요소, 도발자, 비국가 행위자 등 다른 행위자로부터 시위 참가자와 옹저버를 지키기 위한 보호 전략을 포함한다.³⁰

당사국은 평화적 집회를 용이하게 하고 참여자들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30 유엔 평화적 시위의 상황에서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한 법집행공무원 대상 모범의정서 59항, 60항

일정한 적극적 의무를 가진다. (중략) 때로는 당국에 특정한 조치가 요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국은 도로를 폐쇄하거나, 교통 흐름을 바꾸거나, 치안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 국가는 비국가 주체가 참여자에게 가할 수 있는 폭행, 예를 들어 일반 대중, 반대 시위자 및 민간 보안서비스 제공업자들에 의한 간섭이나 폭력으로부터 참여자를 보호해야 한다. (유엔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37호 24항³¹)

인권 침해의 축소와 예방을 위한 시의적절하고 철저한 계획과 준비는 법 집행 기관이 평화적인 시위를 촉진하고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동시에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유엔 평화적 시위의 상황에서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한 법집행공무원 대상 모범의정서 56항³²)

군중의 안전한 이동을 촉진하고, 반대 집단 사이에 완충지대를 설정하고, 장벽을 설치하거나 경찰관을 전략적으로 배치하여 확대 또는 피해를 방지하고 전술적으로 철수하는 등 긴장과 폭력을 완화하는 적절한 기법을 배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유엔 평화적 시위의 상황에서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한 법집행공무원 대상 모범의정서 75항³³)

다. 폭력을 처벌하지 않는 경찰: 폭력엔 눈감고 평화는 처벌하는 경찰

경찰관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책무가 있고, 이를 위해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의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³⁴ 경찰은 범죄행위를 목격하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현대차 구사대의 일방적인 폭력행위를 직접 목격했음에도 현장에서 체포하지 않았고, 집회 주최자와 집회참가자들의 평화적인 집회에 대한 보호요청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했

31 CCPR/C/GC/37, para. 24

32 A/HRC/55/90, para. 56

33 (a) A/HRC/55/90, para. 75(a)

34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1항, 제2조 제1호

으며, 폭력행위 가담자들을 수사하지 않았다. 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³⁵ 이렇게 굳이 법을 확인하지 않아도 폭력과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은 상식이다. 이 상식적인 조치를 경찰에게 요구하고 또 거부당하는 상황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집회참가자들은 경찰에게 폭력 현행범을 방치하는 것을 항의해야 했고, 결국 폭력행위자에 대한 수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음을 확인했다.

경찰이 구사대의 폭력행위를 조사, 수사할 의지 없음은 이미 현장에서 확인되었다. 폭력이 벌어진 후 구체적인 피해를 조사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구급차로 실려 간 부상자에 대해서도 피해 경위를 묻지 않았다. 폭력이 발생한 후에 집회참가자들이 폭력을 행사한 현행범을 체포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항의하자 경찰은 '신고하라'는 말만 했다.

병원에 갔을 때도 경찰 두 명이 와서 첫마디가 무슨 일이냐, 어떻게 된 거냐 이런 게 아니고 '넌 누구냐, 넌 어디서 왔냐?'가 먼저였어요. 왜 다쳤냐, 누구한테 맞았냐 내지는 무슨 사고냐 이런 건 일체 물어보지 않고 그냥 계속 '넌 누구냐? 넌 어느 소속이냐? 금속노조는 아니냐? 민주노총 조합원이냐 아니냐? 시민단체냐 아니냐?' 그들이 궁금한 건 그거였어요. 그러더니 결국 나도 '어느 소속도 아니다'라고 하고 말별 동지도 어느 소속도 아니라고 하니까 정말 굉장히 난감한 표정을 하고 "알겠다." 그리고 가더라고요. (김주희 인터뷰)

얘기했죠. 왜 폭력을 보고도 왜 가만히 있냐, 왜 한 명, 단 한 명도 체포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네들은 뭐... 할 수 있으면 신고하라고, 그냥. 그리고 다 채증해 났다고. 다 채증해 났으니까 신고해라. (김현제 인터뷰)

(경찰서) 항의 면담을 제가 갔었거든요. 제가 "아니, 인지 사건이기 때문에 누구 수사 안 하

느냐?" 그래 하나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천막 부분은 특정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중략) 우리가 신고를 해주면 자기들이 빨리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신고가 없기 때문에... 이걸 자기들이 특정해 가지고 하기가 힘들다면서 그렇게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들이 채증한 데 보면 다 나오는 거거든요.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조○○ 인터뷰)

울산 북부경찰서는 왜 '다 채증해 놓은' 현장 영상을 증거로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인가? 폭력 현장에서 경찰이 한 것은 채증밖에 없었는데 수사하지 않을 거라면 왜 그렇게 채증에만 몰두한 것인가? 30명 넘게 현장에 있었던 형사과, 수사과 경찰은 대체 왜 배치된 것인가? 이런 의문은 해결되지 않은 채 이수기업 해고노동자가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구사대의 폭력은 덮어둔 채, 오히려 평화 집회를 열었던 주최 측에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3월 13일 천막을 빼앗긴 사람들이 회사로 돌아가는 구사대를 쫓아가 천막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경찰은 항의하는 집회참가자들을 막아 세웠고 구사대는 유유히 회사로 복귀해 정문을 닫을 수 있었다. 경찰에 가로막혀서 천막을 빼앗고 폭행한 가해자들을 눈앞에서 놓쳐버린 피해자들은 그곳을 떠날 수 없었다. 이들은 그 시간부터 14일 아침까지 항의집회를 이어갔다. 길거리에 앉아 있고 피켓을 들고 서 있던 이 평화적인 시위는 현대자동차, 구사대, 경찰 모두를 향한 항의였다. 이 집회는 예정에 없었다. 구사대의 폭력이 없었다면, 구사대의 폭력을 경찰이 개입하고 수사를 시작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집회였다. 따라서 이 집회는 천막 탈취와 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긴급집회, 우발집회로 집시법상 신고 절차의 예외 대상이며, 앞선 본래의 집회와는 다른 집회로 간주해야 한다. 경찰의 주장대로 신고 범위를 벗어난다는 혐의³⁶로 처벌할 수 없는 집회다.

35 형법 제122조

3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벌칙) ③제16조제4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비들이 후퇴할 때 정문으로 들어가니까 정문 앞에서 끝까지 붙잡고 저희는 잡고 안 놓치려고. 계속 분쟁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가면은 이제 경찰이 와서 쪽 갈라치기 하죠. 항상 그때 들어와요. 이제 경찰이 갈라치고 난 다음에 경비는 문을 다 닫아요. 그다음에 경찰은 빠지고, 그럼 저희들만 남아요. 경비대는 다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럼 저희만 병찌고 남아 있잖아요. 저희도 그렇다 하고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이제 외치는 거죠. 이제 투쟁 또 하는 거죠. 천막 내나라. 폭행한 사람들 내나라. 너희들 분명히 방금 했으니까 내나라. 그리고 경찰 보고도 ‘채증 다 했으니까 빨리 잡아가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앞에서 하다가 길어지면 경찰이 저희한테 하는 얘기는 “여기는 집회 장소가 아닙니다. 이동해 주십시오.” 그래서 13일날도 그 앞에서 밤새도록 농성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천막 가와라. 찢어졌든 어찌 됐든 그그들이 강탈해 갔으니까 천막만 갖다주면 우린 가겠다.” 경찰한테도 “강탈한 건 분명히 니네도 봤지 않냐? 강탈해 갔지 않냐? 강탈해 간 거 돌려주면 우리는 일단 집회 장소로 철수하겠다.” (장진형 인터뷰)

경찰은 평화적인 집회에 대해 주최 측을 피의자로 수사를 하더니 강탈당한 천막의 피해자로도 조사를 했다. 경찰은 주최 측에 선심 쓰듯이 “피해 보상에서 이 천막 값은 자기들(경찰)이 알아서 회사한테 받아주겠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천막 강탈은 현대차 구사대의 자행한 폭력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천막 강탈에 더하여,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구사대들을 비롯해 이런 행위를 지시한 자와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폭력을 방치한 경찰의 임무 방기까지 조사되어야 한다. 울산북부경찰서가 천막 강탈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는 것은 폭력 사건의 본체를 건드리지 않고 피상적인 수준에서 마무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폭력과 집회 방해는 묵인하고 평화적인 집회는 수사하는 공권력의 행위를 ‘편파적’이라 설명하는 길로는 충분하지 않다. 폭력과 집회 방해에 대한 법적 처벌은 불법에 대한 합당한 책임이다. 이 책임을 묻지 않으면 폭력과 집회 방해는 반복되기 마련이다. 3월 집회에 이어 4월 집회에서 폭력은 반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강도도 높아졌다. 이것이 불처벌이 만든 결과다. 더불어 경찰의 공정한 수사와 법적 처벌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모든 사람의 인권

을 지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인권을 침해한 구사대와 현대자동차에 대한 처벌을 통해 모든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평화적 집회의 권리’, ‘차별받지 않고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3. 20년 이상 이어진 폭력, 경찰과 구사대의 오래된 유착

이 사건 집회에서 벌어진 폭력 사건은 현대차의 노동 탄압의 역사, 즉 ‘구사대’라는 조직된 폭력을 이용한 노동자의 권리 파괴가 20년 이상 이어진 맥락 안에 존재한다. 폭력을 동원해 공장 안과 밖을 철저히 기업에 지배하에 둘 수 있는 것은 공권력의 묵인과 공조라는 유착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사적 폭력은 ‘불법’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 원칙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노동조합의 결성과 유지)와 권리 보장의 요구(집회·시위, 쟁의와 파업)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순간, 노동자에 대한 사적 폭력은 마치 ‘합법’인 것처럼 용인된다. 현대차 그룹의 구사대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폭력과 협력한 국가—정치권력, 정부 기관, 공권력, 사법권력—가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과 현대차 구사대 간의 공조는 과거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2003년 3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내 사내하청노동조합이 결성된 이후 노동조합 간부와 핵심 활동가들에 대한 현대자동차의 사찰이 의심되던 중, 2004년 10월 노조 감시를 담당하는 ‘특수 경비대’가 상시적인 ‘구사대’ 역할을 해왔음을 입증하는 문건이 입수되었다. 이 같은 현대차 경비대 운영방식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은 2005년 1월 진상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위 보고서와 함께 당시 ‘특수 경비대 D반’ 근무 일지를 입수했던 현대자동차노동조합 아산본부 유병민 부분부장의 증언에서도 경찰과 구사대 간의 긴밀한 연계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2003. 9. 6. 사내하청지회가 천막농성을 하던 천막이 경비대에 의하여 강제로 철거를 당하였으며, 이때 사내하청지회의 사무국장 오규환, 동 회계감사 김준규가 이들을 피해 달아나

다가 붙잡혀 구타당한 후 정문에서 대기 중인 경찰에 넘겨지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동년 10. 22. 사위장에 있던 동 부지회장 권수정을 20여 명의 경비대가 납치해 경찰에 넘기는 일이 발생하였다. (2004년 진상조사보고서)

유 부분부장은 다른 사건으로 경찰에 조사받으러 갔는데, 경찰이 자꾸 문건을 입수하게 된 경위를 따져 물었다고 했다.

“경찰이 자꾸 캐려고 하길래 그랬다. 지금도 협박을 받고 있다고. 그래서 경찰이 ‘협박을 받았다면 고소를 하라’고 하길래 못 할 것 없다고 했다. 그랬더니 말리더라. 나중에 하자고.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전화가 왔다. 협박하던 방호대장한테서 말이다. 없던 일로 할 테니까 이제 그만 하자고. 경찰이 내가 고소를 하려 한다는 것을 찔러 준 게 아닌가? 울산 공장이나 아산공장의 비정규직 노조 간부들이 경찰에 넘겨진 과정도 그렇지 않나.”³⁷

2011년 4월에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탈퇴 강요·인권침해 진상조사보고서’가 발간될 정도로 구사대의 폭력이 심각했다. 2010년 대법원에서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된 이후 노동자들이 노조로 뭉치자, 노동조합 활동을 막기 위해 구사대의 폭력은 더 극악해졌다. 이 보고서에서도 구사대의 폭력은 경찰의 비호와 협력이 없으면 불가능했으며,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경찰 역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폭력 사태가 발생한 후 피해자인 조합원들의 고소·고발과 신고에도 불구하고 소극적 수사를 하는 등 공권력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으며, 폭력 현장에서 모든 장면을 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건 현장에서 사용자 측 관리자들과 인사를 나누거나 커피를 마시는 등 공권력으로서 역할을 포기한 경우가 많다.

“이번 파업에서 몸싸움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인가 싶었다. 몸싸움에서 많이 맞았는데, 사측 관리자와 용역은 죄책감 없이 우리를 때리고 경찰은 이를 보면서 외면하고 법치국가인가 싶었다. 재벌의 힘이라는 게 이런 것인가.”

“폭력 사태를 경찰은 수수방관한다. 현행범이니 데려가라고 하면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경찰이 나는 때리는 것 못 봤으니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한다. 설사 폭력 사태를 봤을지라도 또 다른 경찰은 우리 관할이 아니니 다른 데 신고하라고 했다. 집회신고하려고 경찰서에 줄 썼는데, 우리가 용역업체 직원보다 앞줄에 서 있었다. (집회신고가 시작되는) 12시가 되니 용역업체 직원이 우리를 때리고 자기네를 먼저 들여보내려고 했는데도 경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측이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 온양 경찰서 사복형사들이 바로 옆에서 이를 보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형사들 얼굴을 잘 알고 있어 형사들한테 도움을 요청해도 형사들은 못 본 척하고 사측이 동원한 용역들의 폭력을 방조하기만 했습니다.” (2011년 진상조사보고서)

2011년의 증언이 2025년에도 똑같이 반복됐다. 폭력이 일상화된 공장의 문제는 공장 안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공장 담을 넘어 연대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이 인간의 존엄을 박탈할 수 있는 사회에 무감해지는 모두의 문제가 된다. 기업폭력은 사적 폭력이면서 동시에 국가 권력에 의해 묵인되고 지속하는 폭력이다.

아직도 있습니다. 진짜 그 사람들이, 15년 전에 탄압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탄압하고 있어요. 얼굴 100% 기억나는 그 인간은 워낙 우리를 잘 탄압해 가지고 잘 살아남았는지는 몰라도 그 악랄한 놈은 아직도 이수 기업 투쟁 때도 진두지휘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중부서, 남부서, 동부서가 있는데 그래 울주군 이렇게 해갖고 네 군데가 있었는데 지금은 북부서가 생겨가지고 이수기업 동지들이 가서 항의 집회를 했는데, 그 네 군데는 경찰서가 아니고 현대자동차의 한 부서다. 임원이 바뀌거나 이러면 경찰이 와가지고 인사

37 “‘구사대’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5.03.11.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312>

하고 갈 정도로. (이도한³⁸ 인터뷰)

검찰과 유착 관계 있죠. 제가 조사받은 날 검찰이 나한테 ‘이것(현대자동차의 폭력과 납치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은 철학이에요.’ 뭐 이러면서 얘기한 날 전화가 왔어요. 그 검사실에 있는 여성이 전화 받고 ‘아 네네’ 이러더니 내 앞에 있는 검사한테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공장장님이 점심 약속 어떻게 하나고 전화 왔는데요.” (검사가) 얼굴 빨개져가지고 “네 뭐, 네 알겠습니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 이수기업 폭행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폭행을 당했어요. 별건 대낮에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본 사람도 너무 많고 그걸로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람도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명백하죠. 그런데 현대자동차는 단 한 번도 이걸로 처벌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건 이건 시스템이라는 거죠. ‘노동조합 활동하는 건 불법이다’라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권수정³⁹ 인터뷰)

그때 한창 투쟁일 때 매주 월요일, 그때는 북부경찰서가 없었어요. 동부경찰서가 이제 여기를 관할하고 있었고 새벽마다, 야간 근무할 때 새벽마다 저희 경비 반장, 보안팀 반장님을 태워서 동부경찰서에서 회의했습니다. 같이. 그런 거 그런 관계입니다. 그냥 상황이라든지 예를 들어 어떻게 전술 회의를 하는, 그때 최병승 동지가 철탑 내려오고 나서 수배 상태로 공장 안에 있을 때인데, 이때 어떻게 문 열어줄게, 어떻게 들어와서 할래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런 작전 회의를 하죠. 근데 저는 구체적으로 자세히는 잘 모르는데, 왜냐하면 저는 태워다 주는 역할밖에 없으니까. 근데 항상 태워주고 반장님이 오늘 뭐 이런 회의하는데 이거 되겠나 하면서 이런 얘기를 실제로 했어요. (김현재⁴⁰ 인터뷰)

그 당시(2007년 이후)에 현대차에서는 그냥 무법천지였어요. 그 당시에는 법이라는 게 존재

안 해요. (중략) 예전에는 정보과 형사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저희가 정보과 형사들 얼굴 다 알거든요. 보통 보안팀장도 만나고 그 밑에 과장급들도 만나고 다 만나죠. 이제 현장이 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과 주로 만나죠. 그러니까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분들과 소통을 하는 거죠. (김○○ 인터뷰)

장기간 이어진 폭력으로 현대차 울산공장은 ‘폭력이 일상이 된 공장’이 되었다. 무더진 폭력의 감각과 함께 공권력에 대한 불신으로 노동자들은 폭력으로부터 회복될 수가 없었다. 공권력이 개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가해자들이 폭력을 행사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체득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에게 공권력과 사법제도는 적어도 현대차 그룹과 관련해서는 신뢰할 수 없는 제도이다. 폭력으로부터 보호는 하지 않으면서 권리를 요구하는 노동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공권력이 현대차와 함께 ‘폭력의 공장’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현대차에서 그 비정규직 투쟁이 거의 20년 동안 벌어졌잖아요. 그 20년 동안 경찰이 노동자들에게 행한 폭력으로 인해서 처벌된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경찰 또한 현대차 자본과 어떤 그런 소송, 쉽게 말하면 현대차 자본을 과도하게 연행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꺼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것을 통해서 고소 고발당하는 이런 부분들은 온갖 증거가 있느냐 내지는 특정할 수 있느냐 폭력자를 특정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 얼버무리지만, 자본한테 만약에 자본을 누구를 연행해서 데려갔을 경우에 법률적 소송에 걸렸을 때 자기들에게 부담이 있기 때문에, 거의 없죠. 그런 폭력 사태가 벌어져도 사측이 법적으로 제재를 당하거나 이런 건 없고 주로 이제 쌍방 폭력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일방적으로 이제 노동자들에 대한 연행과 처벌, 이렇게 해왔던 게 지금까지 역사이기도 하고 관행이죠. (강진관 인터뷰)

처벌받지 않는 사적 폭력이 20년 이상 이어졌다. 간혹 구사대 개인의 폭력이 확인되어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있어도 구사대 폭력을 조직한 현대차에게 그 책임을 묻은 적은 없었다. 오히려 회사의 (암묵적인) 지시를 은폐하고 개인의 일탈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때 확실한 포

38 이도한은 2012년 울산공장 비정규직 투쟁 과정에서 구사대에 의해 2번 납치당했다.

39 권수정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2003년 비정규직노동조합을 만들고 비정규직 투쟁 중 구사대에 의해 2번 납치당했다.

40 김현재는 2012~2013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보안팀에서 근무했다.

상이 주어졌다. 이것이 지금까지 구사대가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이었고 이수기업 해고자 집회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한 원인이다.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지시했나 알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시한 적 없다. 내가 도발로 그렇게 된 거다. 나를 처벌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지시한 게 없으니까 더 뒷선까지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애는 나름대로 의리를 지키고 그러면 이제 처벌은 벌금형이 떨어지거나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실제로 그런 게 있었어요. 많이 있었죠. 2010년 10년 초 당시에는 그때 그런 거 받은 사람들은 거의 다 다 직원 됐습니다. 처벌 내용 만약에 벌금 받았잖아 벌금도 회사에서 다 대줘 그래요. 개인이 돈 안 냅니다. (김○○ 인터뷰)

4. 소결 : 막을 수 있었던 폭력, 반복된 집회 방해, 그 책임은 공권력에 있다

10년, 20년을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일터에서 쫓겨났다. 일하는 동안 업체 이름은 바뀌었어도 이들의 일터는 울산공장이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회사 정문에서 가로막히고 손때가 묻은 작업 도구를 다시 잡을 수 없다는 상실감은 내 노동의 시간과 가치를 부정당한 감각이기도 하다. 일터를 잃는다는 것은 일과 함께 만들어 온 세계를 잃는 것, 기대하고 계획했던 삶의 미래가 사라진 것이다. 그렇기에 해고를 맞닥뜨린 노동자는 최선을 다해 삶과 미래를 잃지 않기 위해 싸울 수밖에 없다.

현대차와 투쟁하려는 이수기업 해고노동자들은 집회를 하고, 천막을 치고, 연대를 조직했다. 정문 밖으로 밀어내면 바로 그 앞에서 다시 싸움을 시작하겠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권리와 존엄을 외쳤다. 오랫동안 노동조합을 적대하고 비정규직을 착취했던 현대차는 정문 밖에서도 이들의 자리는 없다는 듯이 가차 없는 폭력을 휘둘렀다. 권리를 요구하는 장소를 없애

버리려는 폭력 앞에 사람들은 경찰에게 도움을 구했다. 그러나 오랫동안 기업의 폭력에 눈감고 공조한 경찰에게 눈앞의 폭력은 있어도 없는 것이었다.

집회를 방해하려고 거리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기업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경찰(국가)에 있다. 경찰의 책무,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폭력은 반복될 것이고, 권리를 짓밟는 파괴적인 기업의 힘은 커질 것이다. 그렇기에 경찰의 책무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하고자 한다.

천막 훼손과 탈취는 집회의 권리와 연대를 파괴하는 행위였다. 구사대가 권리를 파괴하면 공권력은 이를 저지하고 처벌하는 것이 책무다.

2025년 3월과 4월 이수기업 해고투쟁 집회에 참가한 이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폭력을 당했던 그날의 경험을 통해, 평화적 집회의 권리가 어떻게 짓밟혔는지를 몸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 기억은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했다는, 국가가 나를 보호하지 않았다는 강렬한 체감이기도 했다. 권리가 삭제된 이 사건은 현장에 배치되었던 경찰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 유엔 법집행관 행동 강령⁴¹은 경찰의 임무 수행 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모든 사람의 인권을 유지하고 옹호해야 한다는 인간 존엄성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평화적 집회의 권리는 타인과의 연대 속에서 개인의 자주권 행사 능력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권리다.⁴² 집회는 개인들이 모여 집단으로 행사되는 권리다. 따라서 집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자유롭게 함께 모일 권리(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수기업 해고자들과 연대하기 위해 모였던 참석자들은 3월 13일, 4월 18일 두 번의 집회에서 벌

⁴¹ 유엔 법집행관 행동 강령(CCLEO)은 1979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어 법집행의 윤리적 기준에 대한 보편적인 기준점 역할을 한다.

⁴² 유엔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37호 2항

어진 폭력은 연대를 파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날 구사대가 빼앗으려 한 것은 집회와 연대의 권리였으며, 구사대가 짓밟으려 한 것은 인간 존엄성이었다.

평화적 집회의 권리 실현의 주된 책임은 국가에 있다. 그러나 기업 역시 피고용자의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포함하여 인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⁴³. 따라서 현대차가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파괴한다면 국가는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국가는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집회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고 원활한 진행을 보장해야 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정반대의 적대적인 상황이었으며, 그 원인이 경찰에게 있다는 점이 참가자들을 더욱 분노하게 했다. 그렇기에 집회참가자들은 경찰과 관련해 ‘구경’, ‘방관자’, ‘방치’라고 표현했던 것이다. 하지만 당시 경찰의 태도를 ‘구경’이나 ‘방관’ 정도로 평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집회참가자 중 누군가 말했던 ‘구사대와 한 몸’이 더 적확할 것이다. 경찰은 집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구사대와 같이 움직였다. 구사대가 마음껏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집회참가자들의 항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보호해 줬으며, 처벌받아야 할 범죄행위를 덮어주었다. 이런 경찰의 행위는 구사대와 ‘공조’라 볼 수밖에 없다.

현대차의 폭력을 동원한 일터의 통제에 대해 국가도 책임이 있다.

현대차 구사대 폭력은 기업의 경영 방식과 결합한 형태로 오랫동안 이어졌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이 폭력적인 관리에 순응하지 않았다. 2003년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사내하청노조가 만들어진 계기도 하청업체 관리자에 의한 ‘식칼 테러’ 사건이었다. 폭력은 노동자들의 저항을 촉발했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외치며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저항을 하자, 현대자동차는 집요하고 잔인한 폭력의 시스템을 더 공고하게 구축했다. 이것이 가능하고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현대차와 유착된 경찰의 존재 때문이었다. 경찰이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책무를 방기했기 때문에 폭력은 용인되고 반복되었다. 구사

대의 폭력이 처벌되지 않음으로써 기업은 그 폭력에 대해 책임질 아무런 압박도 받지 않았다.

20년 전부터 현대차의 폭력에 대해 문제를 지적해 왔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폭력이 반복된 이유는 공권력의 협조가 있었고, 그에 대한 개선이 없었기 때문이다. 2004년 진상조사보고서, 2011년 진상조사보고서에서의 증언과 2025년 현재의 증언이 다르지 않다. 2011년 진상조사보고서는 사용자에게 편향적인 공권력 행사를 하는 정부에 대해 이렇게 요구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사내하청)노동자들에 대한 공장 안과 밖에서 자행되는 원·하청 사용자의 폭력행사에 대해 경찰은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이러한 폭력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 지난 14년간 정부는 이 사적 폭력에 대해 무엇을 했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다시 던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물음이 더 이상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경찰의 불개입과 불처벌은 폭력을 행사한 자들에게 폭력을 반복해도 괜찮다는 신호가 되었다. 이로 인해 경찰에 대한 불신은 심화되었고, 기업과의 유착을 확신하게 했다. 더 나아가 현대차가 경찰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으며 공권력(국가)보다 기업이 우위에 있음을 사회적으로 각인시켰다. 기업의 폭력(자본 권력) 앞에 무력하거나 종속된 공권력(국가)을 민주국가의 공권력이라고 할 수 없다.

43 유엔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37호 31항

VI

결론

- 현대자동차의 구사대 폭력은 조직적이고 비인도적인 노무관리 전략

2025년 4월 18일, 울산 현대자동차 앞에서, 장갑을 끼고 작업화를 신은 동일한 복장의 남성 500여 명이 평화롭게 집회를 하는 시민들에게 달려들어 집단폭행을 했다. 천막을 찢고, 시민들의 머리채를 잡고 팔을 꺾었다. 13명이 병원에 실려가고, 20여 명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했다. 2025년 한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더 놀라운 일은 경찰이 그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고, 경찰에 피의자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은 이는 집회주최자였다는 사실이다. 계엄을 선포하고 시민들을 위협했던 윤석열도 파면되었는데, 마치 계엄령 치하처럼 평화롭게 집회를 하는 시민들에게 이토록 과감하게 폭력을 행사한 이들은 누구인가, 누가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명령하였는가, 그들은 어떻게 그토록 잔인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누가 그들에게 폭력의 면죄부를 주고 있는가.

1. 민주노조를 향한 구사대 폭력의 역사

한국사회에서 노동조합이 사회적으로 시민권을 얻은 것은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이다. 그 이전까지 현장은 병영적 현장통제가 일반적이었고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회사의 하부조직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다. 자주적인 ‘민주노조’는 정부와 회사 관리자들에게 탄압을 당했다. 1970년대 동일방직에서는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해 농성을 벌이던 노동자들에게 관리자들이 동물을 끼얹기도 하고, YH무역 여성노동자들은 폐업에 항의하여 야당인 신민주당사에 들어가서 농성을 하다 경찰에 의해 끌려나오면서 한 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70년대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탄압은 경찰과 사측의 폭력이 더해진 것이었다.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에도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은 사라지지 않았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당시에도 회사측이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노동자들의 파업을 막았는데, 그 이후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에는 늘 구사대가 등장했다. 2000년부터 비정규직 투쟁이 활성화되면서 비정규직 투쟁에 구사대가 동원되는 경우도 많았다. 인권단체연석회의에서 2007년 9월 17일 진행한,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지엠대우자동차 부평공장, 코스콤 비정규직에 대한 구사

대 폭력, 경찰폭력 즉각 중단 기자회견’에서는 경찰과 구사대의 폭력이 생생하게 증언되었다. 2006년에는 세종병원, 기륭전자, 레이크사이드CC 등 여성사업장에서 발생한 구사대 폭력에 대해 기자회견과 고소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2003년 설립하여 2012년에 설립인가가 취소된 창조건설팅은 노조파괴를 전문으로 하는 노무법인으로서, 14개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노조파괴 공작을 하면서 용역경비업체를 구사대로 동원하도록 했다.

창조건설팅의 노조파괴 공작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후, 노골적이고 집단적인 폭력은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았을 뿐, 여전히 공장의 담벼락 안에서는 물리적인 집단폭력이 자행되고 있었다. 202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파업투쟁을 할 때에도 원청의 직반장들로 구성된 구사대가 동원되어 농성장을 부수고 노동자들을 끌어냈다. 2024년 현대중공업에서도 파업 중인 노동자들을 경비대가 집단폭행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물리력으로라도 부수려고 하는 사용자들의 왜곡된 인식이 ‘구사대’라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조직을 만들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구사대의 직접적인 폭력을 묵인하고 처벌을 가볍게 하는 경찰과 검찰, 법원이다. 사업장 안에서의 폭력을 큰 문제로 여기지 않는 공권력의 태도가 이런 물리적 폭력이 지속되도록 만들어왔다. 계엄을 통해 시민들의 권리를 폭력으로 제한하려고 했던 대통령을 탄핵한 지금, 노조를 향한 사적 폭력을 중단시켜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2. 현대차에서 지속되어온 구사대 폭력

2003년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사내하청지회가 설립된 것도 폭력적인 노무관리 때문이었다. 2003년 3월 19일, 월차를 쓰려고 관리자를 찾아간 사내하청 노동자를 하청관리자가 밀쳤고, 넘어진 노동자는 병원에 입원했다. 그런데 하청관리자가 병원까지 찾아가 하청노동자의 아킬레스를 식칼로 그었고 그것에 분노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라인을 세우고 투쟁했다. 그 결과 2003년 3월 28일 현대차 아산 사내하청지회가 설립되었다. 이어서 7월에 현대차

동차 울산공장에서 현대차 비정규직노조가 설립되었고, 2025년 현대차 전주공장 사내하청지회가 설립되었다.

2005년 1월 “현대차 노동자사찰·비정규노조탄압 진상조사단(단장 조영선 변호사)” 보고서에 의하면, 현대차 아산공장은 순수한 경비 목적의 경비대를 3조3교대로 운영하는 한편 특수한 목적수행을 위해 경비대D반을 창설하여 아산본부(현대차 아산공장의 정규직노조) 간부와 사내하청지회 활동가들의 움직임과 활동을 실시간으로 사찰했다. 경비D조의 문제가 밝혀지면서 현대차 아산공장은 경비업체를 변경하고 D반을 해체하며 공장장의 사과문을 공지하기도 했다. 그 이후에도 노조활동에 대한 사찰이나 폭력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여전히 경비대와 용역을 동원하여 구사대역할을 하도록 했다. 2005년 울산과 아산에서 노조가 라인을 점거하고 투쟁할 때 구사대가 투입되었다. 구사대는 파업 이후 수배된 노조 간부들을 납치하여 경찰에 인계하기도 하고, 납치·폭행하여 외딴 곳에 버려두기도 했다. 이런 탄압 때문에 노동조합의 힘이 약화된다.

2010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이었던 최병승씨가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판결을 받고, 사내하청 노조가 다시 활성화된다. 8월과 11월의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을 할 때, 회사측은 구사대 400~500명을 동원하여 점거 농성 중인 조합원들에게 무차별 폭력을 행사했고 그 때문에 수십명이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당시 구사대는 관리직과 경비대만이 아니라 상당수의 용역도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에도 2012년부터 296일간 진행된 최병승·천의봉씨의 철탑농성에 연대하고자 했던 2013년 ‘희망버스’ 승객들에게 구사대는 소화기를 뿌리고 폭력을 행사했다. 울산공장에서는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수요집회가 2010년 대법원 판결 이후 지속되었는데, 철탑농성 후 2016년 특별채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현대차 구사대는 열사광장으로 향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가로막고 폭력을 행사해왔다. 이런 폭력 속에서 노동자들은 폭력에 무너지기도 했다고 증언한다.

현대자동차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특별채용이 본격화된 후, 구사대 폭력은 잠잠해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여전히 불법파견 쟁점이 남아있는 이수기업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유지하며 투쟁을 하자, 현대차는 노동자들을 집단적으로 해고하고 장기투쟁을 위해 농성장을 차리려는 노동자들을 또다시 폭행한 것이다. 2025년 3월과 4월에 발생한 이 폭력

은 현대자동차가 여전히 구사대를 동원하는 폭력적인 방식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 폭력은 공공의 공간인 현대차 정문 앞 인도에서 벌어진 폭력으로서, 집회신고가 되어있는 평화로운 공간에 구사대가 난입하여 발생한 것이다. 연대하러 온 여성들의 머리채를 잡고 폭력을 가하는 등 여성에 대한 강도 높은 폭력도 두드러졌다. 이는 현대차의 기획된 폭력으로 이수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고립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3. 현대차는 왜 이수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을 왜 막으려고 했는가?

2003년 현대차와 정규직노조가 체결한 ‘확약서’에 의해 1차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업체가 폐업을 하더라도 근속이 인정되고 고용이 승계되어왔다. 2010년 사내하청이었던 최병승씨가 불법파견 소송에서 승소한 후 현대차는 2012년부터 몇 차례에 걸쳐 특별채용의 형태로 하청노동자를 정규직화했다. 그 과정에서 인원이 줄어든 업체는 폐업하고, 특별채용되지 않은 노동자들은 다른 업체로 전환배치되는 등 고용은 계속 승계되었다. 여러차례 특별채용과 업체폐업이 계속되면서 1차 사내하청은 이수기업과 현인기업만 남게 되었다.

이수기업은 현대차 수출선적부 사내하청 업체로서, 2015년부터 울산공장에서 수출용 차량 이송 업무를 담당했다. 수출선적부도 2019년과 2020년 서울중앙지법에서 불법파견 인정을 받았고, 수출선적부 대다수가 특별채용으로 인한 인원감소로 폐업하면서 남은 인원은 이수기업과 현인기업으로 각각 전환배치되었다. 그런데 2024년 4월 4일, 대법원은 무진기업등 수출선적부 일부 업체의 불법파견을 부정했다. 무진기업등 업체에서 체에서 불법파견 소송을 했고 1심 승소 이후 특별채용에 응하지 않아 이수기업으로 전환배치된 노동자들은 확정 패소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이수기업에서 계속 일해왔던 노동자들은 2024년 5월 30일과 7월 25일 대법원에서 승소하였다.

현대차는 이수기업을 폐업하고 현인기업만 남기겠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고용을

승계해왔던 관행을 깨고 2024년 10월 1일, 이수기업 노동자 전원을 해고했다. 불법파견 소송에서 확정 패소한 노동자들이 이수기업에서 일한 기간을 근거로 다시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우려하여, 불법파견 증거를 없애기 위해 폐업도 하고 고용승계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수기업 노동자들은 이런 부당함에 항의하기 위해서 투쟁을 진행하였고, 투쟁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현대차 울산공장 앞에 천막농성장을 설치하고자 했다. 현대차는 이런 부당한 집단해고가 밖으로 알려지는 것을 막고, 이수기업 해고노동자들의 투쟁으로 폭력으로 무력화시키기 위해 구사대 폭력을 가한 것이다.

4. 누가 이런 폭력을 행사했는가?

이런 폭력을 행사한 조직을 우리는 ‘구사대’라고 칭한다. 현대자동차는 2003년 사내하청에 노조가 설립된 이후 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감시하고 경우에 따라 폭력을 행사하는 조직을 운영하였다. 2003년 현대차 아산공장의 정규직 노조가 발견한 ‘경비조 운영과 관련한 문건’에 의하면 초기에는 경비대에 별도의 경비D조를 편성하여 그 일을 수행하게 했다가 이것이 사회문제가 된 이후로는 경비D조를 해체하고 기존 경비대에 통합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울산공장에서 구사대 역할을 하는 조직은 울산비즈니스지원실 산하의 보안운영팀이며, 현대차 울산공장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보안운영팀 소속 직원과 축탁직으로 채용된 인원, 그리고 하청을 통해 고용된 보안업체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보안업체 직원들의 경우 노조를 만들고 불법파견 소송에 나선 이후로는 구사대 업무에 동원되지 않고, 주로 외곽 경비를 맡고 있다.

구사대 역할은 이렇게 직접고용된 정규직과 축탁직이 주로 수행하며, 특수부대와 해병대, 운동부, 운동선수 출신 등이 주로 채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울산공장 보안운영팀의 총인원은 300여 명 정도이며 그 중 축탁계약직이 과반이다. 현대차는 채용 과정에서 이들에게 ‘구사대’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점을 알리지 않았다. 다만 보안운영팀이라는 특성상 사업장 내 순찰업무와 차량검색, 산업보안 등의 역할도 수행한다. 그러다가 노조와 관련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 업무는 최소화하고 구사대 업무로 투입하는 것이다.

‘구사대 업무’란 노조의 투쟁을 방해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여 무력화하는 역할, 노조 간부들에 대한 감시와 사찰, 집회에 대한 사찰과 감시 등이다. 이런 역할을 거부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으나 사측은 ‘구사대 업무’ 과정에서 활약을 하거나 희생을 한 경우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기도 하고, 보상과 포상으로 폭력사용을 독려하기도 하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측이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충성을 보이도록 만든다. 그런 점에서 2025년 3월과 4월에 발생한 이수기업에 대한 폭력 행위가 보안운영팀장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적어도 상시 사내 시스템에 따라 보안운영팀을 거쳐 지원사업부나 부사장, 사장에게까지 보고가 이루어진다고 봐야 할 것이다.

5. 현대차의 폭력을 뒷받침하는 공권력

문제는 현대차의 폭력이 그것을 뒷받침하는 공권력에 의해 공고해졌다는 점이다. 이수기업에 대한 현대차 구사대의 폭력 과정에서 경찰이 어떤 대응을 했는지를 보면 보다 분명해진다. 3월 13일의 집회는 집회신고가 되어있는 집회였다. 구사대에 의해 천막이 찢기고 집회참가자들이 다칠 때, 참가자들이 경찰에게 ‘집회구역을 침범한 이들을 연행하라’고 요구했으나 경찰은 채증을 하거나 대기할 뿐이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방송만 했다. 다음 날 새벽, 선전전 과정에서 또다시 발생한 폭력상황에서도 경찰은 구경만 하고 있었다.

4월 18일은 3월 13일의 폭력으로 볼 때 또다시 폭력이 예견되는 상황이었고, 이미 구사대 500여명이 도열하여 폭력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음에도, 경찰은 신고된 집회를 보호하고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집회 시작 후 구사대의 폭력이 시작되었을 때에도 구사대를 제기하거나 경고하지 않았다. 집회 대오에 진입할 때에는 구사대가 밖으로 빠지도록 유도하여 퇴로를 열어주었다. 여기에 더해, 신고된 집회장소에서 현수막을 펼치고 선전전을 하는 집회참여자에게 ‘집회신고 범위 이탈’이라고 고지하여 구사대가 현수막을 침탈

하도록 빌미를 제공했고, 피켓으로 건드렸다는 이유로 ‘경찰관 폭행’이라고 주장하며 집회참가자를 현행범으로 연행했다. 그에 항의하여 비폭력으로 연좌한 집회참가자들을 기동대를 동원하여 강제 해산하고 그 과정에서 또다시 두 명을 연행했다. 경찰의 채증은 집회참가자들에게 집중되었고, 그 채증은 구사대의 폭력행위를 조사하는 데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이후에도 구사대 폭력은 조사조차 하지 않으며, 평화로운 집회주최자를 피의자로 수사하였다.

그동안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무수히 폭력을 당하면서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대응하지 못했던 이유는 경찰이 노동자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폭력행위를 신고하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수사하지 않고, 오히려 노동자들을 쌍방폭행의 당사자로 지목하여 수사대상이 되도록 하거나 항의하는 노동자를 연행하기도 했다. 그래서 구사대는 경찰이 보는 앞에서 거리낌 없이 폭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예전에는 이런 폭력이 공장 담벼락 안에서 진행되어 왔다면 이제는 많은 이들이 지나다니는 정문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자행된다. 공권력의 비호 속에서 현대차의 사적 폭력이 점점 대범해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찰에 대한 불신이 심해지고 공권력에 대한 신뢰는 사라지게 된다.

6. 우발적 사건이 아닌 조직적이고 폭력적인 노무관리전략

현대자동차는 2022년부터 연속 3년간 자동차 판매량 세계 3위를 기록한 글로벌 기업이다. 그런데 이런 기업에서 구사대를 동원하여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현대자동차의 구사대 폭력은 그 역사에서 보았듯이 우연적이고 돌발적인 일이거나 한 두 사람의 실수가 아니다. 이것은 폭력으로 비정규직의 투쟁을 관리하려는 노무관리 전략의 일부이다. 게다가 그것은 정규직노조에는 작동하지 않고 비정규직 노조에만 작동하는 선택적인 전략이다.

‘구사대 폭력’은 현대차 노조탄압의 한 부분이다. 현대차는 사내하청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와 해고, 개인들에 대한 노조 탈퇴압력,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공장 출입금지, 투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자행했고, 구사대 폭력은 그런 탄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

도록 하는 압력수단이였다. 현대자동차 공장 안에서 벌어진 이 모든 부당노동행위들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면서 결국 노동자들에 대한 구사대 폭력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은 노동자 분할전략이기도 했다.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조는 규모도 크고 투쟁의 파괴력도 높다. 현대차는 정규직과 사내하청을 차별함으로써 정규직의 우월감을 유지하고, 정규직-비정규직이 단결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현대차 안에서 벌어진 폭력행위에 대해 현대차의 구성원들이 모두 분노해야 하지만, 정규직들이 이런 사측의 폭력행위를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여기게 된 것도 이런 분할전략의 결과물이다.

7.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고, 지속될 수 없는 노무관리

폭력은 피해자들의 인격을 훼손하고 깊은 트라우마를 남긴다. 현대차 불법파견의 피해자인 노동자들이, 그 불법을 시정하고 피해를 회복하라는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당했다. 이런 폭력 때문에 약해진 노동조합은 불법의 책임자인 현대차가 주도하는 ‘특별채용’이라는 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여 자존심을 지키고자 투쟁한 이들은 폭력의 집중적인 희생자가 된다. 이런 폭력 때문에 투쟁이 힘을 갖지 못하게 되면 노동자들은 296일간의 철탑농성 등 극한투쟁을 선택하게 되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는 사측에 맞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한다. 2005년 현대차의 탄압에 항의하여 목숨을 끊은 울산공장 류기혁 열사와 2013년 회사의 손배·가압류에 항의하여 목숨을 끊은 아산공장 박종식 열사 등 아픈 죽음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런 폭력적인 노무관리는 당연히 위법이며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만이 아니라 이런 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이들도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 또한 이런 폭력으로 노조활동을 방해한 부당노동행위도 처벌되어야 한다. 현대차 정문 앞에서 진행하는 집회를 허가받지 않고 촬영하고 선전전을 촬영하고 감시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명백한 위법이다. 그런데 위법한 행위라는 점만 문제인 것은 아니다. 유럽의 공급망실사제도가 202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발효된다. 구사대를 이용하여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공급망 내의 인권침해이며, 이는 매출액의 최대 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행위이다. 전 세계적으로 인권경영의 중요성이 논의되는 지금, 현대차의 이런 경영전략, 노무관리 전략은 기업에 대한 국제적 이미지를 훼손하고 기업 가치와 평가를 하락시킬 것이다.

법적인 문제 이전에 노동자들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지 않고 노조할 권리를 부정하는 기업이 과연 존재가치가 있는가. 2024년 12월 3일, 시민들은 윤석열의 계엄을 막았고 윤석열은 파면되었다.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물리력으로 침해하려는 행위를 시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 게다가 현대차는 4월 18일, 이수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려고 찾아간 연대시민들에게도 심각한 수준의 폭력을 행사했다. 이 사건은 시민사회에서도 결코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현대차가 이런 방식의 노무관리전략을 지속한다면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Ⅶ. 진상조사단의 요구

진상조사단은 현대차 사내하청 이수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현대차 구사대의 폭력 사건을 조사하면서, 현대차만이 아니라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책임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진상조사단은 현대자동차와 고용노동부, 경찰, 그리고 현대자동차지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현대자동차에 요구한다.

노동조합을 존중하지 않는 기업, 인권을 지키지 않는 기업은 존재 가치가 없다. 현대자동차는 이번 폭력사태의 원인이 된 이수기업 해고노동자 고용승계와 직접고용에 나서야 하며,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폭력에 가담한 이들을 징계처분 해야 한다. 이번 폭력사태에 대한 제대로 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진상조사단을 비롯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 현대차는 관련 대법원판결(대법원 2022다224290판결, 대법원 2022다217728 판결)에 따라 이수기업 해고자들을 즉각 직접 고용할 것
- 2003. 8. 11.자 확약서에 따라 이수기업 해고자들을 근로조건 저하없이 즉각 고용승계할 것
- 이 사건 폭력사태에 대한 대표이사의 사과 및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
- 이 사건 폭력사태 책임자들을 즉각 해고하고, 폭력행위 가담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단행할 것
- 보안운영팀의 구사대 운영을 즉각 중지할 것
- 현대차는 노조에게 보안운영팀의 운영실태를 보고할 것, 구사대 운영 금지 및 위반시 회당 10억의 위약벌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
- 이 사건 폭력사태 피해자들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것

〈2〉 고용노동부에 요구한다.

현대차의 구사대 운용은 2025년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다. 2004년 〈현대자동차 노동자 사찰·비정규직 노조탄압 진상조사보고서〉와 2011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탈퇴 강요·인권침해 진상조사보고서〉에서도 밝혀진 것처럼 현대자동차의 구사대 운용과 폭력행위는 오랫동안 지속된 것이다. 이러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막지 못한 고용노동부의 책임도 있다. 진상조사단은 고용노동부에 다음의 내용을 요구한다.

-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련 대법원판결(대법원 2022다224290판결, 대법원 2022다217728판결)에 따라 즉각 현대차에게 이수기업 해고자들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명령할 것
- 현대차 3개 공장의 구사대 운용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할 것

〈3〉 경찰에 요구한다.

집회를 담당하는 법집행공무원은 주최자와 참여자의 기본권 행사를 존중하고 보장해야 하며, 평화적 집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 그러나 울산지방경찰청과 울산북부경찰서는 이수기업 해고노동자들의 집회에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게다가 권리를 침해받고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을 오히려 위법행위로 수사하고 있다. 폭력을 행사한 현대자동차 보안팀에 대한 수사가 우선이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보안팀과 경찰의 유착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어야 한다. 국가가 경찰의 불법(집회방해와 직무유기)에 대해 조사해야 하며 그래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우리 조사단은 경찰에 다음과 같은 조치가 빠르게 이뤄질 것을 요구한다.

- 현대차 구사대의 폭력행위를 방지하지 못하고, 평화집회 보호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한 경찰청장의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 당시 폭력을 방치한 울산경찰청장등 책임자와 관련자 조사 및 조사결과 공개
-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폭력사태 관련 책임자들을 즉각 파면할 것
- 이 사건 폭력사태 시 현장에 출동한 경력들을 징계할 것
- 이 사건 폭력사태에 가담한 구사대 및 지시자들에 대한 강제수사(구속수사 및 압수수색 포함)를 포함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것
- 이수기업 노동자들과 당시 연행자들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것

〈4〉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에 대한 요구

정규직-비정규직을 막론하고 노동자들이 일하는 공간에서,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지나는 공공의 공간에서 현대차의 사적 폭력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개입하고 문제 제기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에 진상조사단은 현대자동차 지부에 요구한다.

- 현대차에 대한 요구가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현대차로부터 노조에게 보안운영팀의 운영실태를 보고하게 하고, 구사대 운영 금지 및 위반시 회당 10억의 위약벌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

〈참고자료 목록〉

1	2004년 현대자동차 노동자사찰·비정규직노조탄압 진상조사보고서
2	2011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탈퇴강요·인권침해 진상조사보고서
3	2024년 현대자동차 지속가능성 보고서
4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2다224290 판결,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다217728 판결
5	반용역프로젝트팀(2012), 용역폭력근절을 위한 정책대안 보고서
6	법통웹진, 2025년 5월호, 현대자동차 이수기업 정리해고 투쟁경과
7	사내협력업체 도급계약조건 개선 적용 관련 확약서
8	울산지방법원 2025. 6. 10.자 2025카기5288 결정
9	유럽안보협력기구와 베니스위원회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관한 지침」
10	유엔 법집행관 행동 강령(CCLEO)
11	유엔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37호
12	유엔 평화적 시위의 상황에서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한 법집행 공무원 대상 모범의정서
13	직영축삭계약직 운영 관련 별도합의
14	피해자진술조서(변주현)
15	피해자진술조서(안미숙)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 공권력감시대응팀, 백기완노나메기재단, 블랙리스트 이후,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스튜디오알, 영등포산업선교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